

입법평가 연구 09-16-□□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이진국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The Standard Cost Model in the Germany

연구자 : 이진국(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ee, Jin-Kuk

2009. 7. 31.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독일에서 2006년 이후로 행정적 규제를 실효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내용과 그 적용절차를 다루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제공 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이나 시민에게 발생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여 선진적 규제를 달성하고자 한다.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한 행정비용의 측정은 일시적인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적 과제이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주로 경제계, 즉 기업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실무는 시민이나 행정 그 자체에 발생한 행정비용도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제공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유발된 비용만을 측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법률에 명시된 내용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이 아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연구결과는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의무도 측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표준비용모델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키워드 : 정보제공의무, 행정비용의 측정, 표준비용모델, 입법평가, 규제완화, 선진규제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Standard cost model and its applicable procedures evaluated as the specific methods for an effective repeal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ince 2006 in Germany. Standard cost model, in itself, is no more than one method of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induced by information obligation. But the eventual goal in applying Standard cost model is to eliminate unnecessary administrative burdens from enterprises or citizens. In this respect, contemporary most nations of Europe tend to achieve advanced regulation, making the best use of Standard cost model.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by Standard cost model is not temporary but the persistent task. Standard cost model of Germany has been principally applied to information obligation burdened by primary economic circles, that is, enterprises. But recent practical application of Standard cost model in Netherlands includes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caused by citizens or administration in itself. Furthermore Standard cost model of Germany subjects the only cost caused by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obligation to the measurement, but the model is not the method to estimate the cost in complying the material obligation explicitly prescript in a law. On the other hand, recent researches point out that the material obligation as well as information obligation under law shall be subject to the measurement. To introduce Standard cost model of Germany into South Korea, We must not only accurately understand various elements comprising Standard cost model but also correctly determine the target intended to purse through it.

※ Key Words : Standardcostmodel in Germany, information obligation,
measuring administrative costs, better regulation, deregulation,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 2 장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17
제 1 절 연정협정 이전의 상황	17
제 2 절 연정협정의 체결과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20
제 3 절 유럽연합의 영향	24
제 3 장 표준비용모델의 추진현황	27
제 1 절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프로그램의 개요	27
제 2 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신설	28
I. 조직 및 구성	30
II. 임무와 권한	31
III. 행정비용의 측정과 표준비용모델	32
IV. 연방정부의 의무	33
제 3 절 관료주의철폐와 행정비용감축을 위한 기반 구축	33

I.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34
II. 연방각부처공동사무규칙의 개정	35
III. 정부조정관과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의 신설	35
제 4 장 독일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41
제 1 절 표준비용모델의 기초	42
I. 측정의 대상으로서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정의	42
II.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규범	47
III. 대상집단	47
IV.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모델이 취하는 가정	49
제 2 절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산정모델	53
I.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을 위한 매개변수	53
II. 행정비용 산정공식	55
III. 행정비용 산정절차	58
제 3 절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절차	59
I. 첫 번째 과정 : 정보제공의무의 분석	60
II. 두 번째 과정 : 표준절차의 확정	68
III. 세 번째 과정 : 비용변수의 조사	71
IV. 네 번째 과정 : 조사결과의 확정	89
제 4 절 비용감축을 위한 조치	92
I. 절감잠재력의 추론	92
II. 결정된 감축목표의 달성과 통제를 위한 조치프로그램의 작성	93

제 5 절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	93
I.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94
II.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 추산	95
III.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제시	100
제 5 장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한계 및 시사점	101
제 1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101
I.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측정의 성과	101
II.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한 일괄입법의 추진	106
III. 새로운 행정부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실적	111
제 2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한계	112
I. 지속적 발전과정에 있는 방법론	112
II.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방법론 자체의 한계	113
III.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문제점	114
제 3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정책적 함의	115
I. 범국가적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	115
II. 한국형 표준비용모델의 개발 필요성	117
III. 임금 내지 요금에 관한 문제	118
제 6 장 전 망	123
참 고 문 헌	125

【부 록】

[부록 I]

연방차원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부담의 조사와
경감을 위한 연방정부 입문서 - 연방차원의 표준비용모델 입문서 - 133

[부록 II]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 23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법은 정치적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일차적인 도구로 간주된다. 법에는 개념필수적으로 ‘규제’(Regulation)라는 요소가 함입되어 있다. 복지행정의 분야에서 국가의 일정한 급부를 전제로 하는 급부법의 경우에도 급부의 요건과 절차 등은 규제적 요소를 적지 않게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적 요소는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시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에도 과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기업체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내지 철폐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기업에 친화적인 이른바 ‘좋은 법률’(gute Gesetze) 내지 최적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¹⁾

최적의 법률이란 ① 법규정의 효과와 장기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상태에서 제·개정된 법률, ② 법규정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원래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발생하는 법률, ③ 정부와 시민간의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는 법률, ④ 수범자가 이해할 수 있고 법규정이 의도한 바대로 준수될 수 있는 법

1) ‘규제완화’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규제완화란 한편으로는 규범총량의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텍스트의 간소화, 규범텍스트의 이해가능성의 제고, 시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감소, 탈관료주의화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완화는 자유화, 민영화, 국가적 개입의 보충성, 탈국가화, 분권화, 법과 행정의 간소화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규제완화의 개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Atlmayr,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Deregulierung*, in : Kleiser/Lengheimer(Hrsg.), *Deregulierung* (2002), 106쪽 이하 ; Kleiser, *Deregulierung und Gemeinschaftsrecht*, in : Kleiser/Lengheimer(Hrsg.), *Deregulierung*(2002), 10쪽 이하 참조.

를, ⑤ 장래의 발전을 미리 예측하는 법률 등을 말한다.)²⁾ 그러나 입법 현실을 고려해보면 최적의 법률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적 요소를 충족시킨 법률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최적의 법률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의 내용 그 자체가 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의 방법론을 개발하여 최적의 입법을 양산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평가란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인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함이 없이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법령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입법평가에는 새로운 입법을 행하고자 할 때 다양한 규율방안 중에서 최적의 규율방안을 만들어내는 사전적 입법평가, 정부부처의 법령안에 대한 병행적 입법평가, 당해 법령이 발효된 이후 일정 시점에서 그 법령의 효과를 평가하는 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어진다. 입법평가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입법평가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된 일정한 결과를 입법권자인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로 하여금 최적의 입법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평가의 가장 큰 약점은 입법평가와 의회의 입법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평가제도는 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법평가의 결과는 의회의 입법자를 사실상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법평가제도는 그 자체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는 비판에 더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

2) Heinz Schäffer(Hrsg.), Evaluierung der Gesetze/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Österreich und im benachbarten Ausland, ÖGGL - Tagung 2003[박영도(역), 오스트리아와 인접 국가에서의 법률평가와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42쪽].

상황 속에서 의회 입법자의 입법결정권을 존중하되 최적의 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를 찾게 되었다. 표준비용모델이 등장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표준비용모델(SKM : Standardskostenmodell)이란 법령을 통하여 국민(주로 기업체)에게 부과된 각종 정보의 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방법론을 말한다. 표준비용모델은 기업과 시민이 부담하는 각종 행정부담(신고, 등록, 보고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와 같이 행정부담 내지 정보제공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기초로 삼는다. 표준비용모델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조항)를 철폐하거나 개정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는 행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차원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표준비용모델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과학적인 기초 내지 산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표준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표준비용을 어떻게 측정하며, 표준비용모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발명되어 적용된 이후로 유럽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나 OECD 등 초국가적 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지만, 표준비용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나 적용은 각 국가의 이해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정책 실무에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겠다는 실천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비용모델이 선진외국에서 어떻게 구상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독일의 정책실무에서 개발되어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다. 독일

의 표준비용모델을 연구하게 된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규제에 관한 법령체계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를 삼기 위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기업친화적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기업친화적 정책에 우선성을 두는 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지만, 기업친화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과학적이고 분명한 기반에 터 잡지 않고 단순히 직관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흠결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기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할 수는 있어도 전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을 상세하게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를 사전에 예견하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서술된다.

제2장에서는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에 관하여 서술할 것이다. 대륙법계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에서도 규제는 법령을 통한 규제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결국 법령을 통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이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한 200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의 규제완화에 관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점에서 독일이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제3장은 독일 정부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추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소개할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은 단순히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한 구체적인 산정결과를 개별적 정책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소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수미일관하

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정책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독일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논의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제4장에서는 독일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여기서는 표준비용모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 표준비용의 조사절차와 현실에서의 구체적 적용절차를 논의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장래와 우리나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독일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울인 다양한 노력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제6장에서는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성과와 한계 및 우리나라에 부여하는 정책적 함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제 2 장 독일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둘러싼 법제도적 논의가 시작된 시기는 2005년 이후부터였다. 2005년 11월의 연정협정을 계기로 독일에 표준비용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2005년 11월의 연정협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 1 절 연정협정 이전의 상황

독일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부터 연방의회의 회기가 바뀔 때마다 관료주의의 철폐와 행정비용의 절감에 관한 정부의 각종 선언이 발표되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³⁾ 특히 1990년대 말 이후부터는 행정체계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적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예컨대 독일연방정부는 1999년 12월 1일 “현대국가-현대행정”(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의결하여 행정의 현대화, 관료주의의 철폐, 전자정부의 추진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연방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행정규제완화와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관료주의철폐(Bürokratieabbau)라는 이름하에 행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3년 2월 26일에 내각에서는 “관료주의철폐 마스터플랜. 중소기업 진흥 - 고용창출 - 시민사회 강화”(Mittelstand fördern-Beschäftigung schaffen-

3) 1980년대부터 1999년 이전까지 독일에서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설치된 위원회로는 Die Sachverständigen Gruppe im Auftrag des Bundestages(1980), Die Bundesvereinfachungskommission(1983-1998), Die Waffenschmidt-Kommission, Donges-Kommission(1988-1990), Schlichter-Kommission einschliesslich der Ludewig-Arbeitsgruppe (1994/95), Scholz-Kommission “Schlanker-Staat”(1995-1997), Der “Lenkungsausschuss Verwaltungsorganisation” des BMI(1997/98) 등을 들 수 있다.

Bürgergesellschaft stärken. Eckpunkte für den Masterplan Bürokratieabbau) 를 의결하여, ① 시민사회 강화, ② 중소기업 부담경감, ③ 경제 성장 및 고용 촉진, ④ 공공재정 건실화, ⑤ 연방행정 현대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여, 이를 정부행정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발표한 바 있다.⁴⁾ 아울러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13개 긴급 프로그램⁵⁾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각 연방 부처에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여 2003년 4월 1일까지 최소 3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2003년 7월 9일 연방내각은 13개 긴급프로그램에 이어, 2차 대책으로 각 연방부처에서 취합된 41개 프로젝트까지 총 5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⁶⁾

나아가 2004년 5월 12일 연방내각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방경제노동부(BMWA)가 마련한 29개 추가대책을 의결하였다. 이들 29개 추가대책은 크게 ① 행정절차 간소화(고객 지향적 행정업무), ② 행정규제 완화(기업 활동

4) http://www.verwaltung-innovativ.de/cln_046/nn_684684/DE/Presse/Artikel/ArtikelArchiv/2003/20030226_kabinettschluss.html

5) 13개 프로젝트는 ① 각종 연방법의 재검토 및 간소화, ② 정부통계 간소화, ③ 기업의 통계부담 경감, ④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Bund Online 2005 추진, ⑤ 전자의료카드 도입, ⑥ 의약품 전자상거래 도입, ⑦ 창업 및 소기업 지원대책, ⑧ 수공업 관련 법규 개혁, ⑨ 기업회계의무 한도 상향조정 및 회계 표준화, ⑩ 공공사업 입찰 관련 규정 간소화, ⑪ 소득세 처리절차 현대화, ⑫ 공공부문 단체협약 개혁, ⑬ 사회보장 관련 신고시스템 개선 등이다.

6) 54개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① 노동시장 및 창업 활성화(창업 및 소기업 지원 강화, 기업회계의무 한도 상향조정 및 회계 표준화, 수공업법 개정, 직업교육 개혁), ② 경제 및 중소기업 진흥(소득세 처리절차 현대화, 기업의 통계부담 경감, 불건전 경쟁제한법 개정, 기기 및 제품안전법, 배출신고의무제 간소화, 정부사업 전자 발주, 교통인프라 계획절차 가속, ③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Profi-Online시스템을 통한 연구 프로젝트 지원 효율화), ④ 시민사회 및 명예직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사업에 명예직 강화, ⑤ 시민서비스 강화(전자의료카드 도입, 사회보장 관련 신고 시스템 개선, 각종 신고 절차의 간소화, 법제의 현대화, 양심적 병역거부법 개정, 전자정부 프로젝트 Bund Online 2005, 주택수당 관련 규정의 간소화, 의약품의 전자상거래, 독일 해외 민원영사업무의 온라인화, 관공서 조직개편 프로젝트) 등이다.

여건 개선) 등 2개 분야로 나누어진다.⁷⁾ 이러한 관료주의 철폐정책에 대하여 그 당시의 Gerhard Schröder 총리는 2003년 11월에 발표한 “Agenda 2010 개혁프로그램”⁸⁾(Agenda 2010 Deutschland bewegt sich)의 20개 추가대책과 함께 관료주의 철폐를 확대 추진할 계획을 2005년 3월 17일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연방 각 부처에서는 소관하고 있는 각종 연방법을 정리하는 등 각종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개혁을 위한 이와 같은 다양한 노력들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별적 조치에 국한된 법적 개선만으로는 관료주의와 이로 인하여 유발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제거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⁹⁾ 그러나 그 당시의 개혁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한 보다 본질적인 이유에 대하여 독일 정부는 현존하는 관료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법률에 대하여 확실하게 예견할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다.¹⁰⁾ 다시 말해서 관료주의의 철폐와 행정비용의 절감에 관한 기존의 각종 제안들이나 입법발의들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관료

7) 연방경제노동부장관은 당초 34개 항목에서 철폐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9개 항목으로 조정, 내각에 제출하였다. 29개 항목은 연방정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중인 관료주의 철폐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소위 혁신지역으로 지정된 Bremen, Ostwestfalen-Lippe, Westmecklenburg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8) http://archiv.bundesregierung.de/artikel/81/557981/attachment/557980_0.pdf 이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정부와 기업의 부담축소 등 자유시장경제의 성격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젠다 2010의 목표는 경제적 동력의 강화, 일자리창출, 임금부대비용의 절감 및 장기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체계의 근대화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① 수공업 관련 업종에서의 기능사자격제도 완화, ②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중한 세금부담의 경감과 은행대출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석교, 아젠다 2010 -경제개혁의 배경, 내용 및 전망-, FES Information Series 2004.08. 참조.

9) Koalitionsvertrag von CDU, CSU und SPD - Gemeinsam für Deutschland. Mit Mut und Menschlichkeit., Union Betriebs-GmbH, Berlin, 2005, 74쪽.

10) Koalitionsvertrag von CDU, CSU und SPD, a.a.O., 74쪽.

주의의 철폐에 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되어 있지 못했다.¹¹⁾ 2005년 9월 7일 독일 연방의회 제186차 회의에서 그 당시의 야당인 기사당(CDU) 당수였던 Angela Merkel은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독일에서 관료주의 줄일 수 없는가?”(Gibt es weniger Bürokratie in Deutschland?)라는 물음을 던진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독일정부는 관료주의 철폐개혁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절차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삭감목표를 세운다는 매우 실천적인 방법론으로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기로 하였다.¹²⁾

제 2 절 연정협정의 체결과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독일에서 1999년이후부터 2005년까지 관료주의철폐와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다수의 정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독일의 법제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05년도에 연방차원에서는 총 2,200개의 법률, 46,800개의 조문 및 3,130개의 행정규정과 39,200개의 개별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차원에서는 연방차원의 법률이나 행정규정이 존재하고 있었고, 1999년 이후로 폐지된 법률이나 시행령에 비해 제정된 법률이나 시행령이 더 많았다(총 122개의 법률과 178개의 시행령).¹³⁾ 문제는 법규정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많은 법규

11) Werner Jann/Kai Wegrich/Jan Tiessen, “Bürokratisierung” und Bürokratieabbau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 wo steht Deutschland?, Friedrich-Ebert-Stiftung(Hrsg.), Berlin, 2007, 24쪽.

12) Nobert Röttgen, Normenkontrollrat: Der Koalitionsvertrag als Wegweiser zu besserer Rechtsetzung und weniger Bürokratie, ZRP 2006.2., 50쪽.

13) Frank Frick/Tobias Ernst, Argumente für Bürokratieabbau, Bertelsmann-Stiftung, Gütersloh, 2005, 1쪽.

정으로 인하여 행정의 투명성 흠결, 법규정의 효과비용에 관한 의식의 결여, 제도적 통제장치의 흠결, 부처의 조직이기주의 및 다양한 이익단체의 활동 등과 같은 부작용들이 유발된다는 점이다.¹⁴⁾ 2005년까지 독일에서는 법령의 총량이 어느 정도로 되어야 적절한 것인지, 특히 국가적으로 유발된 관료비용(즉 행정비용)을 기업이나 시민에게 분산하는 것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수치가 존재하지 않았다.¹⁵⁾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목표지향적인 비용산정 프로그램이 실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현존하는 관료비용을 포착한 이후에야 비로소 행정적 부담의 총계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99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어 실무에서 운영되던 표준비용모델을 독일에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이 도입된 근본적인 계기는 2005년 11월의 연정협정에서 관료주의의 철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부터였다. 2005년 11월에 기존의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연립정권에서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출범하게 된다. 이 대연정에서 Angela Merkel 총리는 이전의 Schröder 총리 재임시절에 마련했던 Agenda 2010 개혁정책을 이어받아 관료주의 철폐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11일의 연립협정(Koalitionsvertrag von CDU, CSU und SPD)¹⁶⁾에서 관료주의철폐를 중요한 과제로 명시하였다. 2005년 11월 11일자 연정협정서는 국가적 행위(특히 규제)의 목표명확성과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연정협정서의 내용 중 제B절 I. 9.는 관료주의의 철폐와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제B절 I. 9.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Carl Dominik Frick, Bürokratieabbau in Deutschland - Versinkt unsere Zukunft im Regelsumpf?, Stiftung Marktwirtschaft - Frankfurt Institut, Nr.91, Berlin, 2005, 3쪽.

15) Christian Ohr, Standardkostenmessung und Bürokratieabbau in Deutschland, GRIN, 2007, 4쪽.

16) http://koalitionsvertrag.spd.de/servlet/PB/show/1645854/111105_Koalitionsvertrag.pdf

- ‘소기업법’(small-company-act)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단기간 내에 중산층과 창업자가 느낄 수 있도록 각종 부담을 경감시킨다.
- 연방법률에서 강조된 관료비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법에 대하여 발생하게 될 관료비용을 확실하게 예상한다.
- 이러한 목적으로 적용될 도구는 유럽연합과 OECD가 추천하는 표준비용모델이다.
- 현존하는 관료비용의 일회성 조사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입법회기의 종료시까지 환원을 위한 목표를 정한다.
- 이러한 절차는 연방수상청 산하의 독립적인 전문가위원회(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통하여 병행된다.
-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연정 교섭단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현행 법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
- 이를 위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의장은 연방수상 또는 연방수상청의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유럽연합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의 입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지침을 이행에도 특별한 관심 -특히, 새로운 입법이유서를 통하여- 을 가진다.

이러한 연립협정에 명시된 관료주의 철폐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5일에는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프로그램”(Programm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이 내각에서 의결되었다.¹⁷⁾ 이 프로그램은 관료주의철폐를 위한 행정절차사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규의 단순한 간소화만으로는 불충분하는 인식하에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절차비용을 통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

17) http://www.bundesregierung.de/nsc_true/Content/DE/Artikel/2001__2006/2006/06/___Anlagen/programm-fuer-buerokratieabbau-und-bessere-rechtsetzung994101,templateI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programm-fuer-buerokratieabbau-und-bessere-rechtsetzung994101

론인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고,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라서 얻어진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거하여 부담경감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법령의 재검토를 행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신규입법에 의한 행정절차의 증대를 가능한 한 조기단계에 차단하려는 것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의 원류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것이다. 네덜란드는 지난 수년간 표준비용모델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네덜란드에서 기업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주제는 이미 1975년에 처음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3년까지 항상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되었고, 이 위원회들은 관료비용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각종 제안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본질적인 개선을 이루지는 못했다. 경제계의 관료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측정절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은 1993년에 경제부가 그 당시의 행정비용감축위원회(SALM)를 대표했던 EIM 연구소에 연구를 위탁함으로써 처음으로 생겨났다. 그 당시 EIM은 Mistral(MeetInSTRument Administrative Lasten)이라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개별적으로 시험운용을 하고 있었다. Mistral은 모든 국가적 단위의 관료비용의 유형, 범위 및 발생지에 관한 자료들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구체적 제안에 대한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였다. 그러나 1998년에 설치된 Slechte 위원회는 Mistral만으로는 부족하며, 진행방식을 엄격하게 ‘탈정치화’하여, 내용적으로 정치적인 목표들, 즉 법규정의 효과성은 판단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단지 절차형성의 효율성만을 판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Slechte 위원회는 행정내부에서 강력한 조정이외에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행하는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들의 설치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서 2000년 5월에는 ACTAL(AdviesCollege Toetsing Administrative Lasten)이 독립적인 자문위원회로 설치되었다. 그 이후 ACTAL은 관료비용을 측정하고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함에 있

어 정부와 의회에 대하여 자문하고 지원하며 각종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위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ACTAL의 핵심적 과제는 비용추이에 관한 장기간의 영향을 한시적인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과 행정이 비용에 대하여 보다 높은 의식을 가지도록 문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¹⁸⁾

제 3 절 유럽연합의 영향

2005년 11월 11일자 연정협정서 제B절 I. 9.는 관료비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이 표준비용모델이 유럽연합과 OECD가 추천하는 모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미 이러한 사실로부터 독일이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유럽연합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쟁력, 성장 및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이 성과를 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규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 법규정의 간소화를 유럽연합 기업 정책의 우선적 목표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5년 초에 ‘선진입법’에 관한 리스본전략¹⁹⁾을 채택하여 ‘유럽연합에서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더 나은 입법’(Mitteilung ‘Bessere Rechtssetzung für Wachstum und Arbeitsplätze in der Europäischen Union’)²⁰⁾에 관한 통지에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

18) 네덜란드의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Ernst/Koop, Bürokratiekostenmessung in Deutschland, in: Heinz Schäffer (Hrsg.), Evaluierung der Gesetze/Gesetzesfolgenabschätzung(II), 2007, 102-104쪽[한글판 번역: 박영도/김영아(역), 법률평가와 입법평가(II) - 국가실무와 경제에 관한 국내 및 외국의 경험보고 -, 한국법제연구원 2008, 136-140쪽 참조].

19) ‘선진입법’의 영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업 및 산업에 관한 웹사이트는 http://ec.europa.eu/enterprise/regulation/better_regulation/index_de.htm 참조.

20) Mitteilung der Kommission an den Rat und das Europäische Parlament, “Bessere Recht-

며 법규정의 비용과 편익의 형평성을 찾을 수 있는 다수의 조치를 제안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 통지에 나타난 발의내용으로는 ① 입법평가제도의 개선(특히 영향평가의 경제적 분석의 개선), ②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와 필요한 경우 그 수정 및 법안 자체의 철회(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연합 의회에 결정을 위하여 제출한 각종 법안의 일반적인 중요성, 경쟁력에 대하여 미치는 효과 및 그 밖의 효과에 대한 심사), ③ 현행 법규정의 간소화(어떠한 법규정이 기업이나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그 규정을 수정 내지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 ④ 행정비용의 철폐를 위한 시험단계(행정비용의 측정과 철폐를 위한 시험프로젝트의 개시), ⑤ 시민과의 협의(인터넷을 통하여 유럽연합 시민, 기업 및 비영리기구와의 협의를 보다 강화하거나 개선), ⑥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회원국에 대하여 더 나은 입법을 위한 국내적 조치를 취하고 공통의 아젠다인 ‘선진입법’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위한 국내 입법전문가 그룹의 설치)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유럽연합기관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에 대하여 관료비용을 철폐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동체차원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 점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유럽연합 차원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setzung für Wachstum und Arbeitsplätze in der Europäischen Union”, KOM 8(2005)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site/de/com/2005/com2005_0097de01.pdf. 참조..

제 3 장 표준비용모델의 추진현황

독일 연방정부는 2005년 11월 11일자 연정협정서가 체결된 이후 독일에서의 관료주의철폐와 행정비용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신설,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관료주의철폐 및 선진입법 조정관과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의 신설,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개별조치의 이행 등이다. 이 점에서 여기서는 독일 연방에서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과 관련한 각종 법제도의 추진현황을 소개할 것이다.

제 1 절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프로그램의 개요

독일의 연방내각은 2006년 4월 25일자로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프로그램”(Programm für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Gesetzgebung)을 의결하였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의결함으로써 관료비용, 특히 법령상 명시된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기업, 시민 및 행정기관에 유발되는 관료비용(즉 행정비용)을 감축하고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²¹⁾ 이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관료비용의 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연방정부의 조정관을 설치하고 특히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관료비용의 산정절차의 도입과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수미일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7년 2월 28일에 연방정부는 2011년까지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기업체나 시민 등에게 유발된 행정비용의 전체적 현황을 심사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로 의결하였다.²²⁾ 이렇게

21) BT-Drs. 16/5323 v. 11. 05. 2007.

22) Thomas Schleiermacher, Durchbruch beim Bürokratieabbau läßt weiter auf sich wart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 für München und Oberbayern, München, 2007 참조.

해서 2011년까지 현재의 행정비용부담의 25%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하여 현재 200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연방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 기준일 이후의 법규정들에 대하여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여 특별하게 심사하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심사를 거친 이후에 한하여 비용유발요인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이 야심찬 목표는 목표설정 그 자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2006년 4월 25일자로 의결한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신설

독일 연방차원에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하여 취한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였다는 점이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2006년 6월 1일에 연립여당이 제출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이 연방의회에서 같은 해 8월 14일자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8월 18일자로 발효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²³⁾(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에 근거하여 신설된 독립적 기구로서 2006년 9월에 그 업무를 개시하였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²⁴⁾는 독일의 입법과정에서는 매우 특이한

23) 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BGBl I. Nr. 39. S. 1866.

24)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연방차원에서 개혁절차를 조정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네덜란드에서 국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ACTAL(Adviescollege toetsing administratieve Lasten)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여기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관료주의 철폐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자문을 행하고 지원한다. 또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에 대하여 법규정이나 법률안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에 관하여 자문을 행하며 각종 권고나 추산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방법론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통계청과 협력하여 표준

것으로서, 당초 메르켈 수상은 이 위원회를 조직령(organisationserlass)으로서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히 여당인 기민당(CDU)과 기사당(CSU)이 이에 반대하면서 의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안의 제안이유서에 나타난다. 이에 의하면, 법률의 질향상이 입법자의 중대한 관심사임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탈의회정치화(Entparlamentarisierung)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입법의 형식으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⁵⁾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관료주의를 철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그 자체의 시비에 대한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고, 적은 부담으로 어떻게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로서 규제·감독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또한 위원회의 감독대상이 되는 관료주의비용은 법률, 법규명령, 조례 또는 행정규칙으로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에 수반하는 비용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 사무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비용의 유형을 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적, 중립적인 성격을 도모하여 정치적 분쟁을 회피하고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범통제의 실적을 거두려하는 점에 입법의 특징이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은 총 8개 조문을 갖춘 비교적 간단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이 자니고 있는 정책적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용모델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Frank Frick u.a., Von der Bürokratiekostenmessung zum Bürokratiekostenabbau, Bertelsmann Stiftung, Gütersloh, 2006, 1쪽.

25) DT-Drs. 16/1406 v. 09. 05. 2006.

I. 조직 및 구성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제 1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 산하에 설치되며 베를린을 그 소재지로 한다(동법 제1조 제1항 1문). 위원회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에 명시된 내용에만 구속되며 위원회의 활동은 독립적이다(동법 제1조 제1항 2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8명²⁶⁾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동법 제3조 제1항 1문). 위원은 연방수상이 연방정부의 다른 각료의 양해를 얻어 추천하며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5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3문 및 4문).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사회기관에서 입법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사항에 관하여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동법 제3조 제2항). 또한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명전의 1년간은 입법기관에도 연방과 주의 행정기관에도 소속하지 않았어야 하고, 위원의 임기 중에도 이들 직위에 취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동법 제3조 제3항). 다만, 대학교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동법 제3조 제3항 2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연방수상이 지명한다(동법 제3조 제4항). 위원은 명예직이지만 포괄수당 및 여비(실비)지급을 받는다(동법 제3조 제5항, 제10항). 위원회의 사무국은 연방수상청에 설치한다(동법 제3조 제9항).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하고 위원회의 지시에만 복종한다(동법 제3조 제9항).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직원은 연방 또는 주의 행정내부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동법 제3조 제9항).

26) 2006년 9월 19일 연방대통령은 연방수상의 추천으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였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은 전 독일철도주식회사 사장인 Johannes Ludewig 박사, 위원으로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경력을 가지고 있는 Wolf-Michael Catenhusen, 전 연방의회 법무위원장 Hermann Bachmaier, 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신문 경제편집국장 Hans Dietmar Barbier, 슈파이어독일행정대학원교수 Gisela Färber, 경영컨설팅회사 임원 Henning Kreibohm, 키일국제문제연구소 소장 Dennis J.Snowor, 전 바이에른행정법원장 Johannes Wittmann이 각각 임명되었다.

II. 임무와 권한

위원회의 임무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제1조 제2항과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하여 표준화된 행정비용의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감시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연방정부가 법률을 통하여 유발된 행정비용을 감축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임무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제4조에 보다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① 새로운 연방법률안(동법 제4조 제1항 1호), ② 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원법률(2호), ③ 하위 법규정과 행정규칙안(제3호), ④ 유럽연합의 법문서(대강결정, 결정, 협약 및 이에 관련한 시행조치)와 유럽공동체의 규칙, 지침 및 결정의 초안(제4호), ⑤ 유럽연합법의 국내 이행과 관련되는 법률, 법률하위의 각종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제5호), ⑥ 현행 연방법률 및 이에 의거한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제6호)에 대하여 표준화된 행정비용측정의 기본원칙의 준수를 심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방 각부처의 법률안이 내각에 제출되기 전에 심사한다(동법 제4조 제2항). 위원회는 연방정부가 설정한 행정비용 감축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달성되었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연방정부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입장을 표명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위원회의 권한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원회는 ① 연방정부가 행정비용의 측정함에 있어 입수할 자료를 위하여 설치한 자료은행을 이용할 권한, ②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청문 내지 공청회를 실시할 권한, ③ 전문가에게 감정을 위탁할 권한, ④ 연방정부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동법 제5조 제1항). 또한 위원회는 연방과 주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직무상의 지원을 받을 권한도 가지고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위원회는 연방각부처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주무장관에 대하여 비공개로 제출한다. 위원회의 의견과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견은 법률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된다(동법 제6조 제1항). 위원회는 매년 연방수상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는 위원회의 권고를 첨부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위원회는 연방의회의 소관위원회와 그 밖의 당해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자문을 행한다(동법 제6조 제3항).

Ⅲ. 행정비용의 측정과 표준비용모델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제2조에 의하면, 행정비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제2조에서 말하는 행정비용(Bürokratiekosten)이라 함은 자연인 및 법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spflichten)라 함은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부과되는 자료 그 밖의 정보를 행정기관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입수하고 이용가능하도록 하거나 전달할 의무를 말한다. 이 경우 법률, 법규명령, 조례 또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 제1항). 행정비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1문). 이 경우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2항 2문). 이 산정방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요한다(동법 제2조 제2항 3문). 기업에 대하여 산정의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표(단위당 비용, 법률에 기인하는 개별활동당 시간과 그 연간 횟수 및 대상기업 수)를 최초로 조사할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거한 행정비용의 전부를 고려하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3항).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제2조는 행정비용의 산정 내지 측정에 있어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지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정절차나 방법론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을 고려하여 독일 연방 통계청은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독일의 실정에 부합시킨 표준비용모델지침서를 개발하여 2006년 8월 17일에 공표하였다.²⁷⁾

IV. 연방정부의 의무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은 위원회만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조에 의하면,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대하여 매년 표준화된 행정비용 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산정법에 관한 경험, 각 부처에 있어서 행정비용의 감축 상황, 연방정부가 정한 삭감목표의 달성의 현시점에서의 예측에 관하여 보고한다. 또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의 행정비용 삭감목표의 달성에 관한 연례 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제 3 절 관료주의철폐와 행정비용감축을 위한 기반 구축

나아가 독일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광범위하게 철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범정부적으로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정부내 기구를 신설하였으며, 연방각부처공통사무규칙(GGO)을 일부 개정하였고, 관료주의철폐와 행정부담의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도구로서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입증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였다.

27) Statistisches Bundesamt, Einführung des Standardkosten-Modells Methodenhandbuch der Bundesregierung, 2006.8.(<http://www.destatis.de/jetspeed/portal/cms/Sites/destatis/Internet/DE/Content/Projekte/SKM/SkmHandbuchPdf,property=file.pdf>)

I.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연방정부는 관료주의철폐와 행정부담의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 도구로서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입증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였다. 연방정부가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게 된 핵심적 배경은 독일의 경우 과거에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행해졌지만 과학적인 방법론에 따르지 않았던 결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반성때문이었다.

독일이 도입한 표준비용모델은 연방법에 근거한 모든 정보제공의무와 유럽연합법에 근거한 모든 정보제공의무를 연방의 소관부처가 연방통계청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미 연방 각부처에서 약 500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표준비용모델과 산정 방식 및 입력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²⁸⁾

또한 연방정부는 연방통계청과 공동으로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입문서를 작성하여 2006년 8월 17일에 공포하였다. 이 입문서는 표준비용의 산정과 관련한 개념의 해설 등에 관한 일반적 문제점 이외에도 정보제공의무의 확인에서부터 부채적인 비용산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나 유럽연합 및 OECD의 표준비용모델을 많이 참고한 바 있다. 특히 이 입문서는 비용감축의 가능성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행정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절차도 취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통계청은 표준비용모델 자료은행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여 구체적인 산정을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2006년에 각종 준비를 위한 제반 조치(표준비용의 산정에 관한 관련 공무원 교육, 자료은행의 개발, 소관 부처가 송부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를 완료한 이후에 2007년부터 구체적인

28) BT-Drs. 16/5323 v. 11. 05. 2007.

산정이 개시되었다. 나아가 연방통계청이 참가하여 주, 자치단체 및 경제단체들과의 정보교환이나 경험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연방각부처공동사무규칙의 개정

독일 연방정부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의 제정과 함께 2006년 11월 8일자로 연방각부처공동사무규칙(GGO)을 부분 개정하여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개정된 연방각부처공동사무규칙(GGO)의 주요 내용은 연방의 각 부처가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행정비용을 반드시 조사하여 서술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는 점(동 규칙 제44조 제5항), 연방정부의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당해 법률안을 소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당해 법률안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처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당해 법률안의 준비하고 작성하는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동 규칙 제45조 제1항) 등이다. 이 점에서 2006년 11월 8일자 연방각부처공동사무규칙(GGO)의 일부개정은 관료주의철폐와 행정비용감축의 목표가 실효적으로 실천되기 위한 연방 내각 내부에서의 제도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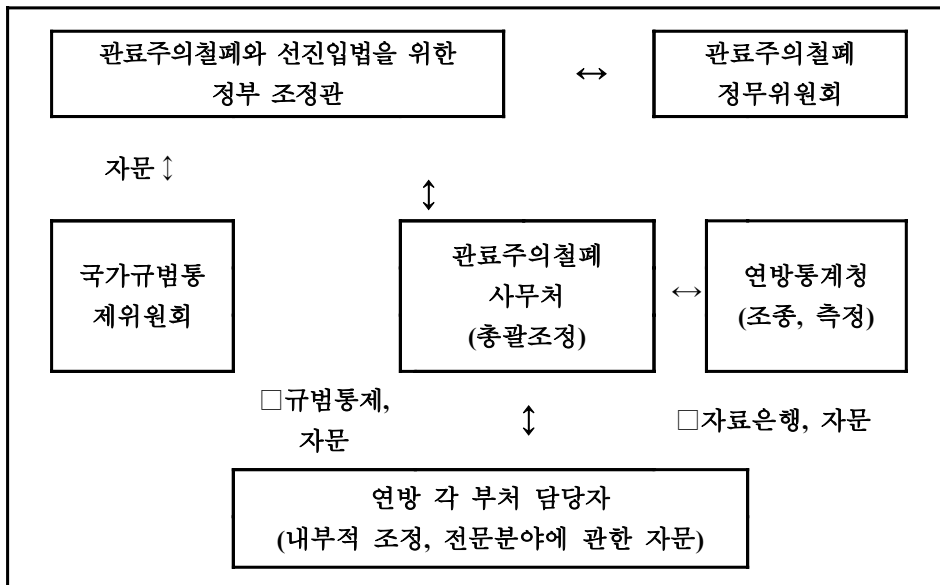
III. 정부조정관과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의 신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을 통한 관료주의철폐를 수미일관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관련 기구를 설치하였다.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행정비용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기구는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 조정관(Koordinator für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과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Staatsekretärausschuss Bürokratieabbau)이다. 이들 두 기구는 행정비용측정의 개시 및 실시에 관한 전체적인 절차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 조정관은 행정부담의 감축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와 조치를 지휘하며 이 분야에서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독일을 대표한다.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 조정관은 동시에 관료주의철폐 정부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관료주의철폐 정부위원회는 정부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의 조치에 관한 합의와 이행을 지원한다. 연방수상청에 있는 관료주의철폐 사무처, 연방 각 부처 및 연방통계청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을 직접 측정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독립적인 통제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방의 입법안과 현행 연방법에 대하여 그 행정적 부담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⁹⁾ 이 점에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도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부담의 측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참가한 기관들을 나타낸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참가한 기관들]



29) Johannes Ludwig u.a., Auftrag und Organisation des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Berlin, 2007, 4쪽.

1. 정부조정관과 관료주의철폐 정부위원회의 임무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조정관과 관료주의철폐 정부위원회의 임무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가 의결한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의 이행 및 조정
-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을 위한 통일적이고 구속적인 방법론에 관한 결정(특히 방법론입문서의 공포에 관한 결정)
- 연방내각에 제출하기 위하여 양적인 행정비용감축목표의 확정에 관한 결정
-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의 조종, 검토 및 발전에 관한 결정
- 장래의 법률안 및 내각법안에 첨부될 법안의 심사목록에 관한 결정
- 연방의 소관부처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간의 의견대립시 필요한 경우 조정의 실시
-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입장표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필요한 경우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입장표명을 고려하여 연방 소관부처에 대한 가능한 권고문의 작성
- 현재 진행 중인 행정비용감축에 관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 대한 감독 및 종결에 관한 책임
- 방지가 가능한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법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타 가능성 및 새로운 도구에 대한 심사(예: 시민과 행정에 대한 행정비용에 관한 프로젝트, IT의 활용을 통한 행정비용감축 등)
-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규정에 대하여 연방 소관부처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
- 합목적성 및 행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적 표준을 심사하기 위한 지시서의 작성
-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의 문제에 대한 각 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정보교환

2. 관료주의철폐 사무처의 신설

독일 연방수상청에는 관료주의철폐 사무처(Geschäftsstelle Bürokratieabbau)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무처에는 연방수상청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조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 및 연방홍보처의 직원들도 파견된다. 관료주의철폐 사무처는 현재 약 10명 안팎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연방 각 부처 중 어느 부처의 직원이 파견을 나올 것이며, 관료주의철폐 사무처의 조직구성을 몇 명으로 유지할 것인지는 관료주의철폐 정부위원회가 결정한다. 관료주의철폐 사무처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고 실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방통계청의 관련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는다.

연방정부의 관료주의철폐 프로그램, 특히 표준비용모델의 도입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의 각 부처에는 표준비용모델과 관련된 담당자가 임명된다. 이 담당자들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사무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며, 수상청에 설치되어 있는 관료주의철폐 사무처에 대한 교섭담당자가 되고, 자신이 속한 부처에서 기획한 행정비용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3.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과정에서 연방 기구들간의 협력체계

관료주의철폐 정부위원회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개입한다.

우선, 각 연방부처는 자신의 소관사무에 속하는 전체 규범을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조사하여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행정비용의 측정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법무부는 연방법 자료은행에 있는 모든 현행법과 현행 시행령에 대한 그 소관부

처를 확인하고 문서로 작성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법령에 대한 소관부처가 완전하게 정해진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을 측정하는 개별적인 절차는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가 정한다.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행정비용의 감축목표도 제안한다. 각 부처에서 특히 행정비용을 많이 수반하는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에 대한 측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는 연방내각에 대하여 그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제안한다.

연방수상청에 설치되어 있는 관료주의철폐 사무처는 연방통계청을 통하여 행정비용의 측정에 관한 방법론상의 지원(예: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측정방법에 관한 교육의 실시)을 제공하고 각 부처가 연방정부에 의하여 의결된 바 있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행정비용의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새로운 입법계획(즉, 법령안)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법령안을 제출할 때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장래에 유발될 행정비용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처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현존하는 측정결과들을 비교하여 고려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의 각 부처는 국가규범통제 위원회와 관료주의철폐 사무처로부터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제 4 장 독일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독일에서는 표준비용모델과 관련한 연구가 국가기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는 표준비용모델을 실무에 적용하여 일정한 효과가 나온 상태에 있다. 국가기관 차원의 표준비용모델의 개발은 연방통계청³⁰⁾이 담당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연방통계청과 공동으로 “표준비용모델 입문서(Einführung des Standardkosten-Modells. Methodenhandbuch der Bundesregierung)”를 작성하여 2006년 8월 17일에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 관료주의철폐 사무처가 2006년 12월 5일에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Leitfaden für die ex ante Abschätzung der Bürokratiekosten nach dem Standardkosten-Modell)”도 발간되어 있다.

“표준비용모델 입문서”는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 산정모델로서 현행 법규정으로부터 유발된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와 장래에 신설되거나 개정될 규정으로부터 유발된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담고 있다. 이에 반해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는 연방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법률안의 표제부와 입법이유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행정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작성된

30) 독일 연방통계청은 연방수상청 내의 관료주의철폐 사무처와 공동으로 표준비용을 실제로 특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행정비용의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연방통계청과 비용조사와 산정을 공동으로 실시한 해당 부처가 부담한다. Johannes Ludwig u.a., Auftrag und Organisation des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Berlin, 2007, 4쪽. 연방통계청은 표준비용모델의 통일적 적용과 실무에서의 표준비용모델의 실천에 관하여 관할하며 비용의 조사와 산정에 참가한 모든 부처에 대하여 자문을 행한다. 이 과정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행정비용이 모두 조사되고 산정될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 철폐의 잠재력도 평가된다. 나아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제공의무를 파악할 수도 있다. 즉,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실무지침서로서 장래에 신설되거나 개정될 규정으로부터 유발된 행정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해설해 둔 것이다. 이 점에서 표준비용 모델 입문서는 사전적·사후적 비용산정을 담고 있는 것인 반면,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는 사전적 비용산정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는 “표준비용모델 입문서”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를 종합하여 설명할 것이다.

제 1 절 표준비용모델의 기초

I. 측정의 대상으로서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정의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행정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가 경제계, 시민 및 행정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시키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정보의 흐름이다. 이 경우 조사되어야 할 비용은 법률상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 그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보제공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법에서 행정비용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보제공의무라 함은 법률, 시행령, 규약 또는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자료나 기타 정보를 행정기관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조달, 보유 또는 전달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의무 이외에 법률, 시행령, 규약 또는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다른 비용은 행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는 것으로는 경제계, 시민, 행정이 국가의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례가 포

함된다. 예를 들면 경제계, 시민 및 행정이 부담하는 모든 각종 신청, 양식, 통계 및 증명의무와 자료작성의무(통지의무, 신고의무, 보고의무, 공표의무, 등록의무, 인가의무 등)가 정보제공의무에 해당한다. 정보제공의무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규정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모든 정보제공의무도 의미하며,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예컨대 소비자에 대한 경제계의 의무)³¹⁾도 포함된다.³²⁾

원칙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경제계, 시민 및 행정이 법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완전성의 가설).³³⁾³⁴⁾

31)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은 매우 상이하게 취급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가격의 표시를 처음부터 정보제공의무의 측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가격표시를 정보제공의무에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측정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경우 연방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측정되는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

32) 표준비용모델의 목표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지 각각의 수범자에게 미치는 편익 내지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경우 법규정이 긍정적인 효과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지원 또는 진흥)에는 그 지원 또는 진흥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결부된 정보제공의무가 논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33) 이것은 국제적인 진행방식에서도 동일하다. Charite, et al.(internationale Arbeitsgruppe): Das Standard- Kostenmodell-Konzept zur Definition und Quantifizierung des Verwaltungsaufwandes für Unternehmen durch staatliche Regulierung, Stand: Mai 2000, 18쪽 및 39쪽; Barnes, et al.: Die Messung administrativer Kosten: Handbuch für das Standard Cost Model in Großbritannien, September 2005, 29쪽 및 Klippstein et al.: Standardkosten-Model - Erstes Deutsches Handbuch, 26쪽.

34)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함에 있어 이러한 완전성의 가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컨대 법적 상황에 따르면 100,000개의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추산의 기초로서도 활용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기업이 위법하게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가설은 하지 않는다. 관련되는 기업의 수는 수정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언급한 정보제공의무의 특징적 요소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① 정보제공의무가 국가에 의하여 발하여 졌을 것, ② 일반적-추상적 규정일 것, ③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과 준비가 문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등이다.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는 예는, ① 일반적인 통지와 특정한 활동의 통지(세무서에 대한 근로소득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기업체 내에서 사고발생시 보험사건의 신고, 직업교육의 계속 또는 종료에 관한 증명, 위험물질운송시 통지의무 등), ② 정기적인 자료작성의무 및 보고의무(예컨대 통계상의 목적 또는 국가적인 통제의 목적에서 부과된 필요시 또는 정기적인 자료의 조사, 보관 및 유지의무, 기업의 회계공개의무), ③ 제3자를 위한 표시적 성격을 가진 정보제공(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표시, 가격표시의무), ④ 제3자를 위한 표시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정보제공(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지의무, 관보 게재 등 공적인 공시의무, 예컨대 소비자보호,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의 분야에서 각종 내용들을 공표할 의무), ⑤ 인가의무(인가/허가에 대한 신청의 모든 유형, 공휴일 운전금지의 면제에 대한 인가, 면제증명원에 대한 신청), ⑥ 등재의무, 등록의무(상업장부, 등기부 또는 수공업자명부에 등재해야 할 의무, 신고등록부, 방문등록부 등에 기재할 의무), ⑦ 제품의 인증과 절차(생태적 건설기업체로 인증하는 것, 약품의 경우 인가절차), ⑧ 통제 내지 감독을 위한 방문/ 감사활동시 협력(통제방문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각종 자료들), ⑨ 국가의 금전급부의 보장에 관한 각종 신청(사회보장급부, 추가수당, 장려금, 보조금, 지원금 등의 신청) 등이다.

이에 반해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없는 것으로는 ①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형식에 관한 사항과 개별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예컨대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는 정보제공의무이지만 이에 관하여 특정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는지 특정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는지 등과 같은 개별적인

지침은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② 순수하게 내용적이거나 실체적인 의무들(정화시설의 설치가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설치 그 자체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③ 금전의 징수와 국고에 대한 금전의 납부(징수된 금액의 액수와 개별 내역에 관한 통지만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며, 국고에 대한 금전의 납부 그 자체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④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 표식, 교통표지, 심볼디자인 등(특정한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도로교통표지판은 내용적 의무의 일부이므로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⑤ 자발적으로 행한 정보의 이전(자발적으로 행한 것은 측정가능한 결과를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어진 의무, 즉 강제규정만 정보제공의무에 포함된다) 등이다.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문제로 되는 것이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제공의무를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원래 독일 연방법무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계약관계 내지 채무관계의 교섭단계와 이미 체결된 단계에서의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이른바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어디에 정렬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일치할 보지 못하였다. 연방법무부는 이러한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통계청에 대하여 보고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연방법무부는 법률안에서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서술하지도 않았고 수량화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는 다수의 법률안에 대하여 연방법무부의 태도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쟁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 연방정부는 2008년 11월 4일에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 합의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채무관계 속에서도 정보제공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내용에 관한 의사표시와 내용 및 형식의 요구 등은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즉,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실행 또는 계약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사표시와 내용은 정보제공의무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의사표시와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호 의사표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계약의 준비를 위한 설명 또는 하자로 인한 청구권(예: 임대차법상의 하자고지 등) 또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각종 형성권(해지, 철회, 취소)의 행사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나 형성권이 계약을 올바로 체결하거나 실행하거나 종료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이행이 계약의 체결, 실행 또는 종료를 뛰어넘는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항상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의무로 보아야 한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예: 경고문구게시, 법적 상황에 관한 고지의무, 계약거절의 이유, 보통거래약관의 첨부, 보험계약의 경우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보험계약법에 따른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정한 정보제공의무)이나 합법적인 과세를 위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정보제공의무의 조사 및 확인과 다른 한편으로 정보제공의무의 수량화를 분리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의 수량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들이 계약당사자의 이익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들은 개별사례에서 이른바 ”당연비용“으로서 공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의 결과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³⁵⁾

35)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2-23쪽.

II.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규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대상이 되는 규범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는 규범이며, 다른 하나는 장래에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될 규범이다. 전자에 대한 측정을 사후적 측정이라 한다면, 후자에 대한 측정은 사전적 측정이다. 사후적 측정과 사전적 측정간에는 기본적인 방법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방법론적 접근을 달리한다. 사전적 측정의 경우에는 현실에서 나타난 통계치나 각종 자료에 기초하여 행정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추산하는 절차를 취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 즉 사후적 측정의 경우에는 연방법과 연방차원의 시행령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조사한다. 따라서 각 주의 규범상태는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연방의 행정규정상의 정보제공의무도 조사할 것인지는 관할 정부부처의 재량에 달려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정보제공의무를 행정비용조사에 포함시키게 된다. 발효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정보제공의무나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측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계기가 있을 경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나 경과한 후에도 시간적 측정을 할 수 있다.

III. 대상집단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 측정의 대상집단은 정보제공의무가 명시된 법규정의 수범자들이다. 이 수범자는 크게 경제계, 시민,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1. 경제계

수범자로서 경제계에 속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은 기업이다. 물론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적인 정의가 없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기업통계체계에서는 기업을 “상행위법 내지 조세법상의 이유로 회계를 작성하고 자산상황 내지 경제적 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 가장 작은 법적·독립적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기업은 모든 경영체와 자유직업적 활동도 포함한다. 또한 행정은 상행위법 내지 조세법상의 이유로 회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특정한 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지만 이 기업이 독일 연방법이나 국제협약에 근거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업은 경제계의 수범자에 포함된다. 연방통계청의 기업통계와 기업등록부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과 관련(즉, 수량요소의 조사와 관련하여)한 통계적 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기업등록부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전문통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기초자료만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특별히 농업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를 특정할 경우에는 농업통계를 원용할 수 있다.³⁶⁾

2. 시 민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이나 경제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정보제공의무는 시민이 부담해야 할 정보제공의무이다. 자연인이 1인

36) 예컨대 연방통계청의 농업구조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생태적 경작을 하는 농업 관련 기업이 13,563개에 달한다고 한다(이 수치는 모든 농업관련 기업의 3.5%에 달한다). 따라서 특별히 생태적 경작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예컨대 생태적 농업기업을 인증하는 절차의 경우) 이 수치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인으로서의 특성에 근거하여 그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정보제공의무는 경제계가 부담해야 할 정보제공의무이다.

3. 행정

행정과제의 수행을 담당하는 행정담당자는 국가기관(행정)이다. 행정도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행정이란 권리능력있는 단체, 공법상의 기관과 재단, 고권적 권한이 위임된 경우의 공무원탁사인 등을 포함한다.

IV.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모델이 취하는 가정

1. 표준활동의 이행을 위한 작업단계를 표준활동으로 세분화

표준비용모델에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단계를 이른바 표준활동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추산할 수 있기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는 예컨대 일정한 기업에서 진행과정을 분명하게 지켜보면서 이러한 진행과정이 개별적으로 표준화된 작업단계별료(표준활동) 분류해나가는 것이다. 이 일반적인 표준절차는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제공의무에 적용할 수 있고 특별한 표준절차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일반적인 표준절차는 산정담당자에게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제공의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제기와 단서를 제공해준다.

2. 정보제공의무의 평균적인 효율적 이행

그런데 표준비용모델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위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양식을 이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이상적인” 행위양식을 따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전형적인

행위양식이 도출되는데, 이 전형적인 행위양식이 표준비용모델의 분석목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 점에서 표준비용모델에서 행정적 절차와 행정행위 및 행정비용은 “통상적인” 내지 “평균적인” 행위양식, 즉 전형적인 행위양식에서 출발함으로써 표준화된다. 만약 극도의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효율적인 기업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인 행정비용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임무는 개별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준수를 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³⁷⁾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을 조사하는 방법은 대상집단에 속하는 다수의 전형적인 기업이나 위탁을 받은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정보제공의무의 이행과 결부된 개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관련되는 결과가 모순을 안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심사를 행한다. 관련되는 결과가 모순을 안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업들을 심사에 포함시켜서 표준화된 시간적 경비까지 확정할 수 있다.

평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비가 소요되는 행정활동을 실행하는 기업은 그 행정활동의 실행을 위한 시간적 경비가 다른 - 유사한 - 기업의 경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근거하여 기업들이 제시한 시간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통상적인 시간적 경비를 조사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들의 80% 이상이 하나의 행정활동을 실행하는 데 약 10분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은 통상적인 기업의 평균적 경비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평균적 경비는 나머지

37) 이에 관해서는 Merck(Hrsg.): Bürokratieabbau und Bürokriatiemess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ktober 2005, 48쪽 이하 참조.

기업들이 행정활동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최초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한 시간가치에 대한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가치를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국제적 연구그룹의 입문서를 보면 이와 관련하여 표에서 언급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의 시간측정]³⁸⁾

행정활동 A		행정활동 B	
기업 1	10분	기업 1	10분
기업 2	10분	기업 2	20분
기업 3	10분	기업 3	10분
기업 4	10분	기업 4	20분
기업 5	30분	기업 5	15분
행정활동 C		행정활동 D	
기업 1	10분	기업 1	10분
기업 2	20분	기업 2	20분
기업 3	50분	기업 3	25분
기업 4	2분	전문가 4	20분
기업 5	5분	전문가 5	15분

위의 표에 나타난 기준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활동 C의 경우에는 또 다른 기업들을 설문조사해야 한다. 이에 반해 다른 행정활동들(행정활동 A, B, D)은 분명한 경향을 인식할 수 있다. 행정활동

38) Charite, et al.: Das Standard-Kostenmodell, 27쪽(기준: 2005년 5월) 및 AMVAB(Hrsg.), Manual for conducting Standard Cost Model measurements, 55쪽.

A의 경우에는 10분으로 가정하고, B의 경우에는 15분, D의 경우에는 20분으로 가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활동 D의 경우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

3. 모델의 통일적인 적용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은 개별적인 규범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입법분야에 대해서도 행정적 부담의 규모에 관한 광범위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에 특수하게 상이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들이 통일적인 진행방식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다. 감당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고들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의 통일적인 적용과 통일적인 진행방식 및 측정결과에 대한 동일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자료작성과 확고한 방법론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들은 개념정의의 형식으로 측정의 이해와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표준비용모델은 실용적인 측정방식으로서 표준비용모델로부터 행정 부담의 규모에 대한 기준치 내지 표준치가 도출된다. 감축목표는 확정될 수 있고 중점분야는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조사된 표준치가 동일한 방법론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방의 각 부처가 표준비용모델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측정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자료의 처리와 그로 인하여 획득한 인식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을 실무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그것이 방법론상의 방향설정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무처가 해명한다. 방법론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해서는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2 절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산정모델

I.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을 위한 매개변수

정보제공의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수(parameter)가 있는데, 이 변수에는 ① 각 시간단위당 비용, ② 시간적 경비, ③ 송부의 빈도, ④ 목표그룹의 규모/수가 있다.

1. 각 시간단위당 비용

행정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요금, 공통비용 및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구입비용으로 구성된다. 요금(T)은 기업이 행정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가격과 각 시간단위당 행정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 임금(interner Lohnsatz)과 외부적 비용(externer Kostensatz)은 상호 구분해야 한다. 내부적 임금은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정활동을 함으로써 기업이나 행정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임금과 봉급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행정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질적 수준(Qualifikationsniveau)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질적 수준은 그 기초되는 임금비용의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매우 단순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질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무시하고 평균가치를 원용할 수 있다. 법률상 명시된 특정한 정보제공의무가 어느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정보제공의무가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인지 아니면 분야를 통괄하는 의무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전문분야의 임금을 고려해야 하지만, 분야를 통괄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임금을 고려한다. 이에 반해, 외부적 임금은 외부의

서비스제공자(예컨대 세무사, 공증인, 변호사)가 특정한 행정과정을 수행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외부의 서비스제공자에게 지불된 비용이 외부적 임금이 된다.

한편 당연비용, 공통비용, 구입비용 등의 개념도 있다. “당연비용”(Sowieso-Kosten)이란 기업이 통상의 업무 활동을 행하는 범위 안에서 “어차피” 조사하는 비용으로서 행정비용으로 고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통비용(Gemeinkosten)은 예컨대 부동산(임대료 또는 감가상각), 전화, 난방, 전기, IT설비 등과 같은 고정비용과 같이 개별적인 직원의 직접 임금을 합산할 수 있는 특정한 비용을 말한다. 공통비용은 연방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구입비용(Anschaffungskosten)이란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자재를 구입한 비용을 말한다. 구입비용의 경우, 기업이 오로지 특별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은 매년 감가상각율의 규모를 산정할 때 포함된다. 그러나 구입이 오로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자료를 창출해낼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구입은 정보제공의무를 측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예컨대 기업이 디지털 방식의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터넷망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인터넷망이 기업의 또 다른 통신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를 측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2. 시간(Zeit)

매개변수로서 시간(Z)이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분으로 환산한 소요시간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즉 분)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기업이 고용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2분일 경우 이 22분을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시간으로 본다.

3. 송부의 빈도(Übermittlungshäufigkeit)/주기성(Periodizität)

송부의 빈도(H)란 연간 얼마나 자주 특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송부의 빈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모든 기업이 일반적으로 1년 내에 12회의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세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부의 빈도는 12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4. 대상 그룹의 규모

대상 그룹의 규모란 일정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시민 또는 행정단위의 수를 말한다. 목표그룹의 규모는 한편으로는 정기적으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수범자에게 법률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사실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그룹의 규모는 당해 법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수를 통하여 결정된다. 다른 한편, 목표그룹의 규모는 실제로 발생한 사례의 수를 통하여 정의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경제계, 시민 또는 행정이 단지 특정한 행위만을 수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이다. 예컨대 모든 기업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약 300만개의 기업은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한 해 동안 300,000건의 영업신고가 행해졌다면 “영업신고”라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기업도 300,000개이다.

II. 행정비용 산정공식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총 행정비용은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별적 행정비용을 합산함으로써 도출된다. 실무에서는 각각의 특별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다음에 그 개별적인 결과들을 합산한다.

제 4 장 독일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VA = \sum_{i=1}^n VKi$$

VA =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총 행정비용

VKi = 정보제공의무 i의 행정비용

N = 관련된 정보제공의무의 수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의 비용(VKi)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VKi = Pi * Qi$$

Pi = 정보제공의무 i의 이행을 위한 의무

Qi = 정보제공의무 i의 연간 빈도

여기서 정보제공의무의 가격(Pi)은 행정활동의 수행을 위한 각각의 시간단위당 요금과 행정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곱함으로써 조사된다.

$$Pi = Ti \times Zi$$

Ti = 정보제공의무 i의 수행을 위한 임금

Zi = 정보제공의무 i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한 표준활동을 위한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Zi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활동시간의 합계이다.

$$Zi = \sum_{j=1}^M ZSij$$

ZSij = 정보제공의무 i의 표준활동 j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간

M = 표준활동의 수

정보제공의무의 표준활동은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표준활동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한 능력에 소요되는 비용도 그 단가를 달리한다. 따라서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요금 (Ti)은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임금을 시간에 중점을 두고 산정하는 산술적 평균이다.

$$Ti = \frac{1}{Zi} \sum_{j=1}^M TSij * ZSij$$

TSij = 정보제공의무 i의 표준활동 j의 수행을 위한 요금

한편, 수량(Qi)의 조사는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시민 또는 행정단위의 수를 연간 송부의 빈도와 곱함으로써 파악된다.

$$Qi = AN \times H$$

AN = 수범자(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시민, 행정)의 수
 H = 송부의 빈도(년간 수범자의 활동이 얼마나 자주 수행되는가)

이렇게 해서 “개별적” 정보제공의무(즉, 정보제공의무 i)의 이행을 위한 총행정비용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VKi = (Ti \times Zi) \times (AN \times H)$$

Ti = 정보제공의무 i의 수행을 위한 임금
 Zi = 정보제공의무 i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AN = 수범자(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시민, 행정)의 수
 H = 송부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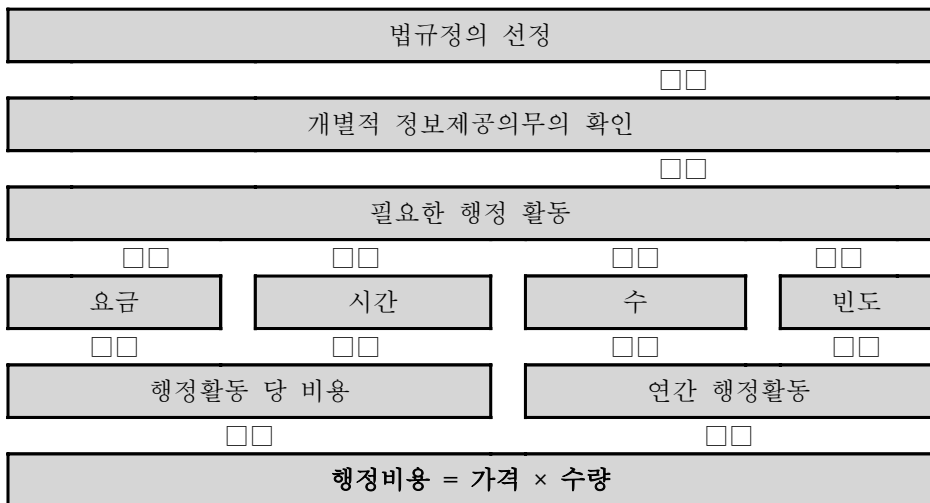
이상의 산정공식을 실제로 적용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특정한 행정활동이 3시간 소요되고(Zi) 당해 기업에서 그 행정활동을 담당하는 자의 시간당 임금(Ti)은 10유로이다. 따라서 가격(Pi)은 3 × 10유로 = 30유로이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이 100,000개 이고(AN), 이 기업들이 매년 2번(H)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량(Qi)은 매년 200,000건의 행정활동에 달한다. 이 경우 전체비용(VKi)은 200,000건 × 30유로로서 6백만 유로이다.

Ⅲ. 행정비용 산정절차

앞에서 언급한 행정비용의 산정공식을 참고하여, 법규정의 선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산정에 이르기까지의 행정비용 산정방식의 적용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산정방식의 적용표는 당해 행정비용이 현행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용인지, 장래에 도입될 규정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비용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

[산정방식의 적용]



다만, 앞에서 언급한 행정비용 산정공식은 기업과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에 의하여 유발된 행정비용의 산정공식일 뿐 시민에게 부과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산정공식은 아니다. 시민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요금은 산정되지 않고 시간적 경비만 수량화된다. 시민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화폐단위의 규모를 기초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경우에는 빈도(H)이외에 시간(Zi)이라는 지표가 결정적인 크기가 된다.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은 시간적 경비(Zi)와 양(Qi)을 곱한 것이다. 이로부터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은 $[VK_i = Z_i \times Q_i]$ 의 공식의 적용을 받는다.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행정비용의 합계(VK_i)가 곧 시민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이 된다.

제 3 절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절차

독일 연방통계청의 표준비용모델입문서³⁹⁾는 표준비용모델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적용절차에 관해서는 상세한 언급이 없다.⁴⁰⁾ 그 대신에 Bertelsmann 재단의 관련 문헌에 의하면

39) Statistisches Bundesamt, Einführung des Standardkosten-Modells. Methodenhandbuch der Bundesregierung, 2006.

40) 독일에서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과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이라는 두 개념이 존재한다. 여기서 후자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유발될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에 대한 측정으로서 이른바 사전적 추산 내지 사전적 산정을 말한다. 사전적 추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측정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독일의 경우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되어 있다. Leitfaden für die ex ante Abschätzung der Bürokratiekosten nach dem Standardkosten-Modell(SKM), Erste überarbeitete Version, Berlin, März 2008. 참조. 그 이유는 연방정부공통업무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1일부터 연방정부는 입법평가(GFA)의 일환으로서 정보제공의무에 의한 경제계, 시민, 행정에 대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사전평가하고 그것을 입법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표명할 것이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 적용절차가 잘 드러나 있다. 이 점에서 여기서는 Bertelsmann 재단에서 출간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절차⁴¹⁾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표준비용모델의 구체적인 적용은 4가지 과정속에서 총 13단계의 조사단계를 거친다. 이들 개별적인 단계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첫 번째 과정 : 정보제공의무의 분석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와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과정에서는 ① 조사대상의 확정, ② 법령의 분석, ③ 결과의 신뢰성확인 순으로 분석이 진행된다.

1. 제1단계 : 조사대상과 우선순위의 확정

(1) 조사대상의 확정

표준비용모델에 다른 조사대상의 범위는 매우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사자의 목표설정 에 따라 조사의 대상은 특정한 조문이 될 수도 있고, 법령 자체가 될 수도 있으며, 관할 부처에서 관리하는 모든 법령이 될 수도 있다.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는 조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목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관할 부처는 원칙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주건축법(Landesbauordnung)을

41) Ronny Kay, Teil III: Anwendungsverfahren des Standard-Kosten-Modells in: Bertelsmann Stiftung(Hrsg.), Handbuch zur Messung von Informationskosten, 2006.

조사한다는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은 형식적인 법률이 된다. 그러나 주건축법의 경우에는 수많은 관련 시행령이나 행정규정이 발효되고 있다. 이러한 주건축법 관련 시행령이나 행정규정들은 주건축법 그 자체보다 훨씬 많이 행정비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형식적인 법률, 즉 주건축법은 그와 관련한 시행령과 행정규정들 이외에 다른 법률들과도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컨대 주건축법에는 연방환경보호법(Bundesimmissionsschutzgesetz)을 준수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방환경보호법상의 규범들도 고려하고자 한다면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하기 위한 제반 가정들이 매우 많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과 그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시행령이나 관련 행정규정 등과 같은 수직적 규범구조하에 있는 규범들만을 측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반해, 예컨대 주건축법과 연방환경보호법 등과 같은 수평적 구조에 있는 규범들은 측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⁴²⁾ 요약하자면,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는 조사대상을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포착되지 않은 모든 규범들은 그 이후의 진행단계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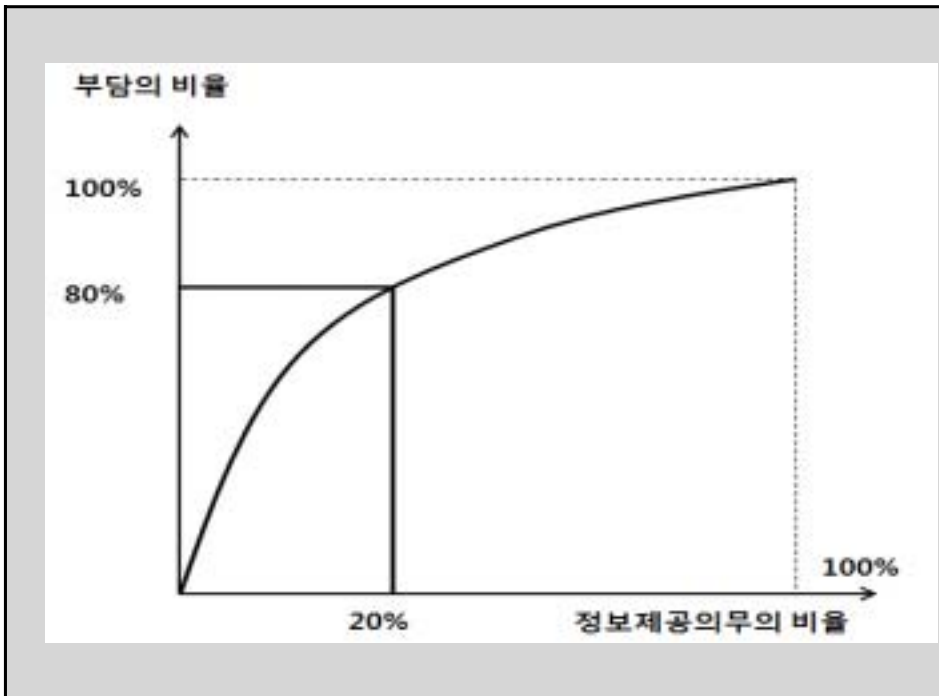
(2) 우선순위의 확정

행정비용의 감축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가장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으로부터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필

42) Ronny Kay, a.a.O., 8쪽.

요가 있다. 행정부담의 대부분이 소수의 정보제공의무에 의하여 야기된다는 가정이 맞다면 올바른 측정순서를 정함으로써 조기에 행정비용의 많은 부분을 조사할 수 있다.⁴³⁾ 아래의 그림은 정보제공의무의 20%가 행정비용의 80%를 야기한다는 가정 속에서 이러한 관련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이론상의 상대적인 부담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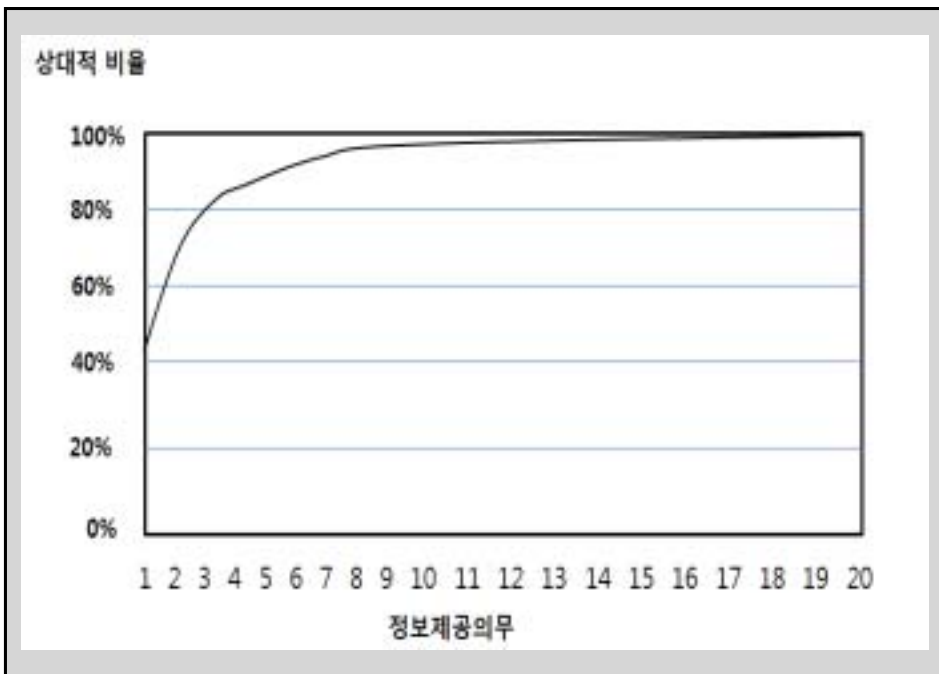


독일 중산층연구소(Institut für Mittelstandforschung)는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 총 20개의 정보제공의무를 분석하여

43)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입문서에도 우선성이 성공을 보장하는 조사 전략으로 추천되고 있다. Österreichisches Finanzministerium (Hrsg.): Handbuch Standardkostenmodell Österreich, Wien 32쪽 및 35쪽.

그 비용을 산정한 바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예에 대하여 누적화된 상대적인 부담의 분포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는 전체 부담의 90% 이상이 이미 4개의 큰 정보제공의무에 의하여 유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산층연구소의 연구에서 나타난 상대적인 부담의 분포]⁴⁴⁾



조사된 정보제공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의무의 부담이 가져오는 효과가 얼마나 상이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측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44) 출처: IfM(Hrsg.): Ermittlung bürokratischer Kostenbelastung in ausgewählten Bereichen, Bonn, 2006에 기초하여 독일 연방통계청이 독자적으로 작성.

앞의 두 그림이 제시해주는 것은, 잠정적으로 가장 큰 행정비용을 가진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는 결과가 보다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 작성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목록을 그 잠정적인 비용중요성에 따라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제2단계 : 법령의 분석

이 단계에서는 해당 수범자(경제계, 시민, 행정)를 언급하면서 정보제공의무와 제공될 정보의 내용을 완전하게 조사한다. 이 단계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령의 내용적 의무,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 정보의 내용 및 행정행위 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보고의무, 인가의무, 승인의무, 공포의무, 공개의무, 등록의무, 협력의무, 면제의무 등이다.

(1) 법령상 기업의 정보제공의무의 조사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법령상 기업의 정보제공의무를 파악하는 것이다.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는 조문별로 파악되어야 한다. 당해 의무가 정보제공의무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자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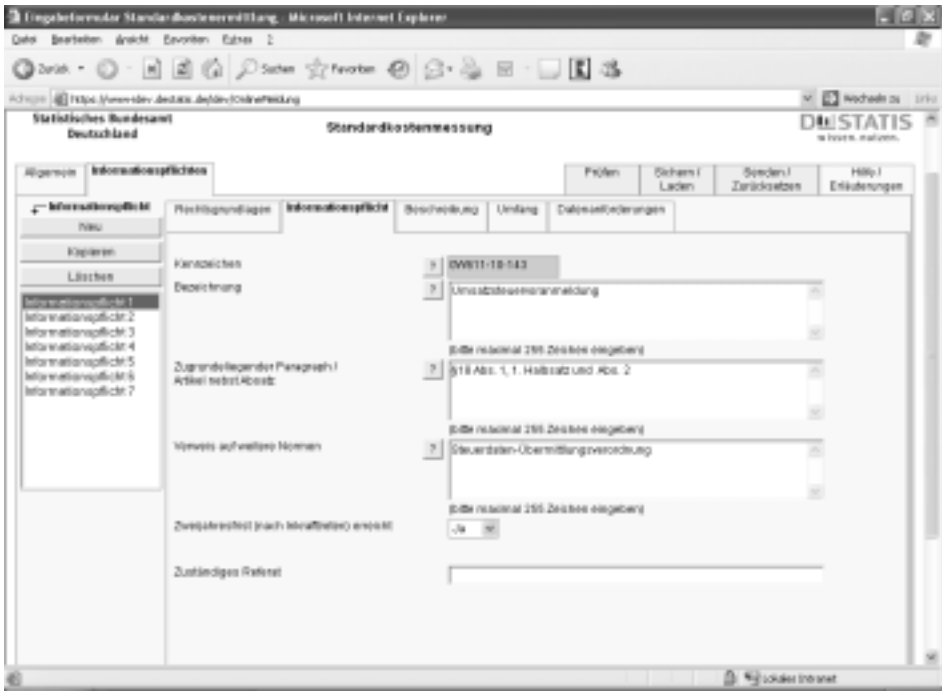
- 당해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인가? 이것이 부정된다면 당해 의무는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다.
- 법령상의 당해 의무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수범자가 오로지 시민이거나 그 밖의 경제적 조직단위인 경우에는 기업의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 법령상의 의무를 통하여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가? 법령상의 의무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주체의 일정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

거나 자원의 분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라 법령의 내용상의 의무이다.

- 법 규정으로부터 기업과 국가, 기업과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제 3자간의 (잠정적 또는 간접적인) 정보이전이 발생하는가? 이를 긍정한다면 당해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는 기업의 정보제공의무이다.

법령에서 확인된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제공의무는 체계적으로 자료은행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통계청은 웹사이트에 기반한 전자적 입력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전자적 입력시스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통계청의 전자적 입력시스템의 일부]



이 전자적 입력시스템은 개별적 절차의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이 자료를 작성

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만 외부에 대하여 결과의 투명성과 실감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적 입력시스템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전자적 입력장치는 구조화된 자료 작성을 보장하고 중앙 자료은행에서 개별 부처가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다. 연방 각 부처의 각각의 담당자들은 연방통계청에 사용자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게 되며,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등록자료은행에 그 인적 사항 등이 입력된다. 이러한 등록기술을 도움으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각종 보고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질문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배열된다. 그 뿐만 아니라 권한있는 사용자만이 인터넷을 통한 각종 보고를 송부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전자적 입력시스템에 나타난 양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갖추고 있다.

- 법적 근거 : 여기서는 처리된 법규범(법률, 시행령, 행정규정)을 상세하게 다룬다.
- 정보제공의무 : 여기서는 담당자가 파악되어야 할 정보제공의무의 가능한 한 일상언어적인 명칭을 기재하고 그 정확한 법적 근거를 서술한다.
- 서술 : 정보제공의무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서술한다.
- 범위 : 수범자가 연간 정보제공의무를 얼마나 자주 이행해야 하는지를 추산하여 서술한다.
- 자료내용 : 수범자가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송부해야 하는지를 서술한다.

(2) 제공될 정보의 내용

법령상의 모든 정보제공의무를 파악한 이후에는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내용을 확인한다. 이 경우 표준적 정

보내용에 속하는 것으로는 신청, 보고, 등록, 신고, 공포, 기재, 질문지 등이다.

특정한 정보의 내용들은 기업이 다양한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작성하기 위한 핵심절차는 기업에서 한 번만에 실행된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유발되는 행정비용은 그것을 산정할 때 1번만 포함시킬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세무서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회사에 특정한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은 동일하다. 정보의 이전만 다를 뿐이다(세무서, 사회보험회사). 따라서 이러한 핵심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유발되는 행정비용은 각 50%씩 세무서에 신고할 정보제공의무와 사회보험회사에 신고할 정보제공의무로 정렬된다.⁴⁵⁾

3. 제3단계 : 결과의 신뢰성확인

이 단계에서는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조사된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결과의 신뢰성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실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오히려 일차적인 목표는 행정비용을 감축할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 기초하여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한 각종 제안을 작성하고 논의될 수 있다. 측정결과에 대하여 광범위한 수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2단계에서 조사된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와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에 관한 목록을 모든 관련되는 담당자나 기관에게 제출하여 그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하여 검토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45) 그러나 오늘날 한 기업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핵심절차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구별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체적인 핵심절차만 측정될 수 있을 뿐이다.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자문위원회의 대표자를 참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두 번째 과정 : 표준절차의 확정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는 두 번째 과정에서는 표준화된 비용에 대한 관념을 최초로 구체화한다. 두 번째 과정의 목표는 제공되어야 할 각각의 정보마다 표준화된 작업과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정은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행한다.

1. 제4단계 : 잠정적 표준절차의 작성 작업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목표는 정보제공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으로 효율적인 준수를 가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것은 작업과정과 비용변수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제4단계와 아래의 제5단계에서 중점을 차지하는 것은 오로지 기업의 작업과정이다. 이렇게 기업의 작업과정에 대하여 특별히 고찰하는 이유는 필요한 정보가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조사자와 전문가는 작업과정을 알고 있고, 기업은 필요한 시간과 요금을 알고 있다.

제4단계에서 조사자는 하나의 기업에서 정보를 준비하고 이로써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작업단계를 확인한다.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단계의 총계가 작업과정으로 된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은 정책담당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매우 의미있는 작업단계만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에서는 표준적인 정보내용을 준비하

기 위한 표준절차가 원칙적으로 14 단계로 분류된 일반적 표준활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표준비용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 16개의 상이한 표준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⁴⁶⁾ 네덜란드에서와는 달리 독일의 측정절차에서는 14개의 표준활동이 아니라 16개의 표준활동을 취하고 있다. 표준활동을 확정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측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독일이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표준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표준절차]⁴⁷⁾

연 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설 명
I	정보제공의무의 업무 익히기	정보제공의무가 정기적으로 변경되거나 가끔씩 적용되는 관련성
II	자료의 수집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III	양식의 작성, 기입, 표시	예컨대 신청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IV	산정의 실시	어떠한 산정, 평가, 계산이 실시되어야 하는가?
V	자료의 심사 및 입력	발생할 수 있는 감독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VI	문제점 수정	발생할 수 있는 수정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VII	자료의 준비	자료의 준비에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VIII	자료의 송부 및 공개	자료송부 또는 자료나 정보의 공개로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IX	내부 회의	필요한 내부회의를 통하여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46) 덴마크와 관련해서는 AMVAB (Hrsg.), Manual for conducting Standard Cost Model measurements, Juni 2005, 31-32쪽 참조; 영국에 관해서는 Barnes, e1 al.: Die Messung administrativer Kosten: Handbuch für das Standard Cost Model in Großbritannien, September 2005, 56-57쪽 참조.

47) Leitfaden für die ex ante Abschätzung der Bürokratiekosten nach dem Standardkosten-Modell(SKM), Erste überarbeitete Version, März 2008, Berlin, 11쪽.

제 4 장 독일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연 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설 명
X	외부전문가 회의	필요한 외부전문가회의(예: 세무사와의 회의)를 통하여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I	지불명령서의 완료	예컨대 송금자가 송금서류를 작성하므로써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II	복사, 문서정리, 분산	그 밖에 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내용
XIII	공공기관에 의한 심사	예컨대 경영평가사에 의하여 유발된 내부적 비용
XIV	공적인 심사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할 각종 수정	자료의 수정, 추가적인 정보준비
XV	관할 기관과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보수집	추가적인 정보준비를 위한 비용
XVI	계속교육 및 연수에의 참여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이 우선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관련된다.

조사자의 임무는 일반적인 표준활동을 특별한 정보내용에 적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표준활동은 조사자에 의하여 특별한 정보내용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준활동을 특별한 정보내용에 적절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사자는 각각의 단계를 머리속에 염두에 두고 잠정적인 표준절차를 성해야 한다.

2. 제5단계 : 표준절차의 조정과 확정

제5단계에서는 제4장에서 작성한 잠정적인 표준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정하여 최종적인 표준절차를 확정한다.

제5단계의 목표는 표준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5단계에서 조사자는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절차가 수범자와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잠정적인 표준절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 전문가란 회계사, 건축가, 세무사, 설계사 등과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잠정적인 표준절차는 조사자의 인터뷰설문조사지로 평가된다. 이것은 조사자가 표준절차에 기초하여 전문가에게 의도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인터뷰는 표준절차 모두를 질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표준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특별한 사항을 수정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자가 생각했던 대안을 폐기하거나 또 다른 중요한 표준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인터뷰를 통하여 잠정적인 표준절차를 조정한 이후에는 최종적인 표준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Ⅲ. 세 번째 과정 : 비용변수의 조사

세 번째 과정에서는 확정된 표준절차에 기초하여 비용변수를 조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제공될 정보의 내용적 수준에 기초하여 행정비용의 원천을 결정한다. 비용변수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① 경험치와 통계에 기초한 비용변수의 결정, ② 전형적인 기업에서의 시간변수와 요금변수의 조사, ③ 행정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의 빈도변수의 조사 등 3가지의 조사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정은 총 4단계에 걸쳐 실행된다.

1. 제6단계 : 조사자 - 경험치와 통계에 기초한 조사

제6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용변수를 조사하고 질적으로 평가한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표준절차에 기초하여 비용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지를 작성한다. 관련되는 비용변수는 다음과 같다.

- 건수 내지 사례수(N)
- 주기성(F)
- 시간(H)
- 요금(T)

(1) 건수의 확정

건수의 확정이란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가 “건수”라는 비용변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기업이 사회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이 사례에서 발생한 정보제공의무의 빈도는 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통하여 결정된다. 또한 기업이 근로조건에 관한 보고서를 행정기관에 송부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례에서 빈도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수를 통하여 결정된다.

(2) 주기성의 확정

주기성이란 연간 얼마나 되는 특정한 정보를 송부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주기성은 대부분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특정 법률에서는 공장에서의 유해물질오염에 관하여 1년에 2회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로부터 기업에 유발되는 행정비용은 1년에 2번(F=2) 발생한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

계획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정기적인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례중심의 1회성 정보제공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주기성은 1이 된다($F=1$). 한편 심사관이 매 5년마다 그 심사관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성은 0.2가 된다.

(3) 시간의 확정

시간변수란 기업이 필요한 행정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작업시간이 요구되는지에 관련되어 있다. 시간변수를 확정하는 문제는 작업과정의 복잡성과 적용의 빈도에 달려있다. 이것은 표준절차에서 확정된 모든 필요한 행정활동에 대하여 기업의 자료를 측정하고 문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행정활동은 경험치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되는 경험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하게 존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아야 한다. 예컨대 특정한 양식을 기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매우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특정한 행정활동의 시간변수를 조사하는 방식은 가정하는 빈도의 변수에 의존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가정된 빈도변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행정활동이 복잡하면 할수록 그 측정은 더 상세하게 되어야 한다.

가) 시간측정을 위한 방법론

시간을 측정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은 연방통계청에서 실시한다. 기업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연방 각 부처가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기관에 측정을 위탁할 경우에는 연방수상청 사무처가 연방통계청과 협의하여 관련 부처에 문의한 후 외부 위탁업체를 선정한다. 시간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다. 방법론으로는 전화인터뷰, 현장인터뷰, 설문지에 의한 설문

조사, 델파이 설문조사(서면, 스톱워치방법론 등)가 있다. 측정을 위한 상이한 방법론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마다 그에 적합한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

① 전화인터뷰

전화인터뷰는 신속하고 비교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결과를 양산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⁴⁸⁾ 전화인터뷰는 그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볼 때 신속한 결과가 필요하고 비교적 많은 기업이 설문 대상이 되며 측정되어야 할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때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전화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기업별로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대면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상황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것은 스톱워치방법론의 핵심이다)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추적은 특히 복잡한 경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다.

② 현장인터뷰

(구조화된) 현장인터뷰는 인터뷰를 하는 자와 설문조사 대상자간의 직접적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준다. 현장에서는 인터뷰를 담당하는 자가 답변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반 상황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인터뷰는 전화인터뷰에 비하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적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설문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장인터뷰는 복잡한 정보제공의무이면서 모든 기업이 관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설문의 대상으로 되는 기업의 수가

48) 전화인터뷰를 실시하는 이유와 적절한 표본을 선택할 경우의 진행과정에 관해서는 Häder, Telefonstichproben, ZUMA, How-to-Reihe, Nr. 6, 2000 참조.

적은 경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③ 전문가인터뷰

전문가인터뷰는 반드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자를 설문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그 밖의 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자, 예컨대 조세상의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세무사나 건축문제의 경우 건축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설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기업 그룹을 대표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전문가인터뷰는 보다 유리하고 신속하게 설문조사를 하게 한다. 특히 복잡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개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인터뷰는 특히 비교적 많은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적합한 설문조사방식이다. 또한 전문가인터뷰는 달리 서술된 절차들 중의 어느 한 절차를 도움으로 획득한 결과의 신뢰성을 심사할 경우에도 활용된다. 전문가에게 특별히 적합한 복잡한 문제제기의 경우에는 측정분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측정이 특히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인터뷰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측정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측정방법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된다.

④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게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이러한 설문조사지가 회송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하여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야 할 경우보다 더 많은 설문조사지를 발송해야 한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설문조사의 대상자

가 자신에게 문의된 설문조사의 문항에 대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설문조사지에 기재된 설문문항도 분명하고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역질문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예컨대 전화 핫라인을 통하여). 또한 제반 상황을 추적해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지의 설문문항에 응답을 기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기업체 내에서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는 많은 기업들이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비교적 단순한 정보 제공의무에 대하여 설문하거나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⑤ 텔파이 설문조사

텔파이 설문조사(서면에 의한 전문가설문조사)란 서면에 의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말한다. 전통적인 설문조사에서와는 달리 텔파이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설문의 결과를 접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평가를 수정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텔파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우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 1차 조사는 평가되고, 그 이후 그 결과는 설문조사지와 함께 2차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송부된다. 이와 같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분리해서 실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문제제기에 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최선의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이 결과를 접함으로써 그룹토의가 시뮬레이션 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그룹토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룹 내 개인의 의견이 그룹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텔파이 설문조사의 또 다른 장점으로서는 전문가의 대부분이 구두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텔파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달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텔파이 설문조사의 경우에

도 저조한 회신률 등의 단점이 있다. 경험연구에 의하면, 델파이 설문조사의 경우 회신되지 못하는 비율이 전통적인 설문조사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⁴⁹⁾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인하여 일반적인 문서에 의한 설문에 비해 문제제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위하여 투입되는 델파이 방법론은 비교적 많은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문제제기의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스톱워치방법론

스톱워치방법론은 여기서 언급한 측정방법론들 중 가장 복잡한 것이다. 스톱워치방법론은 Bonn에 소재하고 있는 중산층연구소에 의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행정비용의 부담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⁵⁰⁾ 다른 방법론들과는 달리 스톱워치방법론은 설문대상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의무가 개별적인 절차단계로 세분화된다. 그 다음으로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절차과정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 경비를 측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상황을 추적해 나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확고한 필수사항이다. 다른 어떤 절차에서도 스톱워치를 이용한 시간적 경비의 측정절차보다 주의깊게 시간이 조사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시간측정을 위한 사항들은 객관화된다. 그러나 스톱워치방법론에서도 주관적인 요소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간적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와 결부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스톱워치방법론이 특히 적합한 예로는 적은 수의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고도로 복잡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은 비교적 적은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행해지

49) 델파이 설문조사에 관해서는 Vorgrimler/Wübben, Die Delphi-Methode und ihre Eignung als Prognoseinstrument, in Wirtschaft und Statistik, Heft 8, 2003, 763-774쪽 참조.

50) 스톱워치방법론에 관해서는 IfM(Hrsg.): Ermittlung bürokratischer Kostenbelastung in ausgewählten Bereichen, Bonn, 2006.

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스톱워치방법론에 의한 절차는 다른 측정방법론의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그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나) 시간의 측정

국가가 부담시킨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개별적으로 표준화된 부분활동으로 세분화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활동 내지 표준활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개별적인 표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의 총계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표준시간이 된다. 따라서 표준절차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스톱워치조사 또는 그 밖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표준절차의 지침을 통하여 인터뷰를 실시하는 자는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이상적으로 준수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과정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은 표준화된 비용을 조사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표준절차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표준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변수와 임금변수를 조사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목표지향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관찰하는 담당자가 표준절차에서 확정해두고 있는 행정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정한다. 조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결과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변수이외에 일반적으로 국가가 유발한 행정활동을 기업체 내에서 수행하는 직원(관리직 직원, 일반 직원 등)의 질적 수준(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⁵¹⁾ 이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

51) Bertelsmann Stiftung, Handbuch zur Messung von Bürokratiekosten, 2006년판 참조.

는 외부 기관(세무사, 건축가 등)이 정보제공의무를 처리했는지에 관한 정보도 조사해야 한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한 네덜란드의 경험에 의하면, 실무에서 정보제공의무는 거의 14개의 표준활동으로 서술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들이 구체적 내용이나 정보제공의무의 목표그룹과는 무관하게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보제공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과 필요한 직적 수준(즉, 직원의 질적 수준)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측정되거나 설문조사되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네덜란드에서는 행정활동분류시스템(Classification System Administrative Activities: CASH)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래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⁵²⁾

행정활동을 적은 개별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은 모든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기업이 투입한 기술과 투입된 직원의 질적 수준에 관한 최초의 자료가 도출된다. 이를 통하여 기업체 내에서의 개별적인 절차단계들 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⁵³⁾

유의할 것은 특별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항상 14개의 표준활동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표준활동을 16개로 구분하고 있다.

표준활동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그에 상응하게 구술에 의한 설문조사형식을 위한 설문지침서,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지 또는 스톱워치를 위한 시간입력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시간의 측정 내지 설문과 관련하여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체 직

52) CASH란 Classific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ctivities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Activities는 네덜란드 말로 Handelingen을 뜻한다. Nijsen/Vellinga, A model to measur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businesses, Zoetermeer 2002 참조.

53) IfM(Hrsg.), Ermittlung bürokratischer Kostenbelastung in ausgewählten Bereichen, Bonn, 2006 참조.

원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문의해야 한다.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절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교섭해야 한다. 이에 반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그룹에 특별한 결과들이 전문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사례(예: 결과가 기업체의 규모나 경제분야에 따라 차이가 날 경우)에서는 각각의 그룹별로 충분한 기업의 수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평가를 절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적게 나타나는 위험이 나타나게 된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시간측정을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능한 한 적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할 때 기업체들을 교대로 대상으로 삼고 유사한 정보제공의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문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설문에서 다수의 정보제공의무들이 문의되는 전문가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전문가들을 교대로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유사한 정보제공의무들을 묶어서 문의해야 한다.

현행법상의 정보제공비용의 측정과는 달리 사전적 추산의 과정에서는 기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경험치를 토대로 실용적인 추산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① 이미 측정된 정보제공의무와 유사한 정보제공의무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이미 측정된 정보제공의무를 활용하고, ② 유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와 복사 또는 정보의 송부 등과 같은 일반적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간가치표⁵⁴⁾(Zwitwerttabelle)를 활용하고, ③ 시간

54) 시간가치표는 일반적인 표준활동에 따라서 분단위의 수치를 간단·중간·복잡의 세 가지로 나눈다. 시간가치표에서 파악되는 모든 가치는 그 이후의 다양한 고려를 위한 최초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시간가치표에 따라 조사된 시간가치는 항상 전문가의 관점에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평가를 도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가치표에 따라 조사된 가치가 어떻게 보더라도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었다는 충

가치표로부터 납득할 만한 시간가치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시간가치표]

	일반적인 표준활동	단순 (분)	중간 (분)	복잡 (분)	설 명
I	정보제공의무의 업무익히기	3	15	120	정보제공의무가 정기적으로 변경되거나 가끔씩 적용되는 관련성
II	자료의 수집	3	15	120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III	양식의 작성, 기입, 표시	3	7	30	예컨대 신청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IV	산정의 실시	3	20	120	어떠한 산정, 평가, 계산이 실시되어야 하는가?
V	자료의 심사 및 입력	1	5	45	발생할 수 있는 감독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VI	문제점 수정	2	10	60	발생할 수 있는 수정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VII	자료의 준비	3	15	120	자료의 준비에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VIII	자료의 송부 및 공개	1	2	10	자료송부 또는 자료나 정보의 공개로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IX	내부 회의	5	30	480	필요한 내부회의를 통하여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	외부전문가 회의	10	60	480	필요한 외부전문가회의(예: 세무사와의 회의)를 통하여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현실에 가까운” 가치를 추산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독일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일반적인 표준활동	단순 (분)	중간 (분)	복잡 (분)	설 명
XI	지불명령서의 완료	2	8	30	예컨대 송금자가 송금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II	복사, 문서정리, 분산	2	5	15	그 밖에 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내용
XIII	공공기관에 의한 심사	2	30	240	예컨대 경영평가사에 의하여 유발된 내부적 비용
XIV	공적인 심사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할 각종 수정	3	90*	90*	자료의 수정, 추가적인 정보준비
XV	관할 기관과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보수집	3	15	120	추가적인 정보준비를 위한 비용
XVI	계속교육 및 연수에의 참여	3	35	480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이 우선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관련된다.

* 사례건수가 적기 때문에 중간과 복잡간의 구별을 하지 않았음

(4) 요금의 확정

요금(Tarif)이란 하나의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 경우 내부적 요금과 외부적 요금을 구별해야 한다.

내부적 요금이란 해당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인건비나 임금 등이다. 모든 행정활동은 하나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질적 수준이 요구되는지를 질적으로 평가된다. 이 질적 수준은 어떠한 임금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내부적 요금의 경우 법령상의 특정한

정보제공의무가 어느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정보제공의무가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인지 아니면 분야를 통괄하는 의무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전문분야의 임금을 고려해야 하지만, 분야를 통괄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예컨대 일반적인 소득세에서와 같이 특수한 경제분야가 문제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외부적 요금은 외부의 서비스제공자(예컨대 세무사, 공증인, 변호사)가 특정한 행정과정을 수행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이 외부적 비용에 기초하여 비용을 측정한다. 외부적 요금을 특별요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표준활동을 외부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요금이 적용된다. 예컨대 사전적 추산의 경우 1인의 세무상담사의 별도의 표준요금은 시간당 65유로로 가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비 이외에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정보를 송부하기 위한 우편비용, 복사비용, 사진비용 등과 같은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비용은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한 구입한 경우에만 산정의 대상이 된다.

한편,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질적 수준(업무처리 능력)도 간단, 중간, 고도의 질적 수준이라는 표준요금표로 구분된다.⁵⁵⁾ 독일 연방통계청은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표준요금표를 작성해 두고 있다.⁵⁶⁾

55) 간단한 질적 수준이란 단순사무를 말하고, 중간정도의 질적 수준이란 회계부서의 행정업무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말하며, 고도의 질적 수준이란 간부급 행정직원의 행정업무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56) 연방통계청의 표준요금표는 특별히 행정활동을 위한 요금요소를 입증할 수 있기 위하여 일반 상업회사의 직원이 받는 급여계약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전적 추산을 위한 연방통계청의 요금표]⁵⁷⁾

경제분야 ⁵⁸⁾	질적 수준			평균
	단순	중간	복잡	
A 농업 및 산림업	13.8	18.4	22.1	18.1
B 어업 및 양식업	16.1	23.8	29.9	23.3
C 광산 및 석탄과 철광의 채취	19.9	27.5	36.7	28.0
D 가공업	20.9	33.5	53.7	36.0
E 에너지 및 수자원업	25.2	38.0	54.8	39.3
F 건축업	15.8	26.5	44.6	29.0
G 매매, 보수, 자동차수선 및 중고품업	20.4	23.9	38.9	27.7
H 요식업	11.5	18.6	23.7	17.9
I 교통 및 뉴스전달업	22.5	28.3	40.4	30.4
J 신용업 및 보험업	24.7	37.6	52.8	38.4
K 부동산 및 주거제도, 동산의 임대, 경제적 서비스 제공 등	18.8	28.9	46.4	31.4
L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험	21.2	32.6	52.4	35.4
M 교육 및 강습	20.7	31.9	51.1	34.6
N 보건제도, 동물위생제도, 각종 사회보장제도	18.7	28.8	46.2	31.2
O 기타 공적 서비스와 개인적 서비스의 제공	19.0	29.3	47.0	31.8
전체경제(A-O)	19.3	28.5	42.7	30.2

(5) 사전적 추산의 경우 특이점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비용의 추산과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비용의 추산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57) 표준요금표는 경제분야와 질적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58) 경제분야의 분류(Klassifikation der Wirtschaftszweige) 2003년판(WZ 2003)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과 결부된 행정비용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필요한 행정비용을 “추산”(Schätzung)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부처의 담당자가 “복잡한 정보제공의무”를 새로이 창설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연방통계청이 추산을 실시하고, 덜 복잡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연방 각 부처가 가격요소를 추산한다. 이 경우 현존하는 조사결과들, 연구결과들 또는 현존하는 측정결과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례수가 매년 10,000건을 초과하지 않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간이절차에서 부담을 추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는 아래의 표에서 제시하는 비용등급에 정렬되고, 부담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서 지적된 비용요소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비용등급과 비용요소]

비용등급	비용요소 (유로)
모든 경제부문이 관련되는 특정한 활동의 신고와 보고의무	0.41
특정한 경제부문만 관련되는 특정한 활동의 신고와 보고의무 (단순)	2.48
특정한 경제부문만 관련되는 특정한 활동의 신고와 보고의무 (중간정도의 복잡)	4.01
특정한 경제부문만 관련되는 특정한 활동의 신고와 보고의무 (매우 복잡)	26.06
제3자를 위한 표시의무(단순)	0.44
제3자를 위한 표시의무(중간정도의 복잡 및 매우 복잡)	11.34
표시의무없는 정보제공	4.38
개별적 승인과 일반적 승인(단순)	7.58
개별적 승인과 일반적 승인(중간정도의 복잡 및 매우 복잡)	34.62

제 4 장 독일 표준비용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비용등급	비용요소 (유로)
등록	88.33
인증, 감독(통제)방문, 협력의무	70.31
조세/보조금(단순)	6.76
조세/보조금(중간정도의 복잡)	16.64
조세/보조금(매우 복잡)	188.09
기타 정보제공의무(단순)	0.80
기타 정보제공의무(중간정도의 복잡 및 매우 복잡)	1.44

2. 제7단계 : 기업 - 시간변수와 요금변수의 조사

제7단계에서는 선별된 “전형적인” 기업의 현장에서 모든 시간변수와 요금변수를 조사한다.

제7단계에서 조사자는 확정된 표준절차에 기초하여 특히 시간변수와 요금변수가 어떠한 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이 경우 조사자는 수많은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험치를 원용할 수 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모든 시간변수와 요금변수들은 선별된 “전형적인” 기업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조사된다.

(1) 전형적 기업의 선별

“전형적인” 기업은 질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관점을 통하여 선별된다. 이 경우 질적인 관점에서의 요구사항으로는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만약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만이 특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업이 “전형적인” 기업이다. 한편, 효율성 관점에서

전형적인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수의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거나 추가적으로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절차에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건축계획은 건축주가 이행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건축허가신청절차에서 가능한 한 다수의 추가적인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2) 전형적 기업의 수

전형적인 기업의 수는 우선 특별한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수에 의존되어 있다. 즉, 보다 많은 정보제공의무가 상이한 수범자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과정에서 보다 더 많은 인터뷰가 실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건축법의 적용범위는 주건축법 그 자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건축법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시행령과 행정규정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주건축법에 명시된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문도 상이하다. 그런데 건축허가의 경우 수범자는 건축주이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주 스스로가 관련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인터뷰는 건축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제8단계 : 행정기관 - 빈도변수의 조사

제8단계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빈도변수를 조사한다.

(1) 주기성의 조사

주기성은 직접적으로 법령상의 규정에 명시된 건수에서 도출되는데, 이는 이미 제6단계에서 조사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그 주기성에 관하여 문의할 필요가 있다.

(2) 건수의 조사

제6단계에서는 비용변수인 건수가 어떠한 질을 가지는지 확정되었다.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통계를 적절한 자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만약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적절한 자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면 조사자는 이 자료를 우선적으로 원용하여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그 주기성에 관하여 문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문의가 요구되는 예로는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가 기업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 그 자체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4. 제9단계 : 입법자 - 행정비용의 원천의 결정

제9단계에서는 입법자가 어떠한 정보제공의무와 정보의 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행정비용을 산정한 이후에는 어떠한 비용이 입법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비용의 규모는 본질적으로 법령상의 내용적 의무,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 정보의 내용, 정보의 준비를 위한 인프라 등 4가지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이나 집행기관은 이 4가지 요소에 완전하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관 내지 집행기관은 유럽연합 차원, 연방 차원, 주차원, 자치단체차원으로 구분된다.

표준비용모델은 행정비용의 원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규범을 정보제공의무, 정보의 내용 및 행정활동이라는 요소로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투명하게 할 수 있다.

IV. 네 번째 과정 : 조사결과의 확정

네 번째 과정에서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다. 분야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자료들은 평가되고 표준화된다. 이어서 관련 담당자와 함께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조사결과서를 작성함으로써 종료된다.

네 번째 과정은 4개의 단계를 거친다.

1. 제10단계 : 비용변수의 잠정적 표준화

제10단계에서는 제8단계에서 조사된 시간변수와 요금변수 및 외부적 비용을 잠정적으로 표준화한다.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행정비용의 조사는 표본적인 설문조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표준비용은 집중적인 법령분석과 전문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된다. 따라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의 건수는 통계적으로 정확한 설문조사에서 의미하는 표본의 수가 아니라 비교적 소수의 전형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화할 경우에는 일상적인 통계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간변수의 표준화는 오로지 평균치만의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변수에 대해서는 질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분야연구(예: 경제분야)에서 조사된 극단적 수치는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서 “통상적인” 가치의 평균치를 산정한다. 그 결과는 행정활동을 위한 표준시간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표준비용모델은 전체결과의 오류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간주된다. 개별적 작업단계의 표준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합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규모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2. 제11단계 : 결과의 신뢰성확인

제11단계에서는 잠정적인 표준화된 비용변수를 전문가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신뢰성을 검증한다.

제11단계의 과제는 특정한 분야에서 필요한 작업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정적으로 표준화된 결과를 문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빈도변수는 전문가토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전문가의 논증에 기초하여 잠정적으로 표준화된 비용변수가 수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하게 확정된다.

3. 제12단계 : 자료의 산정모델 속으로의 입력

제12단계에서는 표준화된 비용변수를 산정모델에 입력한다.

제11단계에서 조사되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모든 정보들은 자료은행에 입력된다. 측정결과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조사의 최저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비용변수를 입력한 이후에는 각각의 정보내용별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4. 제13단계 : 조사보고서의 작성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조사는 조사보고서의 작성으로 종결된다.

조사보고서에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결과를 요약해서 서술한다. 참고로 조사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벨기에의 조사보고서 양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보고

1. 서설
 - 1.1 조사의 배경과 목표
 - 1.2 조사의 실시
 - 1.3 참고문헌
2. 행정비용의 개념정의
 - 2.1 서설
 - 2.2 구별기준
 - 2.3 행정비용의 개념정의
3. 방법론
 - 3.1 서설
 - 3.2 조사대상의 개념정의
 - 3.3 정보제공의무의 개관
 - 3.4 비용변수의 조사
 - 3.5 행정비용의 산정
4. 결과
 - 4.1 서설
 - 4.2 개괄적 결과
 - 4.3 상세 결과
 - 4.3.1 하위제목
 - 4.3.2 하위제목
 - 4.3.3 하위제목
5. 결론

제 4 절 비용감축을 위한 조치

I. 절감잠재력의 추론

앞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의 각각의 단계마다 이미 가능한 간소화조치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간소화조치를 확인하고 가능한 비용절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국가적 행위의 수범자들(경제계, 시민, 행정) 중에 행정적 부담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 수범자들이 어떠한 법적인 지침과 어떠한 국가의 행정적 행위를 불필요한 장애라고 보고 있는지 내지 그것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가?
-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를 개별적인 절차단계로 분류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특히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비용은 무엇인가?

잠재적인 간소화와 비용감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이익단체, 수범자 및 국가적 행정과의 대화로부터 도출되는 그 밖의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간이화조치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방안
- 개별적인 법문서를 개정하거나 규정내용을 축소함으로써 정보제공의무를 간소화하는 방안
- 개별 부처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첩적 정보제공의무를 방지하기 위한 법문서들간의 정합성을 개선시키는 방안
- 전자정부: IT의 활용, 특히 IT에 기반하여 수범자가 국기기관에 정보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수범자간의 상시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방안

II. 결정된 감축목표의 달성과 통제를 위한 조치프로그램의 작성

연방내각이 설정한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각 부처는 자신의 관할분야에서 감축을 위한 각종 조치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 조치프로그램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개별적인 간소화 조치와 그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이 포함되며 연방수상청 사무처가 지휘한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조치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전체적 조치프로그램 및 그 조치를 실천하기 위한 시간계획은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에 제출된다.

연방수상청 사무처는 정무위원회가 구속적인 것이라고 선언한 목표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이러한 감독은 개별적 조치의 내용적 이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포함한다. 관할 부처는 연방수상청 사무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행과정에서 달성된 발전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 조치의 실행을 저해하는 사정들도 보고한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조정관과 정무위원회에 보고한다. 구속적인 감축목표가 확정되기 전에 관할 부처가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한 행정비용의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사실은 각 관할부처의 요청에 따라 추후의 감축의무에 산입한다. 이것은 연방내각의 2006년 4월 25일자 의결이후에 발효된 모든 입법계획에 적용된다.

제 5 절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주로 특정한 시점에 발효되고 있는 법령에 기초한 경제계의 정보제공비용을 산정방식이었다. 그러나 정보제공의

무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행정비용이 유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부담의 현상과 발전에 관하여 항상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이 규칙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규칙대로 실시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에서 나타난다.⁵⁹⁾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을 손질해야 한다.

I.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확인하는 절차는 앞에서 언급한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확인절차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①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국가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는 점(법률, 시행령, 행정규정), ②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추상적인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③ 자료나 정보의 송부와 준비는 전자적 방식 또는 문서의 방식으로 행해진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확대시키는 것(예를 들어 또 다른 자료내용의 보완, 보고회수의 인상)도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서와 같이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도 그 정보제공의무가 경제계, 시민 또는 행정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파악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범주화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 행하게 되는 진행방식을 유추하면 된다.

각 관할부처는 신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조기에 연방수상청 사무처에 통지하고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를 개시한다.

59)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는 발효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현상을 측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 정보제공의무도 포함된다.

II.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 추산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예상되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수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가격요소도 추산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획득한 경험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문가의 지식을 원용해야 한다.

1. 수량적 요소의 추산

수량적 요소를 추산함에 있어서는 다시금 두 가지 사례를 구분할 수 있다.

- 법률상 명시된 송부빈도와 특정한 목표그룹(기업, 시민 또는 행정)을 가지고 있는 정보제공의무
- 개별 사례별 정보제공의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수량적 요소의 조사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수량적 요소의 조사를 위한 절차를 유추해서 실시한다. 즉, 송부의 빈도는 법률문언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관련되는 시민이나 기업의 수는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원용하여 조사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할 것을 가정해보자. 이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최소 100만유로의 수입을 획득하는 건축기업에게 매 2년마다 계속 교육조치를 위한 비용을 관할 부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약 30,000개의 기업이 목표그룹으로 되고, 이 목표그룹은 법률에 따라 매년 0.5회의 송부빈도로써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추산된 수량적 요소는 15,000에 달한다.

개별 사례별 정보제공의무는 파생된 의무이다. 이러한 파생된 의무는 관련 기업이나 시민이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지만 그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이나 시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개별 사례별 정보 제공의무는 통계를 원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는 관련 시민이나 기업의 범위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급부를 요구하는 시민이나 기업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관련되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나 기업이 제공된 국가의 급부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산이 행해져야 한다(실제 이용율). 이러한 진단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사례에서 도출된 경험칙을 원용해야 한다.

앞에 제시된 예에서 언급된 정보제공의무는 관련 기업이 자신의 계속교육조치를 위하여 국가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이제 유사한 조치에서 나타난 경험에 기초하여 약 75%의 기업만 이러한 지원의 가능성을 활용한다고 가정한다(나머지 25%의 기업은 계속교육조치를 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국가적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언급한 일반조건이 적용된다. 약 75%의 기업만 국가적 지원을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량적 요소는 $11,250(0.75*15,000)$ 으로 줄어들 것이다.

2. 가격요소의 추산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측정과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용의 추산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추산을 실시할 때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시간적 경비를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필요한 시간적 가치를 추산해야 한다. 현상에 대한 측정의 결과는 이러한 추산의 기초를 형성한다. 우선 현상에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와 유사한 것이 이미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위하여 시

간적 경비의 추산이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없다면 표준화된 경험치를 원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정보제공의무를 활용한 추산

유사한 정보제공의무가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위한 이러한 측정의 결과를 추산규모로 활용할 수 있다. 단가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가격변수를 추산치로 가정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하게 유효하지 않다고 나타난 경우에는 측정된 시간에 대한 유효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⁶⁰⁾

앞에서 언급한 계속교육조치는 최소한 1000만 유로의 수입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상에 관하여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가격이 36.95유로라는 점이다. 이 가치는 비용산정을 위하여 차용할 수 있다. 계속교육조치는 건축업을 행하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숙식업을 행하는 기업에도 해당된다. 현상에 관하여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67분의 소요시간을 양산해낸다는 점이다. 숙식업의 경우 단가는 30유로로 조사된다. 이때 가격요소는 33.50 유로($67/60 \times 30 = 33.50$)이다.

(2) 표준화된 경험치를 통한 추산

하나의 정보제공의무의 개별적인 표준활동의 경우 소요시간을 위한 현상에 관한 측정을 통하여 경험치가 나온다. 이러한 경험치는 정보제공의무의 3가지 복잡성단계와 관련지워서 조사되고 이른바 시간가치표로 작성한다. 이러한 표의 가치는 각각 당해 활동이 어느 정도로

60)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는 다른 기업에까지 확대할 수 있거나 일정한 기업으로 국한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로 취급된다. 이러한 특별한 사례에서는 시간의 측정과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요소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단순/중간/복잡으로 평가되는지에 관한 표준활동의 소요시간을 위한 추산치로서 사용된다.

소요시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무를 표준활동들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표준활동들은 세 가지 복잡성의 단계(단순, 보통, 복잡)에 위치시킨다. 앞의 표에서 각각 해당되는 시간가치가 도출된다. 이러한 시간가치의 합계는 정보제공의무의 소요시간에 대한 추산이 된다. 표준활동에 정렬하는 것은 관할 부처가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통계청은 적절한 지원을 행하고 있다.

비용요소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시간가치표를 도움으로 추산하여 도출된 시간을 그에 상응하는 단가와 곱하면 된다. 기업이 법률상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어떠한 단가에 기초할 것인지는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인지 아니면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정보제공의무인지에 따라 다르다.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평균적 임금을 고려한다. 이에 반해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평균임금을 고려한다. 이 경우 담장자의 질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다. 연방통계청의 공식 통계는 필요한 단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계속교육조치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도의 질적 수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단가는 33유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단가는 $33/60*67 = 36.85$ 유로가 된다.

(3) 전문가추산

전문가는 유사하게 존재하는 정보제공의무 또는 표준화된 경험치를 활용하여 획득한 추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전문가가 결과를 심사함으로써 방법론의 혼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방법론의 혼합은 감당능력을 높이고 일반국민의 추산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추산의 기초가 된 현존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실제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와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로써 측정결과의 전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표준화된 경험치가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만약 표준화된 경험치가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하나 또는 다수의 쟁점을 개선하거나 표준치를 완전하게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하여 개별적인 표준활동의 복잡성에 관하여 추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그룹이 충분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가격요소의 추산을 완전히 위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문가들에게는 앞에서 서술한 “보조자료”(현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목록, 표준화된 경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진행방식이 장점을 가지는 예로는 가격요소의 민감한 추산이 외부에서 실시되어 그 결과에 대한 일반국민의 수용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3. 행정비용의 추산

앞에서 제시된 작업을 행하면 행정비용의 모든 변수들이 일부는 추산된 형식으로 제시되게 된다. 수량적 요소를 가격요소와 곱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수범자들이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하여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계속교육조치를 위한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하여 11,250건의 보고가 행해진다고 가정해보자. 하나의 보고가 지니는 가격은 36.85유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행정비용은 총 414,562.50 유로가 된다. 정보제공의무를 1000만 유로 이상의 수입을 획득하는 기업에 국한시킴으로써 이제 매 2년마다의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고 75%가

지원을 받는 기업은 1,500개에 불과하다. 그 전에 11,250건의 보고가 행해졌다면 이제 560건의 보고만 동일한 단가로 예상할 수 있다. 이로써 행정비용은 20,636유로가 발생한다.⁶¹⁾ 정보제공의무를 숙식업까지 확대시키면 2,250건의 추가적인 보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단가는 33,50유로가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약 75,000유로가 발생한다.

Ⅲ.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제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발효중인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라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제공의무이다. 정보제공의무와 그 필요성 및 입법이유, 정보제공의무와 잠정적으로 결부된 총비용 및 수범자의 범위는 정부의 법안에 특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를 근거지우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는 자료들을 표준비용모델 자료은행에 입력해둔다. 정보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발효된 지 2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61) 비록 이러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가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합계를 해보면 행정비용의 감축이 남아있다(400,000유로 - 20,000유로).

제 5 장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한계 및 시사점

제 1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I.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측정의 성과

연방정부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관료주의 철폐와 행정비용감축을 위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취하였다. 이 구체적인 이행조치 속에는 단순하게 연방 각 부처 차원에서 행정적 규제를 간소화한 것도 있고 구체적인 법률을 통하여 간소화한 예도 있다.

1.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의 측정대상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의 측정결과는 수범자인 경제계, 시민, 행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경제계

독일 연방정부에서 중점을 둔 정책은 경제계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25%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부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연방정부는 연방통계청에 대하여 2006년 9월 30일자 기준일 이후의 연방법을 대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경제계의 행정비용을 측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의 각 부처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연방법령에서 경제계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범을 확인하여 2006년 말까지 연방통계청에 보고하였다.

당초 연방통계청에 보고된 정보제공의무는 총 10,900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 수치 중 일부는 중복적으로 보고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유럽공동체의 집행명령에서 도출된 정보제공의무가 1,173건이었다. 따라서 연방통계청이 표준

비용모델에 따라 행정비용을 측정한 정보제공의무는 현실적으로 총 9,279개⁶²⁾였다. 독일 경제계가 총 9,279개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유발되는 연간 비용은 총 476억 유로(한화 약 86조)에 달한다. 이 중에서 2250억 유로에 달하는 행정비용은 오로지 국내입법자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고, 나머지 2510억 유로는 유럽연합법이나 국제법적 지침에 근거하여 유발된 것이다.⁶³⁾

(2) 시 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새로운 법규정으로 인하여 유발될 행정부담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절차가 시민에게 부과된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방 각 부처는 법률안의 표제부에 행정부담을 서술하고 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에 송부한다. 그러나 경제계와는 달리 시민에게 부과된 행정부담은 오로지 시간만 기재한다. 지금까지 시민에게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비용을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측정한 연방부서는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내무부 뿐이다. 다른 연방부처는 측정결과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측정이 개시되고 있을 뿐이다.

(3) 행 정

표준비용모델을 행정에 적용한 예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측정의 기초로서 “행정의 정보제공의무”를 분명하게 구분지우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하여 연방내무부는 관할 법령에 대한 시험측정을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표준비용모델이 행정절차를 최적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

62)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2쪽 및 그곳의 각주 4번.

63) Die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bericht des Staatssekre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kabinett, Juni 2009, 5쪽.

는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⁶⁴⁾

2. 연방정부의 간소화조치

연방 각 부처는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행정부담철폐의 현황에 관한 연방정부의 2008년도 연례보고서(Bericht der Bundesregierung 2008 zur Anwendung des SKM und zum Stand des Bürokratieabbaus)가 출간된 이후 간소화조치를 실천해왔다. 연방의 각 부처는 그 밖의 조치들도 수량화하였고, 시간계획을 조정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들을 보완하였다. 연방정부의 2009년도 중간보고서⁶⁵⁾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357건의 간소화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되고 있다. 간소화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간소화조치에 관한 개요]

		전 체	전체 중 수량화 된 것	경제계의 부담완화
		건 수		백만 유로
총 계		357	186 (모든 조치의 52%에 해당)	7,259.5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이미 이행된 조치	총	288 (모든 조치의 80%에 해당)	173	6,844.4
	이미 발효 중	246	140	6,503.2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계획된 조치		36	11	335.1
그 밖의 부담완화 조치		33	2	80.0

64) Die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bericht des Staatssekre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kabinett, Juni 2009, 6쪽.

65) Die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bericht des Staatssekre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kabinett, Juni 2009, 6쪽 이하.

경제분야에서 수량화된 조치들로부터 매년 약 72억 유로의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모든 조치들 중 80%를 차지하고 약 68억 유로의 부담완화 효과를 가지는 288건의 조치들이 연방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실무에서 실천되었다.

3. 관료주의 철폐의 목표달성

연방정부는 2011년 말까지 경제계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2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이미 2007년 연례보고서에서 중간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연방정부는 2009년말까지 설정한 목표의 절반에 도달해야 한다는 중간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출발점은 현행법에 대한 측정에서 조사된 행정비용이다. 이것은 현재 약 476억 유로에 달한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측정된 전체부담을 비용유발원인자(국내/국제)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내적으로 유발된 경제계의 행정비용은 225억 유로이고, 유럽연합이나 국제적 지침으로 인하여 유발된 경제계의 행정비용은 251억 유로이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측정된 전체부담을 비용유발원인자에 따라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는 것이 행정비용의 감축목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아무 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가 비용유발원인자와는 별개로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행정비용을 감축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특히 476억 유로가 아직 완결된 수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독일 내에서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에 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행정비용은 지금까지 조사된 476억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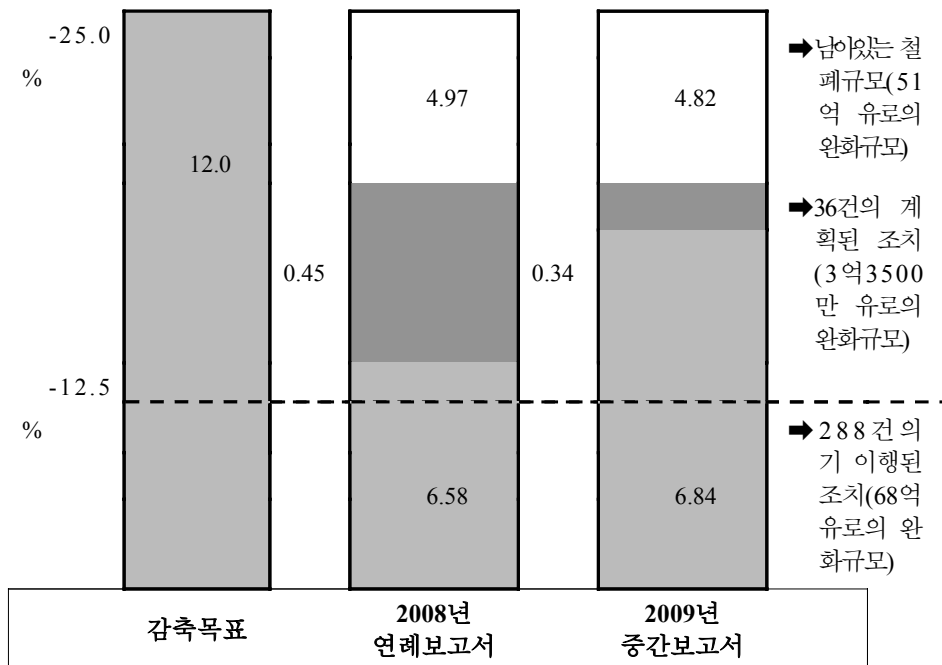
66)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4쪽.

지금까지 조사된 총 행정비용이 476억 유로라는 점에서 출발해보면 잠정적인 감축목표는 약 120억 유로가 된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60억 유로가 2009년 말까지 감축되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2009년 6월에 출간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약 68억 유로의 완화규모를 가진 총 288건의 간소화조치가 취해졌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수치는, 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이미 감축의 목표가 되는 총 행정비용(476억 유로)의 14%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현재의 간소화조치에 해당하는 68억 유로는 원래의 총 목표인 25%의 중간목표에 해당하는 12.5% 내지 60억 유로를 이미 달성한 것이다.

[연방정부의 행정비용 감축목표의 도달 상황]67)

단위: 10억 유로



67)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5쪽.

II.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한 일괄입법의 추진

독일 연방정부는 2006년 4월에 의결한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에 관한 정부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3개의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것은 2006년 8월 22일에 제정되고 2006년 8월 26일에 발효된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1차 법률, 2007년 9월 7일에 제정되고 2007년 9월 14일에 발효된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2차 법률, 2009년 3월 17일에 제정되고 2009년 3월 25일에 발효된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3차 법률이다. 이 3개의 법률은 모두 중소기업의 행정상의무를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1차 법률(2006)

2006년 8월 22일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1차 법률⁶⁸⁾(Erstes Gesetz zum Abbau bürokratischer Hemmnisse insbesondere in d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과된 16개의 통계상의 의무와 회계상의 의무를 완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은 특히 기존의 연간 350,000 유로의 소득을 초과하는 특정한 조세납부의무자에게 회계상 부기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 법을 통하여 연간 소득 500,000 유로로 상향조정하였다. 이 조치를 통하여 약 150,000개의 기업이 부기의무로부터 면제되는 효과를 보았다. 또한 이 법을 통하여 생산업체의 통계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개정되어 이전의 20명 이상의 생산업체를 통계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을 2007년 초부터 50명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1차 법률은 총 16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

68) BGB 2006 I. S. 1970 ff.

을 통하여 규제가 완화된 내용 내지 개정된 개별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상의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 (정보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기 위한 대상기업의 고용자의 수를 상향조정, 자동화된 정보처리절차를 통한 대체적 신고의무의 상향조정 등)
- 오래된 목재를 신고할 경우 반드시 일정한 양식에 의하도록 한 것을 폐지
- 2007년의 임금 및 급여조사의 중단
- 조세법(Abgabenordnung) 제414조 제1항 1호에 따른 조세상의 회계 의무한도의 상향조정
- 소득세법의 규제완화(소득세시행령 제33조 1문에 규정된 소액계산의 확대, 소득세법 제15a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신고의무의 제한)
- 생산통계와 관련한 조사의 경우 피고용자수의 상향조정, 조립식건축에서 실시되었던 4/4분기별 생산통계의 완전한 삭제, 고층건축통계에서 회수의 변경
- 영업이전신고에 대한 통계적 평가의 폐기
- 상태환경 파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발함에 있어 화학물질법(Chemikaliengesetz)에 따라 참가할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의 수 축소
- 사회법전상 연금보험을 위한 고용주의 사전증명서의 작성의무의 폐지
- 운전교습자법상의 규제완화(반드시 지체부자유의 증명을 위하여 반드시 공무원인 의사에 의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 폐지)
- 운송촉진법(Personenbeförderungsgesetz)상의 규제완화(허가시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사례의 확대 등)

2.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2차 법률(2007)

2007년 9월 7일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2차 법률⁶⁹⁾(Zweites Gesetz zum Abbau bürokratischer Hemmnisse insbesondere in d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은 약 5900만 유로에 달하는 순 행정부담의 감축을 의도하고 있다. 이 목표는 통계의무, 부기의무, 보고의무 및 허가의무 등의 분야에서 정보제공의무나 허가의무를 간이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영업등록부의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간이화되었고, 신규기업의 경우 창립 후 3년 이내에는 보고의무가 변제되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4분기 단위의 설문조사가 폐지되었다.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2차 법률은 총 17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하여 규제가 완화된 내용 내지 개정된 개별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법(Abgabenordnung) 제141조에 따른 회계의무를 부담하는 수입의 한계를 상향조정하고 조세법 시행법을 개정
- 상공회의소법(IHK)의 개정
- 지역의 경제구조에 대한 개선되고 실효성 있도록 촉진
- 연방통계를 위하여 제공할 각종 의무를 담고 있는 법규정들의 개정. 특히 중소기업의 설립시 각종 보고의무의 감경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의 경우 매년 통계상의 표본조사를 최대 3회로 제한
- 유럽연합이 지시한 서비스활성화통계를 이행함에 있어 특히 행정기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 부담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조치
- 여행업카드의무의 제한

69) BGB 2007 I. S. 2246 ff.

- 맹인상품판매법(Blindenwarenvertriebsgesetz) 및 동법 시행령의 폐지 및 타 법률과의 조화
- 접객업법(Gaststättengesetz)의 개정
- 영업등록부상의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절차의 간소화
- 가격표시 및 가격조항법(Preisangaben- und Preisklauselgesetz)에서 허가의무의 삭제
- 상품거래에서 기업통계의 규제완화
- 의료비, 치료비, 출산수당 등 비용급부에 있어서 고용주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보이전제도의 도입
- 사회법전 제6권 제194조의 사전증명제도를 폐지하되 사회보험 신고절차에서 특별신고를 활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정보의 송부와 관련한 간소화
- 운송촉진법(Personenbeförderungsgesetz)상의 운행계획 변경시 허가의무의 제한

3.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3차 법률(2009)

2009년 3월 17일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3차 법률⁷⁰⁾(Drittes Gesetz zum Abbau bürokratischer Hemmnisse insbesondere in d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철폐하기 위한 약 23개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독일 전역에 약 460,00개나 개설되어 있는 허가를 요하는 수공업체의 조사를 간이화하여 현장조사를 면제함으로써 향후 약 2400만 유로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영업법(Gewerberecht)과 관련된 다수의 개별 법률을 개정하여 약 7000만 유로 이상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제3차 법률을 통하여 2009년에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9700만 유로의 행정비

70) BGB 2009 I. S. 550 ff.

용의 감축이 예상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860만 유로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3차 법률은 총 23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하여 규제가 완화된 내용 내지 개정된 개별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수공업자 전수조사의 간소화(수공업통계법 제4조)
- 연방통계청 자료를 연방환경청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 설치
- 법인세법상 세금감면이 되는 특정한 금액의 한도를 상향조정(법인세법 제24조 및 제25조)
- 소득세장부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소득세시행령 제68조 제1항)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통제를 위한 제2차 국내소득수준의 도입(공정거래법 제35조 제1항)
- 상품자동판매기, 기타 자동판매기의 설치시 신고의무의 재도입(영업법 제14조 제3항)
- 공개된 판매소에 대한 성명기재의무의 폐지(영업법 제15a조 제1항)
- 서신교환에 의한 판매시 성명기재의무의 폐지(영업법 제15b조)
- 질서위반행위 구성요건의 정비(영업법 제145조)
- 투자자문가에 대한 원금보호조항의 도입(영업법 제157조)
- 전당포영업자시행령의 규제완화(전당포영업자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
- 부동산중대인-건축시공회사시행령상의 광고모집의 삭제 및 동시행령의 일부 정비(부동산중대인-건축시공회사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
- 공적 경매에서 경매표시 작성의무의 폐지 및 일요일에 경매를 금지하는 연방법의 폐지(경매법 제2조 및 제5조)
- 우유가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허가제도의 폐지(우유 및 마가린법의 개정)
- 출산수당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의료보험비용의 일괄 보상(모성보호법의 개정 및 농업종사자의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의 개정)

- 통신법 제141조 제1항에 의거한 법규명령을 발함에 있어 권한위임의 근거를 삭제
- 통신법 제142조 제1항 8호의 비용요건의 삭제
- 수공업의 회수의 연장에 관한 시행령의 폐지
- 유사수공업 전수조사 시행령의 폐지
- 정보제공의무시행령의 폐지
- 불필요한 6개의 영업법적 개정법률의 폐지
- 관세할당표법의 폐지
- 우편법 및 전화법상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벌을 위한 관할권에 관한 2개의 시행령 폐지

Ⅲ. 새로운 행정부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이행실적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2006년 12월 이후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총 922건의 법률안에 대한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실시하여 그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심사한 법률안 중 20%에 해당하는 법률안은 정보제공의무로부터 경제계에 유발되는 비용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중요한 법률안의 분포]⁷¹⁾

법률안과 행정비용의 관계	법률안의 수	%
행정비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미소한 영향만 미치는 법률안	832	80
순부담가중을 담고있는 법률안	133	14
순부담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	57	6

71)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13쪽.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 12월부터 경제계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수는 667건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가 행정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보제공의무와 결부된 부담을 감축시킴으로써 정보제공의무를 통한 기업의 부담가중이 2006년 12월 1일 이후 총 약 33억 유로가 감축되었다.⁷²⁾

제 2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한계

I. 지속적 발전과정에 있는 방법론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공식이나 산정을 위한 개별적인 요소들은 외국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방법론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표준비용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표준활동의 분류에서 알 수 있다. 애초 독일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의 맥락에서 말하는 표준활동을 네덜란드 모델과 동일하게 14단계로 구분한 적이 있고,

이러한 구분은 2006년에 연방통계청에서 발간된 표준비용모델 입문서에 그대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2008년에 수정 발간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사전적 추산에 관한 지침서는 표준활동을 16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독일이 비록 국제적인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독일 국내에서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 점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은 여전히 발전의 과정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2)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14쪽.

II.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방법론 자체의 한계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방법론이 진화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방법론 그 자체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독일의 경우에만 국한된 경우도 있고 표준비용모델이라는 형상 그 자체에서 도출되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그 한계를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방법론은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에 국한된다.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보고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과 특별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는 비용만 산정된다. 즉, 표준비용모델에서 비용이란 각종 신청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각종 등록부, 통계 및 증명서 등을 만들 때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과 인건비를 말한다. 환경보호나 근로보호(예: 유해물질필터의 이용, 작업장에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 등) 등과 같은 법률상의 내용적인 각종 의무들은 조사되지도 않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비용산정의 대상을 일정하게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큰 실익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관료비용을 줄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거의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합의를 보면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법률상의 내용적인 각종 의무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매우 특별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이익단체들 간에 오랜 동안의 논의과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예컨대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다.

둘째,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예는 주로 경제계의 행정부담을 측정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 즉, 현재의 표준비용모델은 시민이나

행정 그 자체에 발생한 행정비용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원래 표준비용모델은 수범자가 기업인 경우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행정 그 자체인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시민이나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비용에 대하여 광범위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서야 시민과 행정에 발생한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독일에서 그 동안 시민이나 행정에 발생한 행정비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들은 대부분의 행정관련 업무를 일반적으로 자신의 업무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발생한 행정비용을 조사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난해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컨대 네덜란드는 그 사이에 행정비용의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도 포함시키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이러한 네덜란드의 예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시민이나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비용을 조사할 경우에는 방법론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이한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Ⅲ.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문제점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궁극적 목표가 불필요한 행정부담의 감축 내지 철폐에 있다고 본다면,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관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이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정치적 결정이나 정책 그 자체의 시비에 대한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고, 적은 부담으로 어떻게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로서 규제·감독하는 역할만 담당한다. 이 점에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방법론의 감시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의 적용 및 이와 결부된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철폐와 직결되어 있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일고 있다.

첫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법률안이 연방내각에 제출되기 전에만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당해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직접 생성되었거나 연방참사원에서 제출된 경우에는 심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이는 행정부담 철폐의 실효성을 저감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⁷³⁾

둘째,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인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인력이 부족하여 수많은 법규정에 대한 산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인력부족 문제가 등장하는 배후에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에서 인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⁷⁴⁾

셋째,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권한 그 자체도 문제로 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권고권만 가지고 있을 뿐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목표를 스스로 확정할 수도 없다.⁷⁵⁾ 물론 이 문제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출범시킨 내재적 한계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제 3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정책적 함의

I. 범국가적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

표준비용모델 그 자체는 행정부담을 감축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73) Frick, SKM in Deutschland - Erfahrungen aus den länderübergreifenden Pilotprojekten der Bertelsmann Stiftung, Gütersloh, 2006, 13쪽.

74)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Ehrenwerte Initiative nach niederländischem Vorbild, aber die Bewährungsprobe steht erst noch bevor,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GmbH, Köln, 2007, in: http://www.insm-merkelmeter.de/6governance.html#_ftn1

75) DHV, Bürokratieabbau bei Unternehmen und Standardkostenmodell, Speyer, 23. Januar 2008, 1쪽.

표준비용모델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축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표준비용모델도 이러한 추진체계의 일부에 해당한다.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여 기업이나 시민 또는 행정이 부담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행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결국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그 후속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와 관련 제도의 구축으로 귀결된다.

독일에서는 행정부담을 감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이미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완비하였다. 즉,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그에 기초한 행정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방차원에서 다양한 관련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정부 조정관과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는 행정비용측정의 개시 및 실시에 관한 전체적인 절차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연방수상청에 설치되어 있는 관료주의철폐 사무처, 연방 각 부처 및 연방통계청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을 직접 측정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의 입법안과 현행 연방법에 대하여 그 행정적 부담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이에 터 잡은 행정부담의 감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들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을 관할하는 주관 부처가 실제로 정부입법에서 본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입의 여지는 그다지 크지 못하다. 나아가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입이 처음부터 차단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부담 내지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이 도입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여 구체적 정책을 추진할 저변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행정부담의 감축을 논의하고 그에 관한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표준비용모델의 도입방안과 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집행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II. 한국형 표준비용모델의 개발 필요성

표준비용모델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와는 별개로 표준비용모델 그 자체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이른바 한국의 정책문화에 상응하는 표준비용모델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2006년부터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이미 네덜란드나 영국 등에서 검증된 결과를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이 타 선진외국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우선, 표준비용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적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이 법정화되어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법에서 정보제공의무를 개념정의해두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이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통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정책에 혼선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독일의 경우 네덜란드와는 달리 표준활동도 16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최근 표준비용모델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나 특징은 한 국가의 문화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선진외국, 특히 독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우리나라

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큰 틀은 수용하되,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와 절차 등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Ⅲ. 임금 내지 요금에 관한 문제

그런데 독일형 표준비용모델을 채택하든, 아니면 제3국가의 표준비용모델을 수용하든 우리나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임금 내지 요금의 요소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표준비용모델은 가격과 수량을 곱하는 단순한 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표준비용모델은 비교적 간단한 산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문제는 표준비용모델의 산식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 임금 내지 요금의 체계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에서는 하나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각 표준활동에 해당하는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각각의 난이도 마다 임금의 단가(즉 요금)를 매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개별 표준활동에 해당하는 요금을 매기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에 관한 접근방식 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에 관하여 독일은 관련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을 시간적 임금과 재정적 임금을 각각 조사하여 이를 통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적 임금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수(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의미하며, 재정적 인건비란 이러한 노동력을 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적 임금을 고려함이 없이 기존의 임금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통합화된 임금

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식 임금조사방식과 우리나라의 임금조사방식의 차이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조사(즉,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시간적 임금과 재정적 임금을 조사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① 기업 종사자의 일정한 활동을 야기하는 법령상의 규정과 이 규정의 집행에 필요한 행정과정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법령에 새로운 인가절차나 허가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규인력의 충원이 필요하게 된다.

② 각각의 과정마다 필요한 평균적인 업무처리시간을 조사한다. 이 경우 평균적인 업무처리시간은 업무담당자의 업무활동지에서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간과악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평균적인 업무처리시간은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업무처리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적인 세부절차에 따라서 조사한다. 예를 들어 인가절차의 경우 인가서류의 접수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업무처리시간, 현장실사에 필요한 평균적인 업무처리시간, 인가결정 그 자체에 소요되는 업무처리시간 등으로 조사하게 된다.

③ 업무과정에 참가한 인력을 급여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업무처리의 난이도에 따라서 일용직, 공무원직급(계약직 포함)에 따른 급여그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심사할 법령의 규정을 관찰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법적 사례 건수를 조사하거나 추산한다. 다시 말해서, 행정을 실행할 경우에 특정한 기간 동안의 업무과정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사례건수)를 조사하거나 추산한다.

⑤ 시간적 임금, 즉 법령상의 관련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파악한다.

- 개별 업무담당자당 연간 총 근로시간을 파악한다. 개별 업무담당자당 연간 총 근무일수를 평균 240일(2005년도 기준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로 가정하면 연간근로시간은 약 1,900시간이 되고, 이를 분으로 환산하면 114,000분이 된다.
- 당해 사례를 처리할 업무담당자의 연간 총급여를 급여그룹별로 구분하여 확정한다.

⑥ 시간적 임금(필요한 인력규모)을 산정한다.

- 산정공식: 시간적 임금 = [(분으로 환산한 사례당 업무처리시간 x 연간 총 사례건수) ÷ 60] ÷ 업무처리담당자의 연간 총 근로시간
- 산정방식을 해설하자면, 업무처리담당자가 당해 법령의 관련규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분)과 연간 총 사례건수를 곱한 이후에 이를 분(60)으로 환산하여 관련규정에 관한 연간 총 업무처리시간(분)을 도출한 다음, 이 수치를 업무처리담당자의 연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눔으로서 가능하다.

⑦ 재정적 임금을 산정한다.

- 산정공식: 재정적 임금 = 연간 필요한 인력규모 x 급여그룹별 급여액

독일식의 재정적 임금의 조사방식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한 법률의 집행에 수반되는 소요인력에 대한 비용을 조사하고 계산함에 있어 시간적 임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전체 소요인력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직급별로 나눈 뒤에 그 직급에 맞는 기존의 급여체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조사 체계는 비교적 단순하다. 필요한 인력에 맞게 기존의 급여를 계산에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임금조사 및 계산체계는 예컨대 국가예산의 지출면에서 볼 때 어느 행정기관이든 국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각의 기관마다

급여체계가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간적 임금과 재정적 임금을 구별하여 계산할 수 없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통합적인 임금의 조사방식은 아래와 같다.

① 해당 법률에서 소요인력의 정원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A법률안 제16조 제5항에 따라서 사무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에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사무소의 정원은 16명으로 할 것을 예정한다.

② 소요인력을 직급 및 직위체계에 따라서 구분한다. 앞의 예와 관련하여 지방사무소에는 진정접수담당, 사건조사담당, 홍보 및 협력담당 등 3과로 업무를 분장하며, 지방사무소 정원 16명은 소장 1인(4급), 과장 3인(5급), 6급 3인, 7급 3인, 기능직 2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예정한다.

③ 각 직위 및 직급별로 본봉과 각종 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앞의 A법률안 사례를 보면, 2005년도의 경우 사무소당 4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과거 5년간 공무원보수 총액인상률을 평균한 7%를 적용하여 2006년 이후의 인건비를 추정하면 2006년도에 5억 1,400만원, 2007년도에 5억 5,000만원, 2008년도에 5억 8,900만원, 2009년도에 6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식의 시간적·재정적 임금조사방식과 우리나라의 통합적 임금조사방식간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임금조사방식이 일반적인 표준비용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임금조사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비용모델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우리나라의 사정에 맞게 조응시켜야 한다.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임금조사의 방식이다.

제 6 장 전 망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한 행정비용의 측정은 단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수범자에게 발생한 행정비용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감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위한 조사시기에서의 현 상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문서로 작성하고 이러한 상황에 상응하게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발전의 과정에서 행정부담이 어느 정도로 많아졌거나 감축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한 행정비용의 측정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인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여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행정비용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효하게 될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기초한 행정비용에 대해서도 그 분석과 추산이 가능하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은 지금까지 주로 경제계, 즉 기업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적용되어왔다.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은 수범자를 경제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이나 행정 그 자체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행정비용도 측정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행정비용의 측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은 법령상의 내용적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정보제공의무 그 자체의 이행을 위하여 유발된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그러나 독일 사회에서는

행정부담의 개념이 폭넓게 이해되고 있고, 이러한 행정부담은 좁은 의미의 정보제공의무라는 개념의 이해를 뛰어넘어 법령상의 내용적 의무의 준수까지도 포함해서 이해되고 있다. 이 점에서 법령상의 내용적인 의무도 표준비용모델의 모범에 따라 조사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개시되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표준비용모델이 정보제공의무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되는 정부 부처의 노력이 불가결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강조되는 것이 독일의 연방통계청의 역할이다. 연방통계청은 현재 조사를 위한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해두고 있다. 나아가 관할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정보제공의무에 따른 행정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이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축적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독일 실무의 태도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개별적인 기초자료가 많이 흠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실무에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행정비용을 측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관련 부처들이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상이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행정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 서술된 내용이 우리나라의 실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 박영도(역), 오스트리아와 인접국가에서의 법률평가와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박영도/김영아(역), 법률평가와 입법평가(II) - 국가실무와 경제에 관한 국내 및 외국의 경험보고 -,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안석교, 아젠다 2010 -경제개혁의 배경, 내용 및 전망-, FES Information Series 2004.08.
- AMVAB (Hrsg.), Manual for conducting Standard Cost Model measurements, Juni 2005.
- Attlmayr, Martin: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Deregulierung, in: Kleiser/Lengheimer(Hrsg.), Deregulierung, 2002.
- Barnes, M. et al.: Die Messung administrativer Kosten: Handbuch für das Standard Cost Model in Großbritannien, September 2005.
- Bertelsmann Stiftung, Handbuch zur Messung von Regulierungskosten, Version 1.0, 2009.
- Bruno, Binder/Viktoria, Enzenhofer/Franz, Strehl/Barbara, Leitl: Berechnung und Abschätzung der Folgekosten von Gesetzen in Österreich unter Berücksichtigung ausländischer Maßnahmen und Erfahrungen, Universität Linz, 1999.
- Bundesministerium(Hrsg.), Praxistest zur Gesetzesfolgenabschätzung, Berlin, 2002.
-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Guidelines 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AI), Speyer · Forschungsinstitut für Öffentliche Verwaltung, 2004.

참 고 문 헌

-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GFA),
Gesetze, Verordnungen, Verwaltungsvorschriften, Nomos, 2001.
- Charite, D. et al.(internationale Arbeitsgruppe): Das Standard- Kosten
modell -Konzept zur Definition und Quantifizierung des Verwaltungs-
aufwandes für Unternehmen durch staatliche Regulierung, Stand: Mai
2000.
- Charite, D. et al.: Das Standard-Kostenmodell, 2005.
- Codoni, Davide/Wallart, Nicolas: Administrative Entlastung in Euripa
mit Hilfe des Standardkostenmodells, Die Volkswirtschaft. Das
Magazin für Wirtschaftspolitik 2007.6.
- Deutsche Bank Research, “Better Regulation” in Deutschland und der EU,
EU-Monitor 47, 2007. DHV, Bürokratieabbau bei Unternehmen
und Standardkostenmodell, Speyer, 23. Januar 2008.
- Die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Gemeinsam
mehr erreichen, Zwischenbericht des Staatssekretärausschusses
Bürokratieabbau an das Bundeskabinett, Juni 2009.
- Ernst, Tobias/Koop, Alexander: Bürokratiekostenmessung in Deutschland,
in: Heinz Schäffer(Hrsg.), Evaluierung der Gesetze/Gesetzesfolge-
nabschätzung(II), 2007.
- Frick, Carl Dominik: Bürokratieabbau in Deutschland - Versinkt unsere
Zukunft im Regelsumpf?, Stiftung Marktwirtschaft - Frankfurt
Institut, Nr. 91, Berlin, 2005.
- Frick, Frank u.a.: Von der Bürokratiekostenmessung zum Bürokratie-
kostenabbau, Bertelsmann Stiftung, Gütersloh, 2006.

- Frick, Frank/Ernst, Tobias: Argumente für Bürokratieabbau, Bertelsmann-Stiftung, Gütersloh, 2005.
- Frick, Frank: SKM in Deutschland - Erfahrungen aus den länderübergreifenden Pilotprojekten der Bertelsmann Stiftung, Gütersloh, 2006.
- Häder, Sabine.: Telefonstichproben, ZUMA, How-to-Reihe, Nr. 6, 2000.
- IfM(Hrsg.): Ermittlung bürokratischer Kostenbelastung in ausgewählten Bereichen, Bonn, 2006.
- Jann, Werner/Wegrich, Kai/Tiessen, Jan: “Bürokratisierung” und Bürokratieabbau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 wo steht Deutschland?, Friedrich-Ebert- Stiftung(Hrsg.), Berlin, 2007.
- Kai, Ronny: Der SKM-Quick Scan im Überblick, Bertelsmann Stiftung, 2005.
- Kai, Ronny: Handbuch zur Messung von Informationskosten, Teil II: Grundlagen des Standard-Kosten- Modells, 2006.
- Kai, Ronny: Teil III: Anwendungsverfahren des Standard-Kosten-Modells in: Bertelsmann Stiftung(Hrsg.), Handbuch zur Messung von Informationskosten, 2006.
- Kleiser, Christoph: Deregulierung und Gemeinschaftsrecht, in: Kleiser/Lengheimer (Hrsg.), Deregulierung, 2002.
- Koalitionsvertrag von CDU, CSU und SPD - Gemeinsam für Deutschland. Mit Mut und Menschlichkeit., Union Betriebs- GmbH, Berlin, 2005.
- Leitfaden für die ex ante Abschätzung der Bürokratiekosten nach dem Standardkosten-Modell(SKM), Erste überarbeitete Version, Berlin, März 2008.

참 고 문 헌

- Ludwig, Johannes u.a.: Auftrag und Organisation des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Berlin, 2007.
- Merck, R.(Hrsg.): Bürokratieabbau und Bürokraziemess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ktober 2005.
-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Ehrenwerte Initiative nach niederländischem Vorbild, aber die Bewährungsprobe steht erst noch bevor,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GmbH, Köln, 2007.
-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009.
- Nijssen/Vellinga, A model to measur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businesses, Zoetermeer, 2002.
- Ohr, Christian: Standardkostenmessung und Bürokratieabbau in Deutschland, GRIN, 2007.
- Österreichisches Finanzministerium (Hrsg.): Handbuch Standardskostenmodell Österreich, Wien, 2007.
- Rehbinder, Manfred: Rechtssoziologie, 5 Aufl., 2003.
- Röttgen, Nobert: Normenkontrollrat: Der Koalitionsvertrag als Wegweiser zu besserer Rechtsetzung und weniger Bürokratie, ZRP 2006.2.
- Schäffer, Heinz(Hrsg.), Evaluierung der Gesetze/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Österreich und im benachbarten Ausland, ÖGGL - Tagung 2003.
- Schleiermacher, Thomas: Durchbruch beim Bürokratieabbau läßt weiter auf sich warten, Industrie- und Handelskammer für München und Oberbayern, München, 2007.

Statistisches Bundesamt, Einführung des Standardkosten-Modells. Methodenhandbuch der Bundesregierung, 2006.

Veit, Sylvia: Entpolitisierung staatlicher Regulierungsprozesse durch Gesetzesfolgen abschätzungen? in FoJuS - Forum Junge Staats- und Verwaltungswissenschaft, FoJuS Diskussionspapiere Nr 3/2005.

Vorgrimler, D/Wübben, D.: Die Delphi-Methode und ihre Eignung als Prognoseinstrument, in Wirtschaft und Statistik, Heft 8, 2003.

부
속

[부록 I]

**연방차원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부담의 조사와 경감을 위한 연방정부 입문서**

- 연방차원의 표준비용모델 입문서 -

**Handbuch der Bundesregierung zur Ermittlung und
Reduzierung der durch bundesstaatliche
Informationspflichten verursachten Bürokratielasten**

**- Einführung des Standardkosten-Modells
auf der Bundesebene -**

2006. 8.

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목 차

1. 서 설	139
2. 기초 및 개념정의	142
2.1 조사의 대상	142
2.1.1 정보제공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구성요소	142
2.1.2 조사되어야 할 규범	147
2.2 목표그룹	149
3. 산정모델	153
3.1 산정모델의 가정과 요건	153
3.1.1 표준활동의 이행을 위한 전형적 행위양식의 고찰	153
3.1.2 모델의 통일적인 적용	157
3.2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을 위한 매개변수(Parameter)	158
3.3 정보제공의무를 행정비용으로 산정하기 위한 공식	162
4. 자료와 자료은행	166
5.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현행법상의 정보제공 의무의 비용측정과 감축	169
5.1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169
5.1.1 법문서의 범주화	170

5.1.2	정보제공의무의 범주화	172
5.1.3	자료내용의 범주화	175
5.1.4	법문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내용의 신뢰성확인	177
5.2	예상되는 비용중요성에 따른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우선화	178
5.2.1	각 정보제공의무별 수량적 요소의 확정	180
5.2.2	복잡성의 정도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의 분류	183
5.2.3	정보제공의무의 우선성목록의 작성	185
5.3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 기초하여 측정하게 될 정보제공의무의 선택	186
5.4	정보제공의무의 비용 측정	189
5.4.1	측정방법론의 선택	189
5.4.2	시간의 측정	196
5.4.3	전체결과에 대한 구체화	200
5.5	현행법상 시민과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 의무의 포함 및 행정규정의 포함	207
6.	비용감축을 위한 조치	208
6.1	절감잠재력의 추론	208
6.2	결정된 감축목표의 달성과 통제를 위한 조치 프로그램의 작성	209
7.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 ...	210
7.1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211
7.2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 추산	212

7.2.1	수량적 요소의 추산	212
7.2.2	가격요소의 추산	214
7.2.3	행정비용의 추산	219
7.3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제시	220
8.	유럽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심사	221
8.1	새로운 유럽법과 현행 유럽법상의 정보제공 의무의 제시와 측정	221
8.2	법규정에 의하여 전제된 행정비용의 추산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	223
	【별첨 I】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전자적 입력장치의 특징들 ...	225
	【별첨 II】 연방법의 내용에 따른 분류(발취)	231
	【별첨 III】 간소화조치의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발취)	233

1. 서 설

독일에서 관료주의철폐를 심사할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소는 현행 규정이나 신설할 규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에 대한 통일적인 측정방법론이 없다는 점이다. 외국, 특히 네덜란드, 덴마크 및 영국의 경험을 보면, 적어도 개별적인 행정비용의 체계적 조사, 즉 정보제공비용의 체계적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확고한 기초에 터잡은 이후에야 비로소 행정비용의 철폐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2006년 4월 25일자 내각결정을 통하여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 : SKM)을 독일에 도입하기로 의결하였다. 표준비용모델이란 현행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부담의 중요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을 말한다. 이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여 법률상 명시된 정보제공의무와 각종 보고의무(예컨대 각종 신청, 양식작성, 통계작성, 증명서제출 등)로 인하여 경제계, 시민 및 행정에 미치는 부담을 측정하게 된다.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행정비용측정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일차적으로 비용유발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경제계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각종 의무를 철폐하는 것이다. 행정비용의 측정은 중첩적인 정보제공의무를 제거하고 각종 정보제공의무를 간소화하며 신설될 정보제공의무를 필요한 부분에만 국한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행정비용의 체계적인 측정은 의도적이고 광범위하게 추진된 행정비용철폐를 위한 불가결한 요건이다. 행정비용을 실감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양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다. 행정비용의 원인요소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비교의 가능성도 개선된다.

표준비용모델에서는 특히 두 가지의 분석적 문제가 중심에 위치한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야기된 정보제공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어떠한 비용을 유발시켰는지 내지 장래에 어떠한 비용을 유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법률이나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나타나는 효용성은 표준비용모델에서 다루지 않는다. 법규정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은 비용측면에서 보면 법규정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대한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방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히 수범자들에게 비용과 편익의 적절한 관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을 주의깊게 다루어야 할 경제적 행위에 대한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표준비용모델의 또 다른 목표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각종 부담의 규모와 영향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고, 장래에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과 관련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관점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에 있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통일적이고 구속적인 방법론은 표준비용의 도입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속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진행방식을 통하는 경우에만 조사된 자료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통일적인 방법론을 구축하는 경우야 비로소 구속적인 행정비용절폐목표에 대한 언급과 객관화된 공적인 대화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 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통일적인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명제가 외국에서 적용되는 방법론을 일대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경제’의 개념이나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입문서의 목표는 국제적인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을 독일 연방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국제적인 표준비용모델을 독일의 사정에 그대로 도입하되 필요한 부분

에서만 독일의 사정에 맞게 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각종 입문서들의 내용 - 이 내용들은 각주로 처리하였다 - 과 중첩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다.

이 입문서의 목표는 연방의 부처에 대하여 구속적인 표준비용모델을 확립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입문서는 각 부처의 개별적인 전문부서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담당자에 대하여 실무상의 업무자료의 기능도 수행한다. 특별한 문제들 - 예컨대, 표준비용모델 자료은행의 구축과 취급에 관한 문제 - 은 특별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각 부서의 표준비용모델의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입문서는 표준비용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국민을 위하여 표준비용모델의 기초와 진행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입문서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 담당자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적 진행방식 이외에 표준비용모델의 이론적 기초와 산정모델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연방차원에서 실시된 행정비용의 측정에 대하여 표준비용모델을 다루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호응을 받도록 확고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서술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표준비용모델의 이론적 기초 및 이와 결부된 개념의 정의 및 개념들간의 구분(제2장)
- 산정모델에 대한 소개(제3장)
- 자료작성 및 필요한 자료은행에 관한 지침의 소개(제4장)
- 단계별 표준비용모델을 도움으로 현행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실제 적용례 소개(제5장)
- 비용감축의 조치에 관한 실무상의 지침에 대한 소개(제6장)
-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될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과정의 소개(제7장)
- 유럽법상 정보제공의무의 심사를 위한 과정에 대한 설명(제8장)

2. 기초 및 개념정의

이 장에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비용측정의 이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념정의를 소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의 대상과 비용측정의 대상그룹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2.1 조사의 대상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행정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가가 경제계, 시민 및 행정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시키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정보의 흐름이다. 이 경우 조사되어야 할 비용은 법률상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이 그 정보제공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다.

2.1.1 정보제공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구성요소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 제2조 제1항은 정보제공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이 법에서 행정비용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정보제공의무라 함은 법률, 시행령, 규약 또는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자료나 기타 정보를 행정기관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조달, 보유 또는 전달할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의무 이외에 법률, 시행령, 규약 또는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다른 비용은 행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연방 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는 것으로는 경제계, 시민, 행정이 국가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사례가 포

함된다. 예를 들면 경제계, 시민 및 행정이 부담하는 모든 각종 신청, 양식, 통계 및 증명의무와 자료작성의무(통지의무, 신고의무, 보고의무, 공표의무, 등록의무, 인가의무 등)가 정보제공의무에 해당한다(아래의 예시 목록 참조). 정보제공의무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규범지침(예컨대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규정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모든 정보제공의무도 포함하며,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예컨대 소비자에 대한 경제계의 의무)¹⁾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의무는 직접적으로 문서, 전자적 정보제공매체 또는 그 밖의 정보제공매체로도 이행될 수 있지만 자료준비의 지침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예컨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문자등록부의 기재)도 있다.

종합해보면, 정보제공의무란 경제계, 시민 및 행정이 피할 수 없는 의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규정에 위반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지원 및 그 밖에 신청한 급부를 잃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의무를 말한다.

유의사항:

표준비용모델의 목표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지 각각의 수범자에게 미치는 편익 내지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경우 법규정이 긍정적인 효과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지원 또는 진흥)에는 그 지원 또는 진흥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결부된 정보제공의무가 논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수범자에게 얼마의 비용을 유발시키며 정보

1)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은 매우 상이하게 취급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가격의 표시를 처음부터 정보제공의무의 측정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가격표시를 정보제공의무에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측정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경우 연방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측정되는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

제공의무와 결부된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수범자의 부담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경제계, 시민 및 행정이 법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완전성의 가설).²⁾

예: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함에 있어 이러한 완전성의 가설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컨대 법적 상황에 따르면 100,000개의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추산의 기초로서도 활용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기업이 위법하게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가정은 하지 않는다. 관련되는 기업의 수는 수정되지 않는다.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예: 기술감독위원회)에 대하여 존재하는 정보제공의무도 법정인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보제공의무의 특징적 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제공의무가 국가에 의하여 발하여 졌을 것
2. 일반적-추상적 규정일 것
3.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과 준비가 문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2) 이것은 국제적인 진행방식에서도 동일하다. Charite, D. et al.(internationale Arbeitsgruppe): Das Standard- Kostenmodell-Konzept zur Definition und Quantifizierung des Verwaltungsaufwandes für Unternehmen durch staatliche Regulierung, Stand: Mai 2000, 18쪽 및 39쪽; Barnes, M. et al.: Die Messung administrativer Kosten: Handbuch für das Standard Cost Model in Großbritannien, September 2005, 29쪽 및 Klippstein et al.: Standardkosten-Model - Erstes Deutsches Handbuch, 26쪽.

아래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다양한 유형에 관한 간략한 개관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제공의무의 예시 목록

○ 일반적인 통지와 특정한 활동의 통지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 재무관서에 대한 신고/통지의무(예: 근로소득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 기업체 내에서 사고발생시 보험사건의 신고
- ➔ 직업교육의 계속 또는 종료에 관한 증명
- ➔ 위험물질운송시 통지의무

○ 정기적인 자료작성의무 및 보고의무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 예컨대 통계상의 목적 또는 국가적인 통제의 목적에서 부과된 필요시 또는 정기적인 자료의 조사, 보관 및 유지의무
- ➔ 기업의 회계공개의무

○ 제3자를 위한 표시적 성격을 가진 정보제공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표시
- ➔ 가격표시의무

○ 제3자를 위한 표시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정보제공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지의무
- ➔ 관보게재 등 공적인 공시의무
- ➔ 예컨대 소비자보호,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의 분야에서 각종 내용들을 공표할 의무(예: 제품 또는 기술적 설비의 표시, 기업의 재정상황표)

○ 인가의무: (일반적인 인가 또는 개별적 인가로서) 인가, 허가, 승인 또는 면제의 신청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 인가/허가에 대한 신청의 모든 유형(건축인가, 경영인가, 특정한 영업의 경영에 대한 인가, 직업승인)
- ➔ 공휴일 운전금지의 면제에 대한 인가, 면제증명원에 대한 신청

○ **등재의무, 등록의무**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 상업장부, 등기부 또는 수공업자명부에 등재해야 할 의무
- ➔ 신고등록부, 방문등록부 등에 기재할 의무

○ **제품의 인증과 절차**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 생태적 건설기업체로 인증하는 것
- ➔ 약품의 경우 인가절차

○ **통제방문/ 감사활동시 협력**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 통제방문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각종 자료들

○ **국가의 금전급부의 보장에 관한 각종 신청(보조금신청 또는 지원신청)**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 사회보장급부, 추가수당, 장려금, 보조금, 지원금 등의 신청(이러한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과 신청자의 입증자료들로 포함한다)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없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형식에 관한 사항과 개별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

- 예컨대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는 정보제공의무이지만 이에 관하여 특정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든지 특정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는지 등과 같은 개별적인 지침은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이러한 상세한 지침들은 정보제공의무의 구성요소로서 전체적인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 고려된다.

● **순수하게 내용적이거나 실체적인 의무들**

- 정화시설의 설치가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설치 그 자체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 **금전의 징수와 국고에 대한 금전의 납부**

- 징수된 금액의 액수와 개별 내역에 관한 통지만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며, 국고에 대한 금전의 납부 그 자체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림표현(각종 표식, 교통표지, 심볼디자인 등)**

- 특정한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도로교통표지판은 내용적 의무의 일부이므로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 문서 또는 전자적으로 갖추어두거나 전달되어야 할 자료들만 정보제공의무에 속한다.

● **자발적으로 행한 정보의 이전**

- 자발적으로 행한 것은 측정가능한 결과를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어진 의무(즉 강제규정)만 정보제공의무에 포함된다.

모든 정보제공의무는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정보 내지 자료들로 구성된다(아래에서는 이를 자료내용이라 한다). 따라서 예컨대 일정한 신청을 함에 있어 특정한 규범이 요구하는 개별적인 사항들(예컨대 성명, 수입, 가족상황 등)은 각각 그 자체 자료내용(Datenanforderung)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사항들은 “신청서의 제출”이라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공통의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다. 개별적인 자료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비용을 조사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2.1.2 조사되어야 할 규범

조사되어야 할 규범과 이 규범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현행법적 근거와 새로운 법률 내지 개정되거나 확장될 법률을 상호 구분해야 한다. 새로운 법률 내지 개정할 법률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경제계, 시민 또는 행정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6장에 서술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제5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 ▶ 우선 연방법과 연방차원의 시행령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조사한다. 관할 부처는 처음부터 행정규정을 포함시킬 것인지, 이를 긍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 ▶ 시간적 관점에서는 적어도 발효된 지 2년이 지난 정보제공의무를 행정비용조사에 포함시킨다. 발효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정보제공의무나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측정의 대상이 된다. 합리적인 계기가 있을 경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나 경과한 후에도 시간적 측정을 할 수 있다.
- ▶ 경제계의 비용부담 경감과 결부된 더 많은 성장과 고용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단계는 경제계의 정보제공비용을 측정한다. 원칙적으로 경제계에 대한 정보제공비용을 측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시민과 행정의 정보제공비용에 대하여 측정한다. 관할 부처는 현재 이러한 방식을 취할 것인지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 ▶ 현행 유럽연합법에 대한 시간측정을 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법의 경우 그것이 이미 독일의 연방입법자의 입법 문서를 통하여 국내법으로 이행되어 있고 연방입법자가 유럽연합법을 이행을 할 때 추가적인 정보제공의무를 명시해두었거나 유럽연합에 의하여 도입된 정보제공의무가 강화된 경우에 국한된다.
- ▶ 각 주의 규범상태는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연방과 주는 긴밀하게 경험을 교환하고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에서 연방과 주

간의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은, 정보제공의무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정보제공의무의 구체화는 주법에 근거하게 되는 경우이다(이른바 연쇄규제).

2.2 목표그룹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 측정의 목표그룹은 정보제공의무가 명시된 법규정의 수범자들이다. 이 목표그룹은 경제계일 수도 있고, 시민이나 행정 그 자체도 가능하다.

- 경제계

독일에서 표준비용모델을 이행함에 있어 시장가격으로 국내총생산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에 포함되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단위는 “경제계”라는 목표그룹에 속한다. 여기서 민간부문에는 자선적 조직과 명예적 부문도 포함된다. 민간부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2003년에 발간된 경제계의 분류(NACE)에 명시되어 있는 제L장(행정), 제P장(사가계) 및 제Q장(독일 국외에 있는 단체와 조직)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경제학적인 총계산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총계산은 유럽 전역에서 통일적인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³⁾

수범자인 경제계의 가장 중요한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적인 정의가 없다. 통계청의 기업통계 체계에서는 기업을 “상행위법 내지 조세법상의 이유로 회계를 작성하고 자산상황 내지 경제적 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 가장 작은 법적-독립적 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3)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상이하게 취급되고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부문을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경제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Charité, et al.: International Standard Cost Model Manual, 15쪽 참조; 또한 Klippstein et al.: Standardkosten-Model - Erstes Deutsches Handbuch, 23쪽 참조.

[부록 1]

기업은 모든 경영체와 자유직업적 활동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정의에 의하면 행정(연방통계청, 연방직업소개처 등)은 기업이 아니다. 행정은 상행위법 내지 조세법상의 이유로 회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기업관련 자료를 평가해보면 목표그룹인 경제계의 범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아래의 표 1 참조). 그러나 통계청의 기업관련 자료에는 예컨대 농업, 산림업, 어업 등과 같은 표준비용모델과 관련된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1 : 경제의 유형에 따른 기업의 수

경제계편 ¹⁾	총 기업수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근로자 ...명까지 고용하고 있는 기업			
		0-9명	10-49명	50-249명	250명 및 그 이상
C 광업 및 철광 물의 채취	2,872	2,147	578	124	23
D 가공업	282,535	217,231	47,124	14,411	3,769
E 전기 및 물 관련 업	9,707	8,233	750	535	189
F 건축업	315,650	279,836	32,678	2,941	195
G 무역, 수선업 및 자동차와 중고품 의 수선	719,114	662,156	48,294	7,489	1,175
H 요식업	258,931	246,649	10,968	1,198	116
J 교통 및 뉴스 전달업	130,633	115,026	12,979	2,195	433
J 신용업 및 보험업	43,297	39,644	1,622	1,301	730

연방차원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부담의 조사와 경감을 위한 연방정부 입문서

경제계편 ¹⁾	총 기업수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근로자 ...명까지 고용하고 있는 기업			
		0-9명	10-49명	50-249명	250명 및 그 이상
K 부동산 및 주거 제도, 동산의 임대, 경제적 서비스 제공 등	827,308	784,845	34,707	6,613	1,143
M 교육 및 강습	53,940	43,839	8,099	1,618	384
N 보건제도, 동물 위생제도, 각종 사회보장제도	222,871	195,034	20,012	6,312	1,513
O 기타 공적 서 비스와 개인적 서비스의 제공	301,857	286,071	12,637	2,590	559
총 계	3,168,715	2,880,711	230,448	47,327	10,229

1) 경제계의 분류, 2003년판(WZ 2003)

출처 : Nahm, M: Philipp, K.: Strukturdaten aus dem Unternehmensregister und
Asekte der Unternehmensdemografie, WiSta, Heft 9, 2005, 940쪽.

통계청의 기업통계와 기업등록부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측정과 관련(즉, 수량요소의 조사와 관련하여)한 통계적 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기업등록부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전문통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최초의 기초자료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특별히 농업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를 특정할 경우에는 농업통계를 원용할 수 있다. 납세액결정절차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각종 정보제공의무는 다양한 공식적 조세통계자료들이 수량요소(Mengenkomponente)를 개념정의하고 있다.

예:

연방통계청의 농업구조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생태적 경작을 하는 농업 관련 기업이 13,563개에 달한다고 한다(이 수치는 모든 농업관련 기업의 3.5%에 달한다). 따라서 특별히 생태적 경작과 관련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예컨대 생태적 농업기업을 인증하는 절차의 경우) 이 수치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

또한 특정한 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지만 이 기업이 독일 연방 법이나 국제협약에 근거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업은 “경제계”라는 수범자에 포함된다.

- 시 민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이나 경제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정보제공의무는 시민이 부담해야 할 정보제공의무이다. 자연인이 1인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인으로서의 특성에 근거하여 그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정보제공의무는 경제계가 부담해야 할 정보제공의무이다.

- 행 정

행정과제의 수행을 담당하는 행정담당자(권리능력있는 단체, 공법상의 기관과 재단, 고권적 권한이 위임된 경우의 공무원탁사인)는 국가 기관(행정)이다. 2003년에 출간된 경제계의 분류(NACE)에 따르면 이 단위는 제L절에 위치하고 있다. 통계상의 내용들은 현재 기업등록부 제L절에 서술되어 있지 않다.

- 측정시 목표그룹의 포함

앞의 2.1.2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은 우선 목표그룹인 경제계에 국한하여 행하고

그 다음으로 시민과 행정까지 확대시킨다. 시민과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비용도 측정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이미 경제계에 대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된다. 중복적인 일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수범자를 경제계로 하여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의 표준비용모델에 다른 측정에서 시민과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가 고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제계의 정보제공의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분석할 때(5.1 참조) 이미 시민과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시민과 행정의 행정비용을 측정함에 있어 다수의 법문서들을 중복되게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보장해 줄 수 있다.

3. 산정모델

표준비용모델의 핵심은 산정모델이다. 이 산정모델이 취하고 있는 가정과 산정모델의 구조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서명할 것이다.⁴⁾

3.1 산정모델의 가정과 요건

3.1.1 표준활동의 이행을 위한 전형적 행위양식의 고찰

표준비용모델에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단계를 이른바 표준활동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분화하는 이유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범주로 구분지을

4) 산정모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Nijssen, A.; Vellinga N.: A model to measur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business, Zoetermeer 2002, Charite, D. et al.(internationale Arbeitsgruppe): Das Standard- Kostenmodell-Konzept zur Definition und Quantifizierung des Verwaltungsaufwandes für Unternehmen durch staatliche Regulierung, Stand: Mai 2000.; Barnes, M. et al.: Die Messung administrativer Kosten: Handbuch für das Standard Cost Model in Großbritannien, September 2005.

수 있는 매우 유사한 업무처리단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보제공의무의 구체적 형성과 무관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험에 의하면, 정보제공의무는 14개의 표준활동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의 표 6 참조).⁵⁾ 표준활동의 최종적인 확정은 시간측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필요하다. 이 경우 유럽연합 차원의 발전(유럽연합의 방법론 입문서)을 고려한다.

그 뿐만 아니라 표준비용모델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위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양식의 이상적인 묘사를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상적”이란 기업이 하나의 “이상적인” 행위양식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러한 노력으로부터 전형적인 행위양식이 도출되는데, 이 전형적인 행위양식이 표준비용모델의 분석목적의 중심에 위치한다. 표준비용모델과 관련하여 행정적 절차와 행정행위 및 행정비용은 “통상적인” 내지 평균적인 행위양식에서 출발함으로써 표준화된다. 이로써 표준비용모델은 예외에 초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행위와 전형적인 절차형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고찰은 감당할 수 있는 결과를 양산해내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대표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반해 극도의 비효율적이거나 효율적인 기업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인 행정비용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임무는 개별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은 기업이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준수를 한다는 가정 하에

5) 덴마크와 영국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함에 있어 16개의 상이한 표준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덴마크와 관련해서는 AMVAB (Hrsg.), Manual for conducting Standard Cost Model measurements, Juni 2005, 31-32쪽 참조; 영국에 관해서는 Barnes, M. et al.: Die Messung administrativer Kosten: Handbuch für das Standard Cost Model in Großbritannien, September 2005, 56-57쪽 참조.

이루어진다.6) 다시 말해서 입법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평균적인 행위양식을 가정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두 가지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입법자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하고 납득할 수 있는 업무처리단계만을 고려하는 것이 인정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효율적 시간경비를 가정한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을 조사하는 방법은 목표그룹에 속하는 다수의 전형적인 기업과 외부에 위탁된 기업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외부 서비스업체 및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정보제공의무의 이행과 결부된 개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관련되는 결과가 모순을 안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심사를 실시한다. 관련되는 결과가 모순을 안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업들을 심사에 포함시켜서 표준화된 시간적 경비까지 확정할 수 있다.

유의사항: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이상으로 효율적인 기업들의 행위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표준화된 시간적 경비를 확정함에 있어 비록 이러한 기업들이 고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관할 부처는 실무에서 행해지고 있는 절차와 이 절차를 보다 더 광범위하게 장려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평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비가 소요되는 행정활동을 실행하는 기업은 그 행정활동의 실행을 위한 시간적 경비가 다른 - 유사한 - 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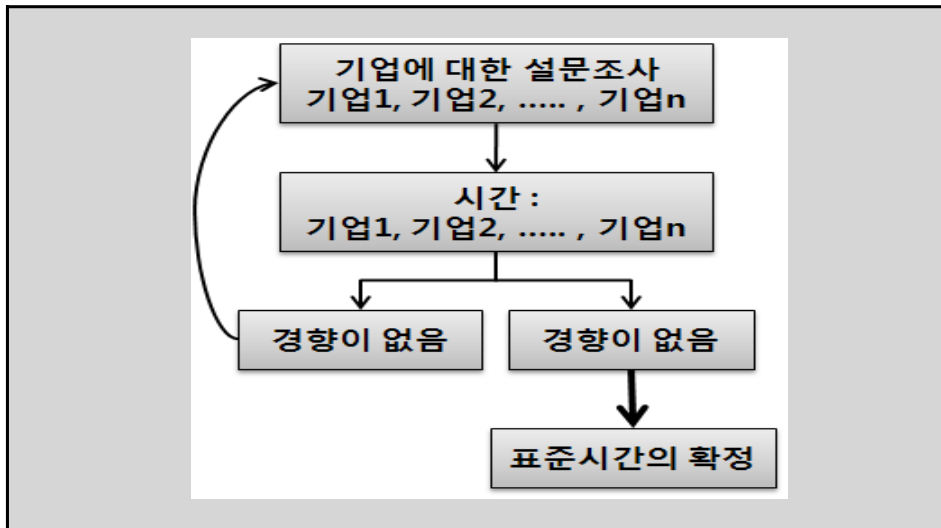
6) 이에 관해서는 Merck(Hrsg.): Bürokratieabbau und Bürokratiemess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ktober 2005, 48쪽 이하 참조.

[부록 1]

경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근거하여 기업들이 제시한 시간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통상적인 시간적 경비를 조사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들의 80% 이상이 하나의 행정 활동을 실행하는 데 약 10분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은 통상적인 기업의 평균적 경비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평균적 경비는 나머지 기업들이 행정 활동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최초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한 시간가치에 대한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가치를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래의 그림은 지금까지 서술한 진행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설문조사에 필요한 대상 기업의 수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국제적 연구그룹의 입문서를 보면 이와 관련하여 표 2에서 언급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표 2: 기업의 시간측정

행정활동 A		행정활동 B	
기업 1	10분	기업 1	10분
기업 2	10분	기업 2	20분
기업 3	10분	기업 3	10분
기업 4	10분	기업 4	20분
기업 5	30분	기업 5	15분
행정활동 C		행정활동 D	
기업 1	10분	기업 1	10분
기업 2	20분	기업 2	20분
기업 3	50분	기업 3	25분
기업 4	2분	전문가 4	20분
기업 5	5분	전문가 5	15분

출처: Charite, D. et al.: Das Standard-Kostenmodell, 27쪽(기준: 2005년 5월)
및 AMVAB(Hrsg.), Manual for conducting Standard Cost Model measurements, 55쪽.

위의 표 2에 나타난 기준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활동 C의 경우에는 또 다른 기업들을 설문조사해야 한다. 이에 반해 다른 행정활동들(행정활동 A, B, D)은 분명한 경향을 인식할 수 있다. 행정활동 A의 경우에는 10분으로 가정하고, B의 경우에는 15분, D의 경우에는 20분으로 가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활동 D의 경우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

3.1.2 모델의 통일적인 적용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은 개별적인 규범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입법분야에 대해서도 행정적 부담의 규모

에 관한 광범위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에 특수하게 상이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들이 통일적인 진행방식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다. 감당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고들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의 통일적인 적용과 통일적인 진행방식 및 측정결과에 대한 통일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자료작성과 확고한 방법론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들은 개념정의의 형식으로 측정의 이해와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표준비용모델은 실용적인 측정방식으로서 표준비용모델로부터 행정부담의 규모에 대한 기준치 내지 표준치가 도출된다. 감축목표는 확정될 수 있고 중점분야는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조사된 표준치가 동일한 방법론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방의 각 부처가 표준비용모델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측정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자료의 처리와 그로 인하여 획득한 인식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을 실무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그것이 방법론상의 방향설정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무처가 해명한다. 방법론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관해서는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2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을 위한 매개변수(Parameter)

각 시간단위당 비용, 시간적 경비, 송부의 빈도 및 목표그룹의 규모/수에 상응하게 행정비용에 대한 4개의 매개변수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 각 시간단위당 비용

행정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요금, 공통비용 및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구입비용으로 구성된다. 요금(T)은 기업이 행정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가격과 각 시간단위당 행정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 임금(interner Lohnsatz)과 외부적 비용(externer Kostensatz)은 상호 구분해야 한다. 시민과 관련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임금은 조사되지 않고 시간적 경비만 수량화된다.

내부적 임금(interner Lohnsatz):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정활동은 관련되는 기업이나 행정 스스로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를 통하여 비용이 임금과 봉급의 형식으로 발생하게 된다. 하나의 행정활동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질적 수준(Qualifikationsniveau)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질적 수준은 그 기초되는 임금비용의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매우 단순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질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둘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매우 단순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이미 실용성의 이유(재정적 경비, 시간적 경비 등)에서 질적 수준에 따른 질적 평가를 포기하되 평균가치를 원용할 수 있다.

법률상 명시된 특정한 정보제공의무가 어느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정보제공의무가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인지 아니면 분야를 통괄하는 의무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전문분야의 임금을 고려해야 하지만, 분야를 통괄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임금을 고려한다.

외부적 비용율(externer Kostensatz):

외부의 서비스제공자(예컨대 세무사, 공증인, 변호사)가 특정한 행정 과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외부적 비용에 기초한다.

“당연비용”(Sowieso-Kosten):

국가적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다수의 정보들의 경우 기업은 통상의 업무상의 활동을 행하는 범위안에서 “어차피” 조사된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을 반드시 국가에 의하여 명해진 정보제공 의무로부터 유발되는 행정비용으로 고찰할 필요는 없다. 기업은 이러한 행정활동을 그 법적인 정보제공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기업이 “어차피” 수행하게 될 행정활동을 조사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행정활동을 원칙적으로 측정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된다.

공통비용(Gemeinkosten):

공통비용은 개별적인 직원의 직접 임금을 합산할 수 있는 특정한 비용을 포함한다. 이에 속하는 예로는 부동산(임대료 또는 감가상각), 전화, 난방, 전기, IT설비 등과 같은 고정비용이다. 공통비용은 연방차원에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을 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비교한 사례를 보면 고정비용의 상승이 각각 비슷한 크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예컨대 네덜란드에서는 25%이고 영국에서는 30%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유럽연합 차원에서- 어떠한 또 다른 발전들이 나올 지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구입비용(Anschaffungskosten):

구입비용의 경우, 기업이 오로지 특별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은 매년 감가상각율의 규모를 산정할 때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매년 감가상각액을 관련되는 기업의 수와 곱하게 된다.

구입이 오로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자료를 창출해낼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구입은 정보제공의무를 측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예컨대, 기업이 디지털 방식의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터넷망을 필요로 하지만 그 인터넷망이 기업의 또 다른 통신목적으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를 측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 시간(Zeit)

매개변수로서 시간(Z)이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분으로 환산한 소요시간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즉 분)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기업이 고용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2분일 경우 이 22분을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시간으로 본다.

- 송부의 빈도(Übermittlungshäufigkeit)/주기성(Periodizität)

송부의 빈도(H)란 연간 얼마나 자주 특정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송부의 빈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모든 기업이 일반적으로 1년 내에 12회의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세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부의 빈도는 12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 대상 그룹의 규모

대상 그룹의 규모란 일정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시민 또는 행정단위의 수를 말한다. 목표그룹의 규모는 한편으로는 정기적으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수범자에게 법률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사실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그룹의 규모는 당해 법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수를 통하여 결정된다. 다른 한편, 목표그룹의 규모는 실제로 발생한 사례의 수를 통하여 정의될 수 있다.

[부록 1]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경제계, 시민 또는 행정이 단지 특정한 행위만을 수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이다. 예컨대 모든 기업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약 300만개의 기업은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한 해 동안 300,000건의 영업신고가 행해졌다면 “영업신고”라는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기업도 300,000개이다.

3.3 정보제공의무를 행정비용으로 산정하기 위한 공식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총 행정비용은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을 합산함으로써 도출된다.

(I)

$$VA = \sum_{i=1}^n VK_i$$

해설:

VA =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총 행정비용

VK_i = 정보제공의무 i의 행정비용

N = 관련된 정보제공의무의 수

실무에서는 각각의 특별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결과들을 합산한다.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의 비용(VK_i)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II)

$$VK_i = P_i * Q_i$$

해설:

P_i = 정보제공의무 i의 이행을 위한 의무

Q_i = 정보제공의무 i의 연간 빈도

산정공식의 가격과 수량의 요소는 3.2에 서술된 변수를 나눔으로써 계산한다. 정보제공의무의 가격(P_i)은 행정활동의 수행을 위한 각각의 시간단위당 요금(가격 변수 참조)과 행정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시간 변수 참조)을 곱함으로써 조사된다.

(III)

$$P_i = T_i * Z_i$$

해설:

T_i = 정보제공의무 i 의 수행을 위한 임금

Z_i = 정보제공의무 i 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특정한 표준활동을 위한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Z_i 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활동시간의 합계이다.

(IV)

$$Z_i = \sum_{j=1}^M ZS_{ij}$$

해설:

ZS_{ij} = 정보제공의무 i 의 표준활동 j 의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간

M = 표준활동의 수

네덜란드의 경험에 의하면,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최대 14개의 표준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M = 14$).

정보제공의무의 표준활동은 다양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표준활동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한 능력에 소요되는 비용도 그 단가를 달리한다. 따라서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요금(T_i)은

[부록 1]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임금을 시간에 중점을 두고 산정하는 산술적 평균이다.

$$T_i = \frac{1}{Z_i} \sum_{j=1}^M TS_{ij} * ZS_{ij} \quad (V)$$

해설:
 TS_{ij} = 정보제공의무 i의 표준활동 j의 수행을 위한 요금

수량(Q_i)의 조사는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시민 또는 행정단위의 수를 연간 송부의 빈도와 곱함으로써 파악된다.

$$Q_i = AN * H \quad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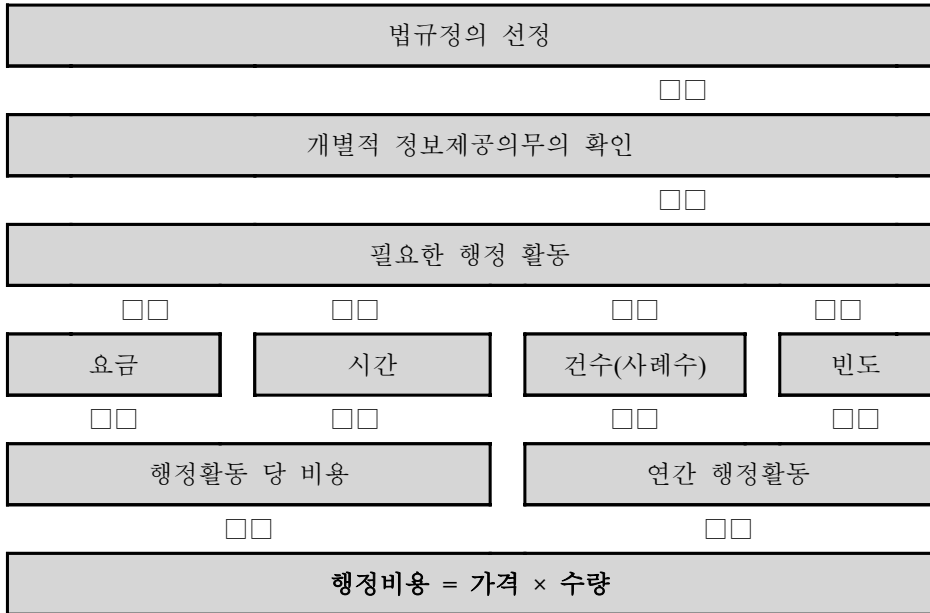
해설:
 AN = 수범자(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시민, 행정)의 수
 H = 송부의 빈도(년간 수범자의 활동이 얼마나 자주 수행되는가)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을 조사한 예[VK_i = (T_i * Z_i) (AN * H)]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특정한 행정활동이 3시간 소요되고(Z_i) 당해 기업에서 그 행정활동을 담당하는 자의 시간당 임금(T_i)은 10유로이다. 따라서 가격(P_i)은 3 * 10유로 = 30유로이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이 100,000개이고(AN), 이 기업들이 매년 2번(H)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량(Q_i)은 매년 200,000건의 행정활동에 달한다. 이 경우 전체비용(VK_i)은 200,000건 * 30유로로서 6백만 유로이다.

아래의 그림은 법규정의 선정에서부터 앞에서 언급한 산정공식의 적용에 이르기까지의 진행방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산정방식의 적용



이 산정모델은 비용이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용인지, 장래에 도입될 규정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비용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

- 시민의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특별한 점

원칙적으로 시민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금(T_i)이 산정되지 않는다. 시민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화폐단위의 규모를 기초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경우에는 빈도(H)이외에 시간(Z_i)이라는 지표가 결정적인 크기가 된다.

[부록 1]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은 시간적 경비(Z_i)와 양(Q_i)을 곱한 것이다. 이로부터 형식적으로는 하나의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K_i = Z_i * Q_i$$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행정비용의 합계(VK_i)가 곧 시민이 부담하는 행정비용이 된다. 다만,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발전에 기초하여 시민의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을 조응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다.

4. 자료와 자료은행

개별적 절차의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에 따른 측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료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만 외부에 대하여 결과의 투명성과 실감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의 작성은 비용측정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수량요소의 조사와 비용에 관한 사항을 뛰어넘어 자료준비와 자료평가에 이르기까지도 문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파악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비용측정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들(법률, 정보제공의무, 수량의 규모, 송부의 빈도, 목표그룹의 규모), 시간적 경비(시간, 분), 비용의 규모 등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특별한 정보들(법령의 출처, 타 규범에 대한 지시, 수량이나 시간 변수에 대한 인용자료의 출처, 원가치 또는 추정가치 등) 등이다.

연방정부의 관할 부처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연방통계청은 전자적 입력장치(Eingabemaske)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전자적 입력장치는 구조화된 자료작성을 보장하고 중앙 자료은행에서

개별 부처가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통계청은 온라인조사를 목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필요성에 맞춘 IDEV-파악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⁷⁾ 이 시스템은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이 이행한 정보제공의무를 동시에 파악하여 중앙 자료은행으로 송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인터넷주소 <http://www-idev.destatis.de>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 대한 로그인에 관해서는 모든 담당자가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외의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필요하지 않다. 이 점에서 모든 담당자는 자신의 책상에서 필요한 단계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담당자들이 입력한 자료는 온라인으로 연방통계청에 송부되고, 연방통계청에서 직접적으로 계속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연방 각 부처의 각각의 담당자들은 연방통계청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하게 되며,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등록자료은행에 그 인적 사항 등이 입력된다. 이러한 등록기술을 도움으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각종 보고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추후 질문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배열된다. 그 뿐만 아니라 권한있는 사용자만이 인터넷을 통한 각종 보고를 송부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각 부처의 담당자들은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 양식은 아래와 같은 하위 양식을 갖추고 있다.

- 법적 근거 : 여기서는 처리된 법규범(법률, 시행령, 행정규정)을 상세하게 다룬다.
- 정보제공의무 : 여기서는 담당자가 파악되어야 할 정보제공의무의 가능한 한 일상언어적인 명칭을 기재하고 그 정확한 법적 근거를 서술한다.
- 서술 : 정보제공의무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서술한다.

7) IDEV란 인터넷(Internet) - 자료(Daten) - 조사(Erhebung) 통합(Verbund)의 앞 글자를 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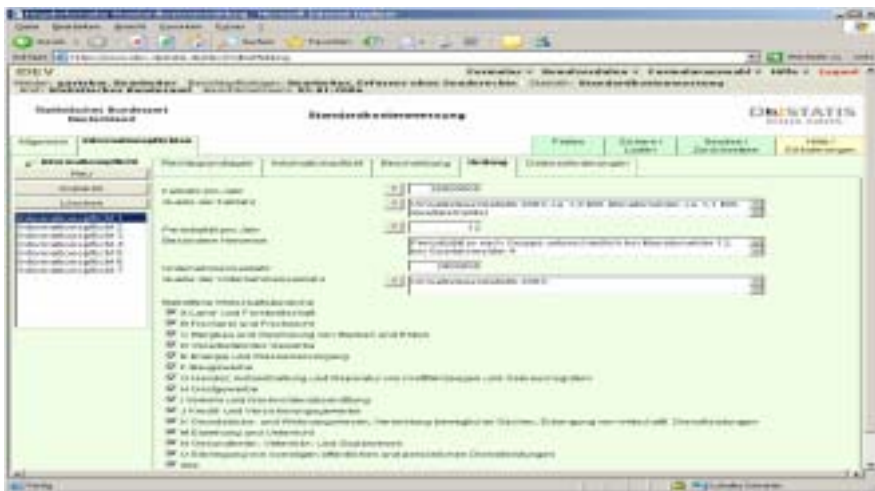
[부록 1]

- 범위 : 수범자가 연간 정보제공의무를 얼마나 자주 이행해야 하는지를 추산하여 서술한다.
- 자료내용 : 수범자가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송부해야 하는지를 서술한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예들은 하위 양식의 “범위”에 대한 체계를 예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위양식인 “정보제공의무”, “법적 근거” 및 “서술”은 모두 의무적 기재영역이다. 다시 말해서 담당자들은 이들 하위양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들 하위양식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측정이 의미 있게 수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의 하위양식들은 담당자가 문의된 사항에 관하여 확실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작성해야 하는 선택적 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적 영역이라고 해서 이러한 선택적 영역이 정보제공비용의 조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3: “범위” 등록카드에 관한 IDEV 입력시스템과 소득세 사전신고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의무가 다양한 수범자(예: 시민뿐만 아니라 경제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각각 분리된 정보제공의무로 이해하여 이에 상응하게 두 개의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조사시스템을 통하여 “양식의 복사” 기능에 관한 큰 업무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제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의무는 화폐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의무와를 달리 평가되기 때문이다.

연방 각부처는 전자적 입력장치와 그 속에 포함된 문의사항에 관한 구체적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 입문서의 부록 I에서는 조사될 자료들을 개관하는 표가 제시되어 있다.

표준비용모델-자료은행에는 각 부처가 자료은행에 입력하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요소들 이외에 원래의 측정과 관련하여 그 이후에 수행될 단계에서 조사되어야 할 정보들(수량에 관한 내용, 시간적 가치, 임금 등)도 입력된다. 그 뿐만 아니라 중앙 자료은행은 각 정보제공의무별로 산정된 표준비용이 포함된다. 자료은행에 있는 각종 정보들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 연방의 각 관할 부처에 제공된다.

5.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과 감축

5.1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현행법상의 정보제공비용을 의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규범(법률, 시행령, 행정규정)을 관할하는 연방 각 부처가 현행법상의 모든 정보제공의무를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이를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광범위하게 확인하는 것은 당해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제계, 시민 및 행정에게 유발된 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들에 대하여 완벽하고 실수 없이 목록을 작성하고 범주화하는 경우에만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결과가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부담가중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왜곡되게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4장에 서술되어 있는 전자적 입력시스템은 연방 각 부처에게 보조자료가 될 수 있다. 제4장에 서술되어 있는 전자적 입력시스템은 자료를 입력할 경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무처와 연방통계청이 (전체) 자료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개별적으로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명확성은 연방수상청 사무처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5.1.1 법문서의 범주화

첫 번째 작업단계에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입법차원별로 법문서를 범주화하는 것이다.

- 범주 D : 이 범주는 오로지 연방법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다. 연방입법자에 의하여 유발된 정보제공의무가 다양한 범규범이 연결됨으로써(연방법 ⇒ 시행령 ⇒ 행정규정) 그 부담이 경감되거나 면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른바 연쇄적 규정을 자료로 작성한다. 이것은 연방입법자가 야기한 정보제공의무가 주법이나 자치단체의 법규정에 의하여 더 구체화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범주 I : 이 범주에는 오로지 유럽연합법(유럽연합-집행명령, 유럽연합 지침) 또는 국제법에 기초한 정보제공의무, 즉 유럽법이나 국제법이 완전하게 1:1로 국내법으로 도입된 경우, 현재 도입되는 경우 또는 직접적으로 발효되고 있는 경우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범주화되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또 다른 발전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 범주 ID : 이 범주는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수준(예: 빈도와 내용과 관련된 수준)이 연방입법자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확장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전체 정보제공의무 중에서 원래 연방입법자가 발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부분만을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와 같이 정렬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한가지의 목표는 이와 같이 정렬함으로써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적절하게 종합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보제공비용을 단기적으로 간이화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지게 한다. 예컨대 그 본질에서 보면 국내 입법을 관할하는 연방 부처는 내용적으로 볼 때 국제법에 의하여 지침이 주어진 법규정을 주로 관할하는 연방부처보다 단기적으로 행정비용을 감축할 보다 더 나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장기적인 목적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만약 유럽연합법과 결부된 본질적이고 매우 비중이 있는 비용을 확인하지만, 이 경우 유럽연합법 자체가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유럽연합 법규정의 간이화에 본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제2장에 서술된 개념정의(정보제공의무, 조사대상)에 기초하여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측정과 감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 ➔ 연방법률,
- ➔ 시행령 및
- ➔ 유럽연합 집행명령상의

현행 정보제공의무를 조사하는 것이다. 행정규정의 경우 그것이 명백하게 높은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측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연방법, 시행령, 비용이 많이 유발되는 행정규정) 그 정보제공의무과 결부되어 있는 법문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런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지 않는 법문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지 않는 법문서들도 기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모든 법문서들이 어느 정도로 분석의 대상에 들어오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그 밖에 발효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제공의무도 기재한다. 발효된 지 2년 이하의 정보제공의무는 2년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5.1.2 정보제공의무의 범주화

모든 법문서들을 정보제공의무의 존부에 따라 범주화한 이후에는 전자적 입력장치를 도움으로 정보제공의무를 구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세 개의 목표그룹(수범자)별로 정보제공의무를 정렬하게 된다.

- W : 경제계(Wirtschaft)
- B : 시민(Bürger)
- V : 행정(Verwaltung)

또한 당해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자료의 (최종)수범자가 누구인지도 기재해야 한다.

- 수범자 W : 경제계(Wirtschaft)
- 수범자 B : 시민(Bürger)

- 수범자 V : 행정(Verwaltung)

유의사항:

간접적인 정보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이전이 수범자에서 최종 수범자에게도 직접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각각의 수범자 내재 최종수범자를 기재해야 한다.

예:

직원의 주거비신청을 위하여 고용주가 작성해주는 소득세증빙자료는 수범자 W(경제계)와 최종수범자 V(행정)으로 나타난다. 고용주는 이러한 증빙자료를 자신의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만 최종수범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하는 행정단위이다. 그리고 여기서 수범자는 경제계이다. 경제계는 이러한 증빙자료를 작성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경우 만약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빙자료는 자신의 특별한 정보제공의무를 이증빙자료부분이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고용주에게 증빙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신청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전체시간의 일부로 된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두 개의 상이한 정보제공의무가 있다. 하나는 고용주의 행정에 대한 (간접적) 정보제공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비신청과 관련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이다.

목표그룹이 경제계인 경우에는 어떠한 경제부문이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를 기록해야 한다. 이에 본질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이다. 목표그룹의 규모는 - 3.2에서 보는 것 처럼 - 행정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수량요소의 일부로서) 하나의 변수이다.

기업을 경제부문에 따라 범주화하기 위한 기초는 2.2장에서 언급한 NACE⁸⁾의 경제분야에 관한 분류를 보면 된다. 모든 관련되는 절(A, B,

8) Statistisches Bundesamt(Hrsg.), Klassifikation der Wirtschaftszweige, Ausgabe 2003.

C, D)을 개별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경제계 전체가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모두” 그에 상응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특정한 농업관련 기업이 생태기업으로 승인받고자 하거나 기존의 생태기업으로 그대로 남아있고자 하는 경우 그 농업관련 기업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그 기업은 경작면적과 경작방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은 NACE-장의 기업들만 해당된다.

이에 반해 소득세사전신고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소득세사전신고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그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경우 송부의 빈도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다. 이 문제는 - 목표그룹에 대한 문제와 동일하게 - 종종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적 근거를 도움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 밖에 관련되는 기업의 수와 연간 신고건수의 수에 관한 내용은 정보제공의무의 양적 의미를 평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정부부처에 이러한 수치가 모든 정보제공의무별로 직접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조사할 수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응하는 수치에 관한 기재 이외에 그에 포함된 분야에서 평가된 자료들도 기재해야 한다. 잠재적인 정보자료로는 공식적 통계, 각종 등록부 등이 있다.

예:

보험사건의 신고에 관한 고용주의 신고의무는 정보제공의무이다. 영업적 직업조합 총연맹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의 경우 기업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건수가 약 100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모든 부문의 기업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고된 건수가 100만건이라는 점뿐이다.

연방통계청의 소득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290만개의 기업이 소득세사전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003년도의 소득세통계에 의하면 약 180만개의 기업이 행한 송부의 빈도는 12회(송부된 시간적 간격이 매 1개월임)이고 약 110만개의 기업이 행한 송부의 빈도는 4회(이 기업들은 4/4분기별로 신고를 해야 함)이다. 따라서 매년 약 260만건의 신고사례가 발생한다. 이로부터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제공의무는 측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당해 의무의 출처와 목적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또 다른 특성에 따라서 범주화된다. 이에 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정보제공의무의 유형
- 조사의 유형(신청, 보고 등)
- 정보제공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내용적 분야에 따른 구성 (아래의 별첨 II 참조)⁹⁾

정책적 분야에 따른 구성은 네덜란드에서와 같이 현행 정부부처의 관할(예: 연방경제기술부, 연방노동및사회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정확한 범주화를 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정책분야별, 기능별 등으로 정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써 정치적 행위에 대한 각종 권고를 작성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5.1.3 자료내용의 범주화

현행법상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정보제공의무와 합리화의 잠재력을 조기에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하고 있는 자료의

9) 내용적 분야에 따른 분류는 연방법무부가 편집하는 2005년 12월 31일자 연방법 출처증명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출처는 정보제공의무의 확인을 위하여 이미 문의된 바 있다. 따라서 내용적 분야에 따른 특별한 문의는 생략한다.

[부록 1]

수준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내용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소득,
- 피고용자의 수,
- 수입,
- 사회보장급부액,
- 근로시간

이 단계는 우선 경제계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만 반드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행정의 정보제공의무도 분석하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함으로써 다양한 법규정이 동일한 정보제공의무 내지 자료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행정비용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법규정이 근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한 번만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예:

기업은 다양한 법규정을 통하여 소득의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예컨대 특정한 법규정들은 연말결산, 회사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것을 의무 지우고 있다. 이 소득은 동시에 조세법상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세금신고와 소득세사전신고절차에서 통지의 대상이 된다. 소득을 작성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1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측정도 1번만 한다.

앞의 예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가능하다. 두 개의 법규정이 동일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사례에서는 정보를 양산해내는 데 소요된 비용은 두 개의 법규정의 어느 하나에만 정렬하든가 아니면 두 개의 법규정 사이에 동등하게 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수상청 사무처는 분석처로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5.1.4 법문서, 정보제공의무 및 자료내용의 신뢰성확인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측정에 대한 신뢰와 외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처음부터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수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무에 관련된 대상을 초기에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각의 정부부처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작성한 목록을 관련 분야의 대표자와 협의해보고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심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이 단계에서 이미 가능한 간이화를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아래의 6.1 및 별첨 참조). 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측정의 단계에서도 중요하다. 외부전문가와 경제계가 수행하게 되는 신뢰성확인 단계는 부담감면의 가능성을 유발하기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과정에서 확인된 간이화의 잠재력은 적절하게 지적하여 자료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료내용의 중복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

다수의 통계에 대하여 기업이 피고용자의 수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내용의 중복성이 문제된다. 예컨대 지금까지의 절차방식을 변경하는 등 이러한 중복성을 피함으로써 경제계는 편익을 해하지 않으면서 부담의 감면을 달성할 수 있다. 피고용자의 수가 다수의 통계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계는 비록 기업이 피고용자의 수를 재차 신고하는 일이 있더라도 계속 실시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분석이 수범자(경제계, 시민, 행정)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아래에서 서술하는 단계에서는 오로지 수범자로서 경제계의 정보제공의무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할 것이다.

수범자인 시민과 행정에 대한 광범위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주어진 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추후에 서술할 것이다(5.5 참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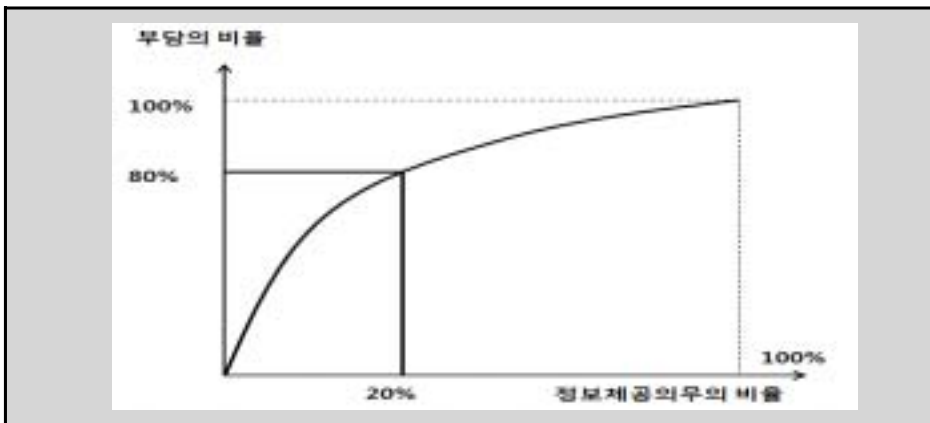
러나 시민과 행정에 대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경우에는 이미 조사된 자료가 좋은 기초가 된다.

5.2 예상되는 비용중요성에 따른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우선화

행정비용의 감축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가장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으로부터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들이 매우 상이하게 전체적 부담에 기여한다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부담의 대부분이 정보제공의무의 적은 부분에 의하여 야기된다는 가정이 맞다면 - 네덜란드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이 맞다고 한다 - 올바른 측정순서를 활용하여 조기에 행정비용의 많은 부분을 조사할 수 있다.¹⁰⁾

그림 4는 정보제공의무의 20%가 행정비용의 80%를 야기한다는 가정 속에서 이러한 관련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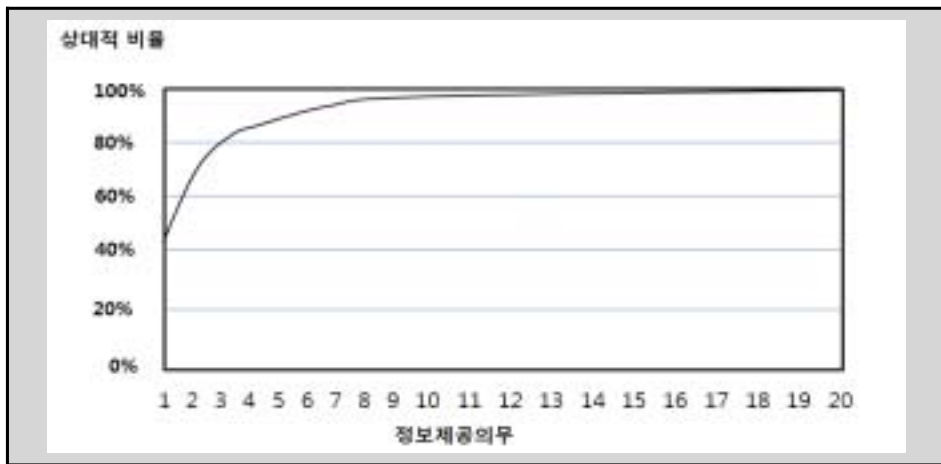
그림 4: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이론상의 상대적인 부담의 분포



10)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오스트리아의 입문서에도 우선성이 성공을 보장하는 조사 전략으로 추천되고 있다. Österreichisches Finanzministerium (Hrsg.): Handbuch Standardskostenmodell Österreich, Wien 32쪽 및 35쪽.

Bonn에 소재하고 있는 중산층연구소(Institut für Mittelstandforschung)는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는 총 20개의 정보제공의무를 분석하여 그 비용을 산정한 바 있다. 그림 5는 이러한 예에 대하여 누적화된 상대적인 부담의 분포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는 전체 부담의 90% 이상이 이미 4개의 큰 정보제공의무에 의하여 유발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5: 중산층연구소의 연구에서 나타난 상대적인 부담의 분포



출처: IfM(Hrsg.): Ermittlung bürokratischer Kostenbelastung in ausgewählten Bereichen, Bonn, 2006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임.

조사된 정보제공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의무의 부담이 가져오는 효과가 얼마나 상이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측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림 4와 그림 5가 제시해주는 것은, 잠정적으로 가장 큰 행정비용을 가진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는 결과가 보다 신속하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 작성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목록을 그 잠정적인 비용중요성에 따라 심사할 필요가 있다.

복잡성의 정도 이외에 정보제공의무의 전체비용은 결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계가 얼마나 자주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달려있다(즉, 수량적 요소). 이 두 가지(즉, 얼마나 많은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 얼마나 자주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의 규모는 이미 원래의 시간적 경비를 조사하기 전에 조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구조화되고 일차적으로 이른바 비용부담자에 초점을 맞춘 측정을 함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5.2.1 각 정보제공의무별 수량적 요소의 확정

정보제공의무의 수량적 요소는 각 관할 부처가 연방수상청 사무처와 연방통계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각 부처에 이미 이와 관련한 확실한 인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량적 요소는 이에 기초하여 조사한다. 각 부처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추산자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량적 요소에 대한 조사는 연방통계청이 수행하여 관할 부처와 협의한다.

수량적 요소(Q)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연간 정보제공의무를 얼마나 자주 이행해야 하는지(송부의 빈도)에 달려있다. 목표그룹으로는 모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분야의 기업들만 해당될 수도 있다. 송부의 빈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례가 구분되어야 한다. 하나는 법률상 정기적으로 송부할 것으로 명시해 둔 정보제공의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안별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컨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이다.

예:

소득세사전신고는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예로서 매 월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송부의 빈도가 12회로 되고 4/4분기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송부의 빈도가 4회가 된다.
기업이 건축허가에 대한 신청은 당해 기업이 설비, 시설 등을 건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4개의 사례를 특징지워볼 수 있다.

- 모든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의무
- 일부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의무
- 모든 기업에 대한 사안별 정보제공의무
- 일부 기업에 대한 사안별 정보제공의무

모든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송부의 빈도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 경제분야의 모든 기업들이 법률에 의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해야 할 원칙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예외가 있는지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예컨대 최소규모의 기업은 일반적인 소득세신고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소득세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실제 수는 290만개로서 기업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기업의 수보다는 약간 적다. 기업등록부상의 기업의 수는, 예외규정을 제외하면, 정보제공의무의 수량적 요소가 된다.

일부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송부의 빈도가 법률에 근거하여 도출된다. 관련되는 기업의 수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를 원용해야 하거나 송부된 정보를 수령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조사된 사례수는 법률상 명시된 송부의 빈도와 곱하게 된다.

예:

탄광과 철강의 생산을 포함하는 가공업의 비용구조에 대한 조사는 단지 이러한 분야의 기업들만 관련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성과의 한계가 존재한다. 즉 최소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한다. 이 조사는 매년 (송부의 빈도 = 1) 실시한다. 연방통계청에 의하면, 최대 18,000개 기업이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된다. 따라서 18,000이라는 수자는 수량적 요소가 된다.

모든 기업에 대한 사안별 정보제공의무와 일부 기업에 대한 사안별 정보제공의무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 경우에는 상시적인 송부의 빈도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목표그룹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에서 이 두 가지 수량변수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정기적인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 비하여 조사하는 비용도 더 많이 수반된다. 사안에 관련된 각종 통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 등의 건수의 빈도를 직접 문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빈도를 추산해야 한다.

추산의 실시를 포함하여 수량적 요소를 확정하는 것은 우선 연방 각 부처의 임무이다. 난해한 사례의 경우에는 연방통계청이 도움을 제공한다. 특별히 복잡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시간적 경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량적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

Bonn에 소재하는 중산층연구소는 특정 분야의 행정적 비용부담을 조사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여 “건축계획의 실행안”을 신고하는 비용을 추산한 바 있다. 이 수량적 요소는 통계에서 전혀 도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의 건축캠페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한 경험적 조사에 기초하여 조심스러운 추산을 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에 의하면 약 10,000건의 신고가 매년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중산층연구소의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의무가 비용에 미치는 의미의 순서에 대하여 수량적 요소가 비용요소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었
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수량적 요소의 광범위한 조사에 이
어서 수량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의 순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정보제공의무는 그 “수량적 의미”에 따라 순서대로 목록이 작성
될 수 있다(특히 전체목록, 각 관할부처에 따른 목록, 정책분야에 따
른 목록).

5.2.2 복잡성의 정도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의 분류

제3장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수량적 요소는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 중의 하나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
소로서 비용요소는 - 소요시간(시간적 경비)과 임금을 곱한 것으로 구
성된다 - 기업과 관련한 원래의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시간적 경
비의 조사)이 행해진 이후에야 비로소 산정된다. 실제로 가장 의미있
는(즉, 잠재적으로 시간적 경비가 매우 많이 소요되는) 정보제공의무
를 제일 먼저 측정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5.2.1에 열거
된 정보제공의무에 추가적으로 정보제공의무의 복잡성과 이와 결부된
소요시간을 반영한 요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보제공의무와 결부된 전체적인 활동과정을
세 개의 범주 중에서 어느 하나로 등급(단순 복잡, 중간정도의 복잡,
고도로 복잡)을 부여한다. 이 경우 정보제공의무 전체를 고찰하여 표
준과정의 개별적인 표준활동으로 세분화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표준
활동과 표준과정에 따른 체계화는 원래의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
의 과정(시간적 경비의 조사)에서 비로소 필요하다.

유의사항:

각 부처에서 정보제공의무의 복잡성에 따라서 정보제공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하나의 주관적인 평가라 할 수 있다. 가능한 한 통일적인 진행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는 아래의 대체적인 규칙이 있다.

단순 복잡성 : 자료의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복잡성을 지닌 정보제공의무라 한다. 이와 같이 자료의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수범자들로부터 요구된 자료를 큰 어려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범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그 자료의 내용(예: 기업의 소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제공의무 그 자체는 수범자들이 잘 알고 있다. 수범자들은 그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예컨대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차상의 과정은 매우 표준화되어 있다.

중간정도의 복잡성 : 중간정도의 복잡성을 가진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앞의 단순 복잡성의 기준 중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자료 내용의 수가 많거나(10개 또는 그 이상) 자료의 내용이 전형적인 업무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없거나 절차상의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수범자가 1회성 또는 적어도 가끔씩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관련 규범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이다.

고도의 복잡성 : 앞의 단순 복잡성의 기준들을 거의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고도의 복잡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료의 내용이 매우 많고 이러한 자료의 내용들이 업무의 과정에서 특수한 것이고, 수범자가 가끔씩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1회성으로만 부담하고 절차상의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고도의 복잡성이 있는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다.

수량변수의 확정과 함께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김으로써 그 이후의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용조사가 사전에 짜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단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적절하고 심사숙고된 진행과정이 요구된다. 관련 부처는 법률이나 정보제공

의무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연방통계청이 연방수상청 사무처와 협의하여 최종적인 복잡성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투입할 것이다.

5.2.3 정보제공의무의 우선성목록의 작성

5.2.1에서 언급한 중요하지 않은 서열과 5.2.2에서 수행한 복잡성에 대한 평가를 행한 이후의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보제공의무의 우선성 목록을 작성하게 된다. 정보제공의무의 우선성목록은 결과로서 순서를 제시해주는데, 이 순서에서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정확한 시간적 경비의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복잡성에 대한 평가로부터 도출되는 요소들은 일정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주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결국 자의적이고 우연적인 (중요하지 않은) 측정순서의 과정을 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관적으로 모든 정보제공의무들이 동일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가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이 해결한다. 오히려 이 절의 목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순서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효율적이란 가능한 한 앞의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는 선에 근접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가능한 한 가장 많은 비용을 유발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제일 처음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항상 일정한 정도의 주관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술한 진행과정은 정확성을 보다 더 높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중요성이 부여된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의 순서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수량변수를 각각의 복잡성요소와 곱한다. 이에 관하여 개별적인 복잡성의 특징들을 점수로 매긴다.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도출된 정보제공

[부록 1]

의무의 순서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점수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점수체계에 기초하여 다양한 측정순서를 아래의 표에 상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표 3: 다양한 점수체계

점수체계	복잡성의 정도			비고
	낮음	보통	높음	
대수적이다	1	10	100	고도의 복잡성
일률적이다	1	2	3	낮은 복잡성
동등하다	1	1	1	원래의 순서와 동일
Cash표	15	100	353	요소들이 네덜란드의 Cash 표의 핵심가치와 동일

출처: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임

5.3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 기초하여 측정하게 될 정보제공의무의 선택

5.2에서 제시한 비용을 수반하는 정보제공의무의 순서는 어떠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 제일 먼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의 기초가 된다. 감당할 수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결과를 보유하고 따라서 질적으로 높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가능한 한 조기의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제공의무가 최초의 측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존한다.

- (1)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총수
- (2) 주어진 수용능력
- (3) 비용분포의 경사
- (4) 우선화의 안정성

현존하는 수용능력은 강제적인 애로요소이다. 주어진 수용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보제공의무도 동시에 더 많이 측정의 대상에 포함되고 광범위하고 감당할 수 있는 표준비용모델의 결과가 보다 빨리 제시된다.

비용관련성에 대한 추산의 경사와 안정성은 표준비용모델에 따라 측정할 정보제공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내용적으로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만, 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제공의무를 측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비용분포의 경사가 기울어지면 질수록, 즉 전체적으로 정보제공비용에 대한 적거나 많은 비용유발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용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결과를 보유하기 위하여 측정되어야 할 정보제공의무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진다. 초기 단계에서의 측정의 대상이 몇 가지로 줄어들 가능성이 강하게 존재하면 할수록 최초의 결과를 보다 더 신속하게 보유할 수 있다.

표 4: 다양한 결과에 대한 가상적인 의미의 순서

정보제공의무	각 정부부처별 정보제공의무의 상대적 부담비율(%)				
	A	B	C	D	E
1	70	50	25	20	10
2	10	15	20	15	10
3	6	10	15	15	10
4	4	5	10	12	10
5	2	4	7	10	10
6	2	4	6	7	10
7	2	4	5	7	10
8	2	4	5	5	10
9	1	2	4	5	10
10	1	2	3	4	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임.

[부록 1]

위의 표 4는 분포의 문제와 첫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정보제공의무간의 관련성을 예시하고 있다. A부터 E까지의 5개 정부부처는 그들의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를 잠정적으로 비용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있다. 예상되는 비용부담의 최소한 80%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정보제공의무의 상이한 수를 특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A부처가 두 개의 큰 비용유발요인(IP 1과 2)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반해 E부처는 8개의 정보제공의무를 모두 측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사안에서는 선택이 E부처의 임의에 달려있다.¹¹⁾

수용능력과 비용분포의 경사이외에 우선화의 안정성도 실행해야 할 측정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표준비용모델 결과의 감당가능성간의 관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안정성이란 상이한 점수체계에서 순서의 안정성을 의미한다.

표 5: 상이한 점수체계의 경우 가상적인 의미의 순서

정보제공의무	상이한 점수체계에서 정보제공의무의 순서			
	대수적이다	일률적이다	동등하다	Cash테이블
1	1	1	1	1
2	2	2	2	2
3	3	3	5	3
4	4	5	10	4
5	5	4	3	5
6	6	10	4	7
7	7	7	7	10
8	8	6	8	6
9	9	8	9	8
10	10	9	6	9

출처: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임.

11) 앞에서 이미 언급한 중산층연구소에서는 3개의 가장 큰 비용유발요인을 선택함으로써 측정된 총비용의 80% 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표 5에서는 10개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이들이 다양한 점수체계에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순서를 예시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처음의 두 개의 정보제공의무는 최초의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제공의무 3도 우선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동등한 분포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 3은 물론 5번째에 위치하게 되지만, 중요성이 부여된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3번째로 위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복잡성이 매우 높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정보제공의무 5와 10이다. 정보제공의무 5와 10은 가정된 동일한 점수배점시 매우 앞에 놓이게 되고, 복잡성이 역할을 하는 순간 앞에 놓인 순서가 상실된다. 정보제공의무 5와 10은 측정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제공의무 4의 경우에도 복잡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중요성이 부여된 결과의 안정성의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중요한 비용유발요인을 추후에 측정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무는 최초의 단계에서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진행방식에 따른 선택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보해주고 최초의 결과의 준비를 신속하게 해준다.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 전체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수상청 사무처는 연방통계청과 함께 모든 관련 부처의 대표자들과 협의한 이후에 관료 주의철폐 정무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판단을 해야 한다.

5.4 정보제공의무의 비용 측정

5.4.1 측정방법론의 선택

시간적 경비를 측정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은 연방통계청에서 실시한다. 기업의 시간적 경비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연방 각

부처가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기관에 측정을 위탁할 경우에는 연방수상청 사무처가 연방통계청과 협의하여 관련 부처에 문의한 후 외부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외부위탁자의 행위원칙은 이 입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방법론에 따르는 것이다. 시간적 경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결과들은 관할 부처와 협의한다.

시간적 경비를 조사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¹²⁾

- 전화인터뷰
- 현장인터뷰
- 전문가인터뷰
-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 델파이 설문조사(서면에 의한 전문가설문조사)
- 스톱워치방법론

이러한 상이한 방법론들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 상이한 방법론을 활용한다.

전화인터뷰는 신속하고 비교적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결과를 양산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¹³⁾ 전화인터뷰의 대상이 되는 기업별로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대면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제반 상황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것은 스톱워치방법론의 핵심이다)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추적은 특히 복잡한 경과과정을 가지고 있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 반드시 필요하다. 전화인터뷰는 그 장점과 단점을 고

12) 측정방법론에 관해서는 AMVAB(Hrsg.), Manual for conducting Standards Cost Model measurements, Juni 2005, 53-54쪽 참조.

13) 전화인터뷰를 실시하는 이유와 적절한 표본을 선택할 경우의 진행과정에 관해서는 Häder, S.: Telefonstichproben, ZUMA, How-to-Reihe, Nr. 6, 2000 참조.

려해볼 때 신속한 결과가 필요하고 비교적 많은 기업이 설문 대상
으로 되며 측정되어야 할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때 활용할 만하 가치
가 있다.

(구조화된) **현장인터뷰**는 인터뷰를 하는 자와 설문조사 대상자간의
직접적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해준
다. 현장에서는 인터뷰를 담당하는 자가 답변의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반 상황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인터뷰는 전화인터뷰에 비하여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적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만 설문이 가능하다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현장인터뷰는 복잡한 정보제공의무이면서 모든 기
업이 관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설문의 대상으로 되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경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인터뷰는 반드시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자를 설문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나 그 밖의 활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자, 예컨대 조세상의 정보제공의무의 경
우 세무사나 건축문제의 경우 건축사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설문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이 경우 전문가
들은 전체적인 기업 그룹을 대표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전문가인터
뷰는 보다 유리하고 신속하게 설문조사를 하게 한다. 특히 복잡한 문
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개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인터뷰
는 특히 비교적 많은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적합한 설문조사방식이다. 또한 전문가인터뷰는 달리 서술된
절차들 중의 어느 한 절차를 도움으로 획득한 결과의 신뢰성을 심사
할 경우에도 활용된다.

전문가에게 특별히 적합한 복잡한 문제제기의 경우에는 측정분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측정이 특히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인터뷰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측정결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측정방법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된다.

전문가인터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적절한 전문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제기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은 일정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히 그룹인터뷰에서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단체대회에서 몇몇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면 이러한 경향은 원래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에 관하여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주의깊은 평가를 가져오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그룹토의를 실시하게 되면 개인의 의견을 주도하는 층이 등장하여 이를 통하여 과도하게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그룹토의를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게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이러한 설문조사지가 회송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하여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야 할 경우보다 더 많은 설문조사지를 발송해야 한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자신에게 문의된 설문조사의 문항에 대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설문조사지에 기재된 설문문항도 분명하고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역질문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예컨대 전화 핫라인을 통하여). 또한 제반 상황을 추적해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지의 설문문항에 응답을 기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기업체

내에서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는 많은 기업들이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비교적 단순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설문하거나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델파이 설문조사(서면에 의한 전문가설문조사)란 서면에 의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말한다. 전통적인 설문조사에서와는 달리 델파이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설문의 결과를 접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평가를 수정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델파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우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 1차 조사는 평가되고, 그 이후 그 결과는 설문조사지와 함께 2차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들에게 송부된다. 이와 같이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분리해서 실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문제제기에 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최선의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이 결과를 접함으로써 그룹토의가 시뮬레이션 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그룹토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룹 내 개인의 의견이 그룹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델파이 설문조사의 또 다른 장점으로서는 전문가의 대부분이 구두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델파이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도달한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델파이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저조한 회신률 등의 단점이 있다. 경험연구에 의하면, 델파이 설문조사의 경우 회신되지 못하는 비율이 전통적인 설문조사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¹⁴⁾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인하여 일반적인 문서에 의한 설문에 비해 문제제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을 위하여 투입되는 델파이 방법론은 비교적 많은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문제제기의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델파이 설문조사에 관해서는 Vorgriener, D. Wübben, D.: Die Delphi-Methode und ihre Eignung als Prognoseinstrument, in *Wirtschaft und Statistik*, Heft 8, 2003, 763-774쪽 참조.

스톱워치방법론은 여기서 언급한 측정방법론들 중 가장 복잡한 것이다. 스톱워치방법론은 Bonn에 소재하고 있는 중산층연구소에 의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행정비용의 부담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¹⁵⁾ 다른 방법론들과는 달리 스톱워치방법론은 설문대상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의무가 개별적인 절차단계로 세분화된다. 그 다음으로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절차과정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 경비를 측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상황을 추적해 나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확고한 필수사항이다. 다른 어떤 절차에서도 스톱워치를 이용한 시간적 경비의 측정절차보다 주의깊게 시간이 조사되지 않는다. 이 경우 시간측정을 위한 사항들은 객관화된다. 그러나 스톱워치방법론에서도 주관적인 요소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연습실행”은 대상자에게 자신의 활동을 실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시간적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이와 결부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스톱워치방법론이 특히 적합한 예로는 적은 수의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고도로 복잡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은 비교적 적은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행해지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스톱워치방법론에 의한 절차는 다른 측정방법론의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 그 결과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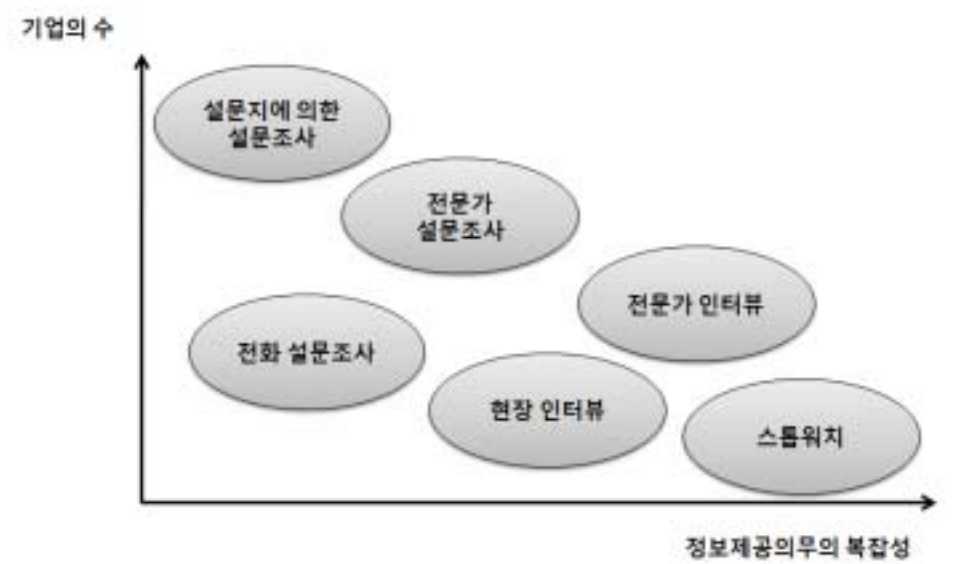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6은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비용측정을 위해 관련되는 기업의 수와 복잡성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떠한 측정방법론이 적절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험연구에 의하면, 직접적인 대화, 즉 그것이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대화이든 관련자 자신과의 직접적인 대화이든, 스톱워치를 이용하든

15) 스톱워치방법론에 관해서는 IfM(Hrsg.): Ermittlung bürokratischer Kostenbelastung in ausgewählten Bereichen, Bonn, 2006.

구조화된 설문조사지의 도움을 받은 최선의 결과를 산출한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¹⁶⁾ 그러나 정보제공의무의 수가 많다는 점, 일부이지만 관련되는 기업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설문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주어진 수단들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정방법론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도식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림 6: 관련기업의 수와 복잡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측정방법론의 선택



출처: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임.

설문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설문지의 효율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상호 유사한 정보제공의무를 하나의 측정 내지 조사에서 함께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¹⁷⁾

16) Charite, D. et al.: Das Standard-Kostenmodell, 25쪽(2005년 5월 기준).

17) Österreichisches Finanzministerium (Hrsg.): Handbuch Standardkostenmodell Österreich, Wien, 64쪽 참조.

5.4.2 시간의 측정

국가가 부담시킨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개별적으로 표준화된 부분활동으로 세분화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부분활동 내지 표준활동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개별적인 표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의 총계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표준시간이 된다.

따라서 표준절차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스톱워치조사 또는 그 밖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표준절차의 지침을 통하여 인터뷰를 실시하는 자는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이상적으로 준수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처리과정에 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은 표준화된 비용을 조사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새로운 표준절차를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표준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변수와 임금변수를 조사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목표지향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관찰하는 담당자가 표준절차에서 확정해두고 있는 행정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정한다. 조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결과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변수이외에 일반적으로 국가가 유발한 행정활동을 기업체 내에서 수행하는 직원(관리직 직원, 일반 직원 등)의 질적 수준(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¹⁸⁾ 이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기관(세무사, 건축가 등)이 정보제공의무를 처리했는지에 관한 정보도 조사해야 한다.

18) Bertelsmann Stiftung, Handbuch zur Messung von Bürokratiekosten, 2006년판 참조.

표준비용모델의 적용에 관한 네덜란드의 경험에 의하면, 실무에서 정보제공의무는 거의 14개의 표준활동으로 서술할 수 있다고 한다(아래의 표 6 참조). 그 이유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활동들이 구체적 내용이나 정보제공의무의 목표그룹과는 무관하게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간과 필요한 직적 수준(즉, 직원의 질적 수준)은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측정되거나 설문조사되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네덜란드에서는 행정활동분류시스템(Classification System Administrative Activities: CASH)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래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¹⁹⁾

행정활동을 적은 개별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은 모든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기업이 투입한 기술과 투입된 직원의 질적 수준에 관한 최초의 자료가 도출된다. 이를 통하여 기업체 내에서의 개별적인 절차단계들 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²⁰⁾

표 6: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표준절차

연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일반적인 문제제기
1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업무익히기/일반적 교육	관련되는 목표그룹이 정보제공의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2	정보의 수령	행정기관에서 기업체로 정보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반적 조건이 존재하는가?

19) CASH란 Classific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Activities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Activities는 네덜란드 말로 Handelingen을 뜻한다. Nijsen/Vellinga, A model to measur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businesses, Zoetermeer 2002 참조.

20) IfM(Hrsg.): Ermittlung bürokratischer Kostenbelastung in ausgewählten Bereichen, Bonn, 2006 참조.

[부록 1]

연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일반적인 문제제기
3	필요한 정보의 수집	어떠한 정보가 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4	필요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평가	당해 정보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에 족한가?
5	필요한 자료의 기재 또는 입력	자료들은 어떻게 입력되는가(수동/자동)?
6	산정 또는 추산의 실시	기업이 어떠한 산정, 평가, 계산 또는 추산을 실시해야 하는가?
7	결과의 출력/문서작성	획득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8	결과의 통제와 필요한 수정	통제조치와 수정조치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가?
9	제3자로부터 정보의 수령	특정한 구입이나 외부의 정보창출이 반드시 필요한가?
10	협의	기업가가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자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가?
11	해명, 설명	확고하게 정해진 양식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해명을 해야 하는가?
12	지불명령서의 기재	반드시 필요한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위하여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13	정보의 송부	기업체에서 행정기관으로 정보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반조건이 존재하는가?
14	정보의 문서화	기업체에서 자료를 계속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내용이 요구되는가?

출처 : Nijssen/Vellinga, A model to measur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businesses, Zoetermeer 2002 및 Bertelsmann Stiftung, Handbuch zur Messung von Bürokratiekosten, 2006년판.

유의할 것은 특별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항상 14개의 표준활동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원래의 측정을 실시하기 이전단계에서 심사해보아야 할 것으로는 독일 연방차원의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함에 있어 이러한 표준절차와 그와 결부된 표준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지를 여부이다.

표준활동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그에 상응하게 구술에 의한 설문조사형식을 위한 설문지침서,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지 또는 스톱워치를 위한 시간입력지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 것은, 소요시간의 측정 내지 설문과 관련하여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체 직원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문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절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교섭해야 한다. 이에 반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의할 것은, 그룹에 특별한 결과들이 전문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사례(예: 결과가 기업체의 규모나 경제분야에 따라 차이가 날 경우)에서는 각각의 그룹별로 충분한 기업의 수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평가를 절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적게 나타나는 위험이 나타나게 된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시간측정을 통하여 기업의 부담을 가능한 한 적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할 때 기업체들을 교대로 대상으로 삼고 유사한 정보제공의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문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설문에서 다수의 정보제공의무들이 문의되는 전문가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전문가들을 교대로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유사한 정보제공의무들을 묶어서 문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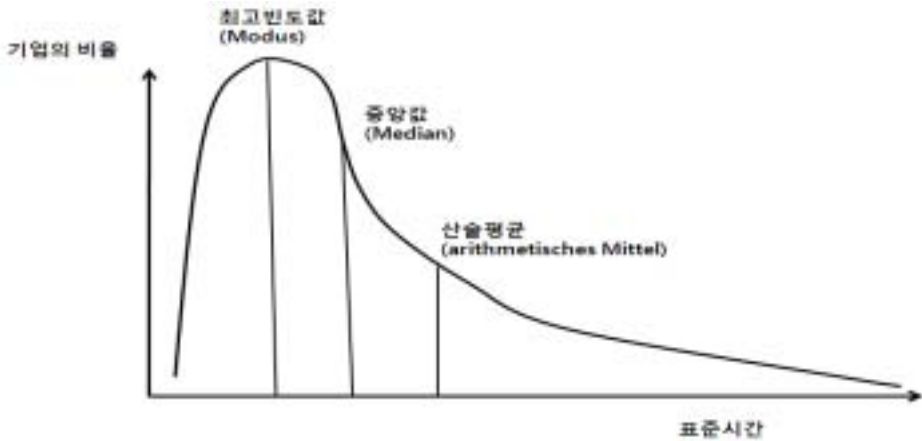
5.4.3 전체결과에 대한 구체화

시간측정, 임금 및 5.2.1 절에 서술된 수량적 요소의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비용변수에 관한 모든 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인 내용들로부터 어떻게 전체결과를 조사할 것인지를 서술할 것이다. 이 경우 우선 측정결과로부터 각 정보제공의무당 가격요소를 산정해야 한다(이에 관해서는 5.4.3.1 절 참조). 그 다음으로는 5.2.1 절에서 조사된 각 정보제공의무당 수량적 요소를 도움으로 각 정보제공의무당 행정비용과 총 행정비용을 추산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은 연방통계청이 맡고 있다.

5.4.3.1 가격요소의 산정

영역단계에서 조사된 정보제공의무의 각 표준절차당 시간에 관련된 내용은 표준비용모델 자료은행으로 모두 결집된다. 이로부터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을 위한 시간적 경비를 산정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임금에 관한 자료도 자료은행으로 들어온다. 이것은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마다 경제분야를 총괄하거나 경제분야에 특수하게 자료은행에 수집되기도 하고 직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표준절차를 모두 마치기 위한 가장 이상적으로 표준화된 시간에 관한 내용은 시간적 경비의 규모로서 자료은행으로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표준절차를 위한 시간이 자료은행 속으로 들어온다. 측정방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특별한 표준절차를 위한 다양한 개별적 내용들을 가지게 된다(얼마나 많은 기업이 문의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개별적 내용들을 가지게 된다). 최소로 요구되는 필요시간을 0분으로 설정하고 설문대상 기업의 수가 충분하게 많은 것으로 설정하게 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내용의 분포를 예상해볼 수 있다.

그림 7: 표준절차를 위한 시간적 내용의 잠정적 분포



출처: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임.

표준시간이란 기업이 표준절차를 실행하기 위하여 전형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을 말한다. 위의 그림에서 나타난 분포형식을 해설해보면, 최고빈도값(Modus)²¹⁾은 중앙값(Median)²²⁾보다 더 적은 것이고 중앙값(Median)은 산술평균보다 더 적은 것이다. 표준비용모델과 관련하여 최고빈도값(Modus)뿐만 아니라 중앙값(Median)도 전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기업이 종종 아무런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빈도값(Modus)이 적절하다. 이에 반해 중앙값(Median)은 분포에서 차지하는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²³⁾ 이에 반해 산술적 평균은

21) 최고빈도값(Modus)이란 가장 빈도가 높은 가치를 말한다. 하나 이상의 가장 빈도가 높은 가치를 가지는 분포의 경우에는 다수의 형식도 기재할 수 있다.

22) 중앙값(Median)이란 정렬된 순서의 크기에 따라 2등분된 각각의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Median은 특징자(예: 기업)의 50%는 낮고 나머지 50%는 높은 분포의 가치와 같다.

23) 중앙값(Median)의 핵심적 지위는 중앙값(Median)이 분포의 임의적인 점을 절대적으로 벗어난 것의 합계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극단적 가치를 통하여 위로 향하여 왜곡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기업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산술적 평균은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빈도값(Modus)은 모든 사안에서 분명하게 결정할 수 없는(예컨대 두 가지의 가장 빈번한 가치가 등장할 수 있다) 반면에 중앙값(Median)은 항상 분명하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고빈도값(Modus)에 비해 중앙값(Median)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중앙값(Median)에 상응하는 시간적 규모를 표준시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²⁴⁾

예:

공식통계²⁵⁾를 통하여 경제계의 부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에서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한 통계의 경우 3,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관하여 보고를 한 바 있다. 이 분포는 예상된 log-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30분과 60분이라는 최소한 두 개의 상태가치가 존재한다. 중앙값(Median)은 40분에 위치하고 있고 산술평균은 - 극단적 가치를 통하여 위로 향하여 왜곡되는 - 70분에 위치한다. 이러한 자료상황에 기초해볼 때 전형적인 기업은 “제조업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에 관한 통계를 위한 신고”라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40분(Median)의 시간이 요구된다.

고도의 복잡성: 앞의 단순 복잡성의 기준들을 거의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고도의 복잡성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료의 내용이 매우 많고 이러한 자료의 내용들이 업무의 과정에서 특수한 것이고, 수범자가 가끔씩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거나 1회성으로만 부담하고 절차상의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고도의 복잡성이 있는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다.

24) 이것은 중산층연구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다. 중산층연구소의 진행방식은 물론 시간에 관한 내용의 경우 Median뿐만 아니라 산술평균을 증명하지만 비용추산의 경우에는 Median을 활용한다. IfM(Hrsg.): Ermittlung bürokratischer Kostenbelastung in ausgewählten Bereichen, Bonn, 2006.

25) Stäglich, R.; u.a.: Die Bedeutung der Belastung der Wirtschaft durch amtliche Sta-

앞에서 언급한 절차는 측정된 모든 표준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지로서 예컨대 아래의 표 7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되어야 할 것은 14개의 모든 표준활동들이 측정을 위하여 주어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각각의 표준활동들의 경우 표준시간은 기업에서 측정된 시간의 중앙값(Median)에서 도출된다.

전체적인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표준시간으로서 아래의 표 7에서 개별적인 표준시간의 합계로 113분이라는 점이 도출된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게 강조할 것은 이러한 결과가 특정한 기업에서 직접 조사된 것이 아니라 측정된 가치들에서 나온 중앙값(Median)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간이 113분이나 요구되는 기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시간이란 기업이 각 활동별 표준시간에 따른 모든 표준활동을 이행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시간이다. 기업이 14개의 범주중 어느 하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시간은 조사된 표준시간에서 벗어나게 된다.

표 7: 정보제공의무의 측정 결과(예)

연 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표준시간 (분)	요금 (유로)
1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업무익히기/일반적 교육	10	33
2	정보의 수령	2	28
3	필요한 정보의 수집	19	28
4	필요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평가	6	33
5	필요한 자료의 기재 또는 입력	5	28

[부록 1]

연 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표준시간 (분)	요금 (유로)
6	산정 또는 추산의 실시	5	61
7	결과의 출력/문서작성	3	33
8	결과의 통제와 필요한 수정	12	33
9	제3자로부터 정보의 수령	20	28
10	협의	10	61
11	해명, 설명	14	33
12	지불명령서의 기재	4	33
13	정보의 송부	1	28
14	정보의 문서화	2	28
정보제공의무		113	34.5

마지막 행에서 앞에서 예로 든 전문분야의 (작업시간당 작업비용) 평균적인 임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3가지의 질적 수준들간에 기업체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상이하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각각의 표준활동마다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각각의 단가(위의 예에서 시간당 28/33/61 유로)가 사용된다. 표준활동을 행함에 있어 질적 수준은 각각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문의해야 하고, 단가는 연방통계청의 통계에서 도출한다(가능한 자료출처로는 국민경제에 관한 총계산, 기업의 근로비용조사, 수입구조에 관한 조사 등).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평균적 임금은 각 표준시간 당 모든 임금의 가중치가 부여된 산술적 평균으로 도출된다(3.3 공식 5 참조). 위의 예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평균적 임금은 34.50유로이다. 위의 예에 제시되어 있는 수치는 다시금 가설적인 평균수치이기 때문에 첫째, 이 수치는 세 가지 성과그룹의 단가에 의존하며, 둘째 이러한 평균임금은 구체적인 기업의 평균임금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없다.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각각 설문 대상에 된 기업의 기업규모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근로자의 수 또는 수입의 정도)에는 경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결과표는 추가적으로 기업의 규모(소/중/대)와 관련지워서 조사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규모에 의존한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의미를 가진다.

5.4.3.2 행정비용의 산정

정보제공의무의 1회적 준수를 위한 행정비용은 평균적인 시간과 정보제공의무를 위하여 소비한 표준시간을 곱함으로써 도출된다. 앞의 예에서 전형적인 기업이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한 번 이행함으로써 소비하게 되는 행정비용은 64.98유로가 될 것이다.²⁶⁾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을 전체적으로 합산하기 위해서는 5.2.1 절의 결과를 원용해야 한다. 이 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량적 요소는 신고건수에 기초하여 도출하거나(예: 건축허가의 건수) 또는 법률상 명시된 연간 송부빈도와 관련되는 기업을 곱함으로써(예: 소득세사전 신고의 경우 매월, 즉 1년에 12회를 신고해야 하는 기업이 180만개이고 4/4분기마다 1번 신고하는 기업이 약 110만개이다) 도출하면 된다. 수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예컨대 정보제공의무가 연간 500,000회 발생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이는 앞의 예에서 총 3,249만유로의 행정비용이 도출된다.

각각 측정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비용의 가치를 조사할 수 있다. 모든 가치의 합계는 전체적인 독일 경제의 행정비용이 된다(3.3의 공식 1 참조).

26) 113분을 환산해보면 1시간 53분이다. 1시간은 34.50유로로 반영된다. 이에 반해 53분은 기업이 30.48유로로 부담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하면 64.98유로가 된다.

[부록 1]

자료들이 분류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에 기초한 정보제공의무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다. 정보제공의무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들만 관련지우게 되면 잠재적인 차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밖에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기업들도 규모와 관련지워서 구분할 수 있다.

예:

가공업의 경우 비용구조에 관한 조사는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가공업의 경우에만 조사한다. 따라서 소기업은 이러한 정보제공의 무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있고 아무런 부담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총 행정비용은 낮게 나타난다.

1인기업의 경우 정보제공의무는 개념정의에 상응하게 회사의 소유주나 외부의 기관(세무사 등)에 의하여 이행된다. 이 경우 회사의 소유주나 외부기관은 일반 기업의 직원보다 더 높은 비용단가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경우 총행정비용은 높게 나타난다.

정부의 각 부처와 연방통계청이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자료 은행에 입력한 내용에 기초하여(4 및 5.1 참조) 다양한 특징에 따라 총비용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정렬에 따라 결과의 입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정부의 각 부처에 따른 결과의 입증
- 기업의 경제분야에 따른 결과의 입증
- 정책분야에 따른 결과의 입증
- 법률의 분야에 따른 결과의 입증
- 입법단계에 따른 결과의 입증
- 의무성의 정도에 따른 결과의 입증(필요적 또는 선택적)
-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에 따른 결과의 입증

특히 마지막의 두 내용은 부담감면을 가능한 한 조기에 확인하는데 기여한다(이에 관해서는 6.1 참조).

5.5 현행법상 시민과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 의무의 포함 및 행정규정의 포함

앞에서 언급한 진행방식은 우선 경제계가 법률 또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만 관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시민과 행정이 부담을 안고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행정규정에 근거한 정보제공의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서술할 것이다.

- 시민과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측정

현행법상 시민과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두 번째 단계, 즉 경제계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측정이 종결된 이후에 측정한다.

그러나 이미 지금 특별히 부담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 추정되는 시민이나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경제계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측정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측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시민과 행정의 또 다른 정보제공의무도 처음부터 측정절차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관할 부처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있다.

현행법상 시민과 행정이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절차적 진행과정(심사과정과 심사단계)도 시민의 경우에는 시간적 경비의 규모가 조사되지만 화폐적 비용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없다.

- 행정규정의 포함

행정규정에 근거한 현행 정보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추후의 단계에서 측정한다, 즉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하여 유발된 경제계의 정보제

공의무에 대한 측정이 종결된 후에 측정한다. 그러나 이미 지금 특별히 부담이 높게 나타난다고 추정되는 행정규정에 기초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한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측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행정규정에 의하여 야기된 또 다른 정보제공의무도 처음부터 측정절차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관할 부처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있다.

행정규정에 기초한 현행 정보제공의무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측정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절차적 진행과정(심사과정과 심사단계)도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절차에서와 다르지 않다.

6. 비용감축을 위한 조치

6.1 절감잠재력의 추론

앞에서는 표준비용모델의 각각의 단계마다 이미 가능한 간소화조치에 대한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간소화조치를 확인하고 가능한 비용절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국가적 행위의 수범자들(경제계, 시민, 행정) 중에 행정적 부담이 어디서 발생하는가?
- 수범자들이 어떠한 법적인 지침과 어떠한 국가의 행정적 행위를 불필요한 장애라고 보고 있는지 내지 그것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가?
-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를 개별적인 절차단계로 분류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특히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비용은 무엇인가?

잠재적인 간소화와 비용감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이익단체, 수범자 및 국가적

행정과의 대화로부터 도출되는 그 밖의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부담의 감면을 조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부록에 기재되어 있다.

행정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다양하다. 원칙적으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간이화조치들로 구분해볼 수 있다.

-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방안
- 개별적인 법문서를 개정하거나 규정내용을 축소함으로써 정보제공의무를 간소화하는 방안
- 개별 부처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첩적 정보제공의무를 방지하기 위한 법문서들간의 정합성을 개선시키는 방안
- 다른 국가기관에 존재하는 정보를 원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양식을 간소화하는 방안
- 전자정부: IT의 활용, 특히 IT에 기반하여 수범자가 국가기관에 정보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수범자간의 상시적인 절차를 확보하는 방안
- 신설할 규정이나 현행 규정의 경우 의사소통의 개선: 각종 규정의 구속력 확보; 관할기관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에 있어 목표와 수단을 설명하기 위한 수반 조치들
- 당해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수범자들(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의 잠재력에 관한 조사 내지 비용절감을 위하여 국가가 내놓은 각종 제안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6.2 결정된 감축목표의 달성과 통제를 위한 조치 프로그램의 작성

연방내각이 설정한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각 부처는 자신의 관할분야에서 감축을 위한 각종 조치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이 조치프로그램에는 목표달성을 위한 개별적인 간소화 조치와 그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이 포함되며 연방수상청 사무처가 지휘한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조치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전체적 조치프로그램 및 그 조치를 실천하기 위한 시간계획은 관료주의철폐 정부위원회에 제출된다.

연방수상청 사무처는 정부위원회가 구속적인 것이라고 선언한 목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이러한 감독은 개별적 조치의 내용적 이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포함한다. 관할 부처는 연방수상청 사무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행과정에서 달성된 발전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 조치의 실행을 저해하는 사정들도 보고한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관료주의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조정관과 정부위원회에 보고한다. 구속적인 감축목표가 확정되기 전에 관할 부처가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한 행정비용의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사실은 각 관할부처의 요청에 따라 추후의 감축의무에 산입한다. 이것은 연방내각의 2006년 4월 25일자 의결이후에 발효된 모든 입법계획에 적용된다.

7.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

제5장에서 서술된 현상에 관한 측정으로부터 특정한 시점에 발효되고 있는 법문서에 기초한 경제계의 정보제공비용이 도출된다. 정보제공의무의 폐지, 개선 또는 신설을 통하여 한 번에 광범위하게 조사된 이 정보제공의무는 상시적으로 변경을 겪게 된다. 행정부담의 현상과 발전에 관하여 항상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이 규칙대로 실시되어야 한다.

규칙대로 실시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측정에서 나타난다.²⁷⁾ 이와 관련하여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을 손질해야 하는 것이

27)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는 발효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현상을 측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 정보제공의무도 포함된다.

불가피하다.²⁸⁾ 현상에 관한 측정에 비하여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방법론의 본질적이 조응은 시간 변수를 조사할 경우에 행한다. 이 경우에는 기업이 아직 시간적 경비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 경비에 관한 자료는 실제의 자료조사를 통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례에서 어떠한 절차적 과정이 제공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7.1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확인하는 것은 2.1에 명시된 개념정의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국가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법률, 시행령, 행정규정)
-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추상적인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 자료나 정보의 송부와 준비는 전자적 방식 또는 문서의 방식으로 행해진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를 확대시키는 것(예를 들어 또 다른 자료내용의 보완, 보고회수의 인상)도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서와 같이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도 그 정보제공의무가 경제계, 시민 또는 행정에 대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관없이 모두 파악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범주

28) 제6장에서 언급한 절감잠재력의 추론과 그에 이어서 행하는 부담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의 규칙적 실시의 또 다른 구성요소이다.

[부록 1]

화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 행하게 되는 진행방식을 유추하면 된다(5.1절 참조).

각 관할부처는 신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조기에 연방수상청 사무처에 통지하고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를 개시한다.

7.2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비용 추산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예상되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수량적 요소뿐만 아니라 가격요소도 추산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획득한 경험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문가의 지식을 원용해야 한다.

7.2.1 수량적 요소의 추산

수량적 요소를 추산함에 있어서는 다시금 두 가지 사례를 구분할 수 있다.

1. 법률상 명시된 송부빈도와 특정한 목표그룹(기업, 시민 또는 행정)을 가지고 있는 정보제공의무
2. 개별 사례별 정보제공의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수량적 요소의 조사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수량적 요소의 조사를 위한 절차를 유추해서 실시한다. 즉, 송부의 빈도는 법률문언에서 추출할 수 있으며 관련되는 시민이나 기업의 수는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원용하여 조사한다.

예:

하나의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최소 100만유로의 수입을 획득하는 건축기업에게 매 2년마다 계속

교육조치를 위한 비용을 관할 부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식통계에 의하면 약 30,000개의 기업이 목표그룹으로 되고, 이 목표그룹은 법률에 따라 매년 0.5회의 송부빈도로써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추산된 수량적 요소는 15,000에 달한다.

개별 사례별 정보제공의무는 과생된 의무이다. 이러한 과생된 의무는 관련 기업이나 시민이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지만 그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이나 시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개별 사례별 정보제공의무는 통계를 원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는 관련 시민이나 기업의 범위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급부를 요구하는 시민이나 기업의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관련되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나 기업이 제공된 국가의 급부를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추산이 행해져야 한다(실제 이용율). 이러한 진단을 위하여 - 가능하다면 -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사례에서 도출된 경험칙을 원용해야 한다.

예:
앞에 제시된 예에서 언급된 정보제공의무는 관련 기업이 자신의 계속교육 조치를 위하여 국가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이제 유사한 조치에서 나타난 경험에 기초하여 약 75%의 기업만 이러한 지원의 가능성을 활용한다고 가정한다(나머지 25%의 기업은 계속교육조치를 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국가적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언급한 일반조건이 적용된다. 약 75%의 기업만 국가적 지원을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량적 요소는 11,250(0.75*15,000)으로 줄어들 것이다.

관할 부처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고지할 때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단위의 수와 예상된 이용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7.2.2 가격요소의 추산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현상의 측정과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용의 추산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추산을 실시할 때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시간적 경비를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필요한 시간적 가치를 추산해야 한다.

현상에 대한 측정의 결과는 이러한 추산의 기초를 형성한다. 우선 현상에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와 유사한 것이 이미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위하여 시간적 경비의 추산이 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없다면 표준화된 경험치를 원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정보제공의무를 활용한 추산

유사한 정보제공의무가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위한 이러한 측정의 결과를 추산규모로 활용할 수 있다. 단가의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인지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가격변수를 추산치로 가정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하게 유효하지 않다고 나타난 경우에는 측정된 시간에 대한 유효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유의사항: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는 다른 기업에까지 확대할 수 있거나 일정한 기업으로 국한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로 취급된다. 이러한 특별한 사례에서는 시간의 측정과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요소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예:

앞에서 언급한 계속교육조치는 최소한 1000만 유로의 수입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현상에 관하여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가격이 36.95유로라는 점이다. 이 가치는 비용산정을 위하여 차용할 수 있다.

계속교육조치는 건축업을 행하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숙식업을 행하는 기업에도 해당된다. 현상에 관하여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보제공의무가 67분의 소요시간을 양산해낸다는 점이다. 숙식업의 경우 단가는 30유로로 조사된다. 그렇다면 가격요소는 33.50유로($67/60 \times 30 = 33.50$)

- 표준화된 경험치를 통한 추산

하나의 정보제공의무의 개별적인 표준활동의 경우 소요시간을 위한 현상에 관한 측정을 통하여 경험치가 나온다. 이러한 경험치는 정보제공의무의 3가지 복잡성단계와 관련지워서 조사되고 이른바 CASH표로 작성한다. 이러한 표의 가치는 각각 당해 활동이 어느 정도로 단순/중간/복잡으로 평가되는지에 관한 표준활동의 소요시간을 위한 추산치로서 사용된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평가가 네덜란드의 경험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CASH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표 8: 네덜란드의 CASH표

연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일반적인 문제제기	단순	중간	복잡
1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업무의 허가/일반적 교육	관련되는 목표그룹이 정보제공의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가?	1	10	21
2	정보의 수령	행정기관에서 기업체로 정보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반적인 조건이 존재하는가?	1	2	3

[부록 1]

연 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일반적인 문제제기	단 순	중 간	복 잡
3	필요한 정보의 수집	어떠한 정보가 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1	6	19
4	필요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평가	당해 정보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에 족한가?	2	6	15
5	필요한 자료의 기재 또는 입력	자료들은 어떻게 입력되는가(수동/자동)?	1	5	9
6	산정 또는 추산의 실시	기업이 어떠한 산정, 평가, 계산 또는 추산을 실시해야 하는가?	2	5	12
7	결과의 출력/문서 작성	획득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0	3	5
8	결과의 통제와 필요한 수정	통제조치와 수정조치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가?	1	12	169
9	제3자로부터 정보의 수령	특정한 구입이나 외부의 정보창출이 반드시 필요한가?	2	20	100
10	협 의	기업가가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자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가?	0	10	34
11	해명, 설명	확고하게 정해진 양식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해명을 해야 하는가?	1	14	54
12	지불명령서의 기재	반드시 필요한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위하여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1	4	5
13	정보의 송부	기업체에서 행정기관으로 정보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반조건이 존재하는가?	1	1	5
14	정보의 문서화	기업체에서 자료를 계속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내용이 요구되는가?	1	2	2

출처 : Nijsen/Vellinga, A model to measur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businesses, Zoetermeer 2002 및 Bertelsmann Stiftung, Handbuch zur Messung von Bürokratiekosten, 2006년판.

소요시간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무를 표준활동들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표준활동들은 세 가지 복잡성의 단계(단순, 보통, 복잡)에 위치시킨다. 앞의 표에서 각각 해당되는 시간가치가 도출된다. 이러한 시간가치의 합계는 정보제공의무의 소요시간에 대한 추산이 된다. 표준활동에 정렬하는 것은 관할 부처가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통계청은 적절한 지원을 행한다.

예:

건축기업이 계속교육조치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표준활동들이 추산된다.

연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단순	중간	복잡
1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업무익히기/일반적 교육		10	
2	정보의 수령	1		
3	필요한 정보의 수집		6	
4	필요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평가			15
5	필요한 자료의 기재 또는 입력	1		
6	산정 또는 추산의 실시		5	
7	결과의 출력/문서작성	0		
8	결과의 통제와 필요한 수정	1		
9	제3자로부터 정보의 수령		20	
10	협의	0		
11	해명, 설명	1		
12	지불명령서의 기재			5
13	정보의 송부	1		
14	정보의 문서화	1		

이 표에 나타난 수치를 모두 합하면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추산된 소요시간은 67분에 달한다(네덜란드의 CASH표에 기초하여 산출된 것임).

비용요소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CASH표를 도움으로 추산하여 도출된 시간을 그에 상응하는 단가와 곱하면 된다. 기업이 법률상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어떠한 단가에 기초할 것인지는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인지 아니면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정보제공의무인지에 따라 다르다. 분야에 특수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평균적 임금을 고려한다. 이에 반해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평균임금을 고려한다. 이 경우 담당자의 질적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다. 연방통계청의 공식 통계는 필요한 단가를 제공한다.

예:

계속교육조치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도의 질적 수준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단가는 33유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단가는 $33/60 \times 67 = 36.85$ 유로가 된다.

시민의 정보제공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가를 조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화폐로 환산한 규모가 조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경우에는 빈도 이외에 시간 변수만이 결정적인 규모가 된다. 따라서 기업과 행정의 경우와는 달리 시민의 경우에는 (전체적) 비용부담의 감축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정보제공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의 행정활동을 위한 (전체적) 시간적 경비의 감축이 문제로 될 뿐이다.

- 전문가추산

전문가는 유사하게 존재하는 정보제공의무 또는 표준화된 경험치를 활용하여 획득한 추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전문가가 결과를 심사함으로써 방법론의 혼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방법론의 혼합은 감당능력을 높이고 일반국민의 추산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추산의 기초가 된 현존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실제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와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로써 측정결과의 전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표준화된 경험치가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만약 표준화된 경험치가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하나 또는 다수의 쟁점을 개선하거나 표준치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통하여 개별적인 표준활동의 복잡성에 관하여 추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그룹이 충분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가격요소의 추산을 완전히 위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전문가들에게는 앞에서 서술한 “보조자료”(현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목록, 표준화된 경험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진행방식이 장점을 가지는 예로는 가격요소의 민감한 추산이 외부에서 실시되어 그 결과에 대한 일반국민의 수용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전문가추산의 경우 문제로 되는 것은 문제되는 주제에 적절한 전문가나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전문가설문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종종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명하게 개념정의된 전문가그룹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주제가 매우 새로운 것이어서 그 분야에 아무런 전문가도 없을 수가 있다.

7.2.3 행정비용의 추산

7.2.1과 7.2.2에서 제시된 작업을 행하면 행정비용의 모든 변수들이 일부는 추산된 형식으로 제시되게 된다. 수량적 요소를 가격요소와 곱하게 되면 잠정적으로 수범자들이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하여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도출된다.

예:

계속교육조치를 위한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하여 11,250건의 보고가 행해진다고 가정해보자. 하나의 보고가 지니는 가격은 36.85유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행정비용은 총 414,562.50유로가 된다.

정보제공의무를 1000만 유로 이상의 수입을 획득하는 기업에 국한시킴으로써 이제 매 2년마다의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고 75%가 지원을 받는 기업은 1,500개에 불과하다. 그 전에 11,250건의 보고가 행해졌다면 이제 560건의 보고만 동일한 단가로 예상할 수 있다. 이로써 행정비용은 20,636 유로가 발생한다.²⁹⁾

정보제공의무를 숙식업까지 확대시키면 2,250건의 추가적인 보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단가는 33,50유로가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약 75,000유로가 발생한다.

7.3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제시

기업, 시민, 행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는 특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제공의무(그 필요성에 관한 이유제시도 포함한다), 정보제공의무와 잠정적으로 결부된 총비용 및 수범자의 범위는 정부의 법안에 특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를 근거지우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는 자료들을 표준비용모델 자료은행에 입력해둔다. 정보제공의무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발표된 지 2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측정을 통하여 비용 추산의 결과를 수정하고 이에 상응하게 자료은행을 업데이트시킨다.

29) 비록 이러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가 비용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합계를 해보면 행정비용의 감축이 남아있다(400,000유로 - 20,000유로).

8. 유럽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심사

8.1 새로운 유럽법과 현행 유럽법상의 정보제공 의무의 제시와 측정

관료주의의 철폐는 국내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법도 포함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의 법상황의 간소화와 규제완화를 위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제안과 관련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유럽법규정을 통한 새로운 관료주의의 양산을 방지하거나 가능한 한 적게 유지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지원한다. 이것은 사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관할부처가 현행 유럽법과 새로운 유럽법의 관료주의적 영향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료주의철폐 정부위원회는 확립된 방법론에 기초하여 현행 유럽연합의 법규정과 새로운 법규정으로부터 행정비용을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럽연합의 각종 측정방법을 국내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에서도 조정을 행한다.

새로운 유럽연합의 입법계획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심사할 의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 유럽연합의 입법절차에서 독일의 입장을 표명하는 서류와 의견서, 독일 연방의회의 유럽연합 관련사안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연방참사원의 유럽연합 관련 사안에 관한 보고를 할 때와 참가할 때 및 유럽연합 의회의 독일 의원이 보고를 할 때에는 유럽연합과 국내차원의 새로운 행정부담과 특히 정보제공의무를 가능한 한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이유설시를 지적하면서 특별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도입함으로써 유발되는 비용을 가능한 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에 기초하여 조사해야 한다(6장에 서술된 방식 참조).

[부록 1]

- 현행 유럽연합법의 새로운 규정 내지 개정은 항상 이로 인하여 유발되는 정보제공의무를 방지하고 간소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심사해야 한다.

유럽연합법을 국내법으로 이행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국내이행을 위한 법문서를 통하여 도입될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는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실시하고 정부의 법률안이나 문서에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협의를 할 때 조사된 자료를 원용할 수 있다.
- 유럽연합법상의 지침을 뛰어넘어서 국내법으로 이행할 때 추가적인 정보제공의무를 국내법으로 도입하거나 유럽연합에서 유발된 정보제공의무의 표준을 국내의 이해관계에 따라 더 높여야 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6장에 서술된 진행방식 참조).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표준비용모델에 기초한 행정비용의 확인과 측정을 위한 절차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 이사회는 회원국들의 특별한 역할을 승인하였으며, 회원국들의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유럽연합 법규정에 의하여 유발된 행정비용의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현행 유럽연합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각 법분야별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연방 각 부처가 연방수상청 사무처와 합의하여 이 입문서 제5장에 서술된 방식에 따라 국내적 행정부담에 관한 필요한 측정을 실시한다.
- 연방통계청은 특히 유럽연합 차원에서 특별한 방법론적 요구사항이 존재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함에 있어 각 부처를 지원한다.

- 특히,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유럽연합 법문서와 프로그램에 대하여 국내 행정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이와 결부된 간소화에 관한 제안을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불필요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담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유럽연합의 각종 위원회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8.2 법규정에 의하여 전제된 행정비용의 추산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법규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의 추산을 위한 지침서를 제출하였다. 이 지침서는 유럽연합에서의 입법 평가를 위한 지침서의 부록 10으로 출간되어 있다. 아래의 서술은 2006년 3월 15일자 지침서³⁰⁾로서 이 지침서에는 독일의 진행방식에 대한 가능한 영향과 관련된 표준비용모델의 실시과정에서의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서술되어 있다.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가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하는 주된 목적은 유럽연합 법규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정보제공의무의 순비용을 추산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순비용이란 “입법안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비용으로서 유럽연합이나 회원국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법문서를 통과시킬 때 누락될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정의된다.³¹⁾ 측정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는 개인 가계의 비용, 공공부문에서의 비용 및 공공기관에서의 비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에 시민을 시험목적으로 측정에 어느 정도로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30) EU Kommission: Abschätzung der durch Rechtsvorschriften bedingten Verwaltungskosten, Anhang 10 des Leitfadens zur Folgeabschätzung, 15 März 2006 참조.

31) EU Kommission: Abschätzung der durch Rechtsvorschriften bedingten Verwaltungskosten, Anhang 10 des Leitfadens zur Folgeabschätzung, 15 März 2006, 2쪽 참조.

[부록 1]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행정비용을 정의할 경우에는 -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정보제공의무에 기초한 행정비용에 초점을 설정한다. 여기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의도적으로 개념의 해석을 폭넓게 행하여 예컨대 제품의 표시도 포함시키고 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의무의 종류들이 구분된다.

- 특정한 활동에 대한 신고
- 정기적으로 제출할 보고
- 제3자를 위한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 제3자를 위한 표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정보제공
- 개별적 허가나 면제에 대한 신청
- 모두에게 유효한 허가나 면제에 대한 신청
- 등록
- 제품이나 절차의 인증
- 감독이나 통제를 위한 방문
- 감사활동시 협력
- 보조금 또는 지원에 대한 신청
- 기타

이 목록은 독일에서도 정보제공의무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5.1.2절 참조).

【별첨 I】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전자적 입력장치의 특징들

분야의 명칭	서 술	특 징	의 무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근거			
규범의 공식적 축약	예컨대 민법전의 경우 BGB		예
분야번호/유럽 연합 편철번호	출처증명 A의 분야번호(FNA연방법), 예컨대 가격표시 및 자격 조항법: 720-17; 유럽 연합규범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편철번호에 따른다		예
규범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 시행령 · 행정규정 · 유럽연합 법규정 	예
규범이 아무런 정보 제공의무를 담고있지 않다	정보제공의무를 가지 않은 규범은 이러한 분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입법단계	법률을 통과시킨 규제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 유럽연합/연방 · 유럽연합 	예
정보제공의무			
표 시	정보제공의무의 확인표시는 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시 또는 송부시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예

[부록 1]

분야의 명칭	서술	특징	의무
명칭	법률상의 정보제공의무의 서술		예
근거조항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는 규범의 정확한 조항		예
타 규범에의 지시	근거조항이 타 규범 또는 법규정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		예
(발효된 후) 2년의 기간 도달	정보제공의무가 발효된지 2년이 경과하였는가?		예
정보제공의무의 발효시기	정보제공의무가 발효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그 정보제공의무는 언제 발효되었는가?		
관할 부처			예
서술			
수범자	대상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계 · 시민 · 행정 	예
최종수범자	누가 정보의 최종적인 수령자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계 · 시민 · 행정 	예
제공된 정보의 수령자	정보는 직접 행정기관에 송부될 수 있거나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은 제3자에게 송부될 수 있다(예컨대 국가기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 제3자 	예

분야의 명칭	서 술	특 징	의 무
필수비용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인 경우에는 여기서 그것에 관하여 서술한다		
정보제공의무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활동의 신고 · 정기적으로 제출할 보고 · 제3자를 위한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 제3자를 위한 표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정보제공 · 개별적 허가나 면제에 대한 신청 · 모두에게 유효한 허가나 면제에 대한 신청 · 등록 · 제품이나 절차의 인증 · 감독이나 통제를 위한 방문 · 감사활동시 협력 · 보조금 또는 지원에 대한 신청 · 기타 	예
조사의 유형	수범자가 무엇을 작성하거나 서술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보고 · 등록 · 통보 · 설문지 · 문서작성 	예

[부록 1]

분야의 명칭	서 술	특 징	의 무
		· 그밖의 조사유형	
온라인 송부 이미 가능하다	수범자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령자에게 송부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예
온라인 송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 예 · 아니오	예
필요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면서 국가기관에게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는 문서	· 예 · 아니오	예
정보제공의무의 정책분야	법률을 관할하는 각 부처에 상응하게		예
정보의 이전	정보는 직접적으로 수범자에게서 수령자에게로 송부될 수 있거나 수범자가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3자를 경유하여 송부될 수 있다(예: 고용주가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교부하는 급여내역서)	· 직접 · 간접	예
정보의 송부	어느 정도까지 정보가 수범자에게서 수령자에게 직접적으로 송부되거나 규범자가 이 정보를 보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송	· 일반적 · 문의가 있을 경우 · 일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의가 있을 경우에도	예

연방차원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된 행정부담의 조사와 경감을 위한 연방정부 입문서

분야의 명칭	서 술	특 징	의 무
	부해야 하는가		
정보제공의무의 복잡성	수범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에 관한 추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덜 복잡 · 중간정도로 복잡 · 많이 복잡 	예
정보제공의무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개정이 계획되어 있는가		예
개정의 시점	개정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언제 동안 이것이 계획되어 있는가?		
범 위			
년간 사례수	사례수는 1년에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하여 유발된 수범자에서 최종수범자까지의 정보 이전의 수에 상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 주기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송부건수 	아니오
사례수; 출처	추산의 자료에 관한 내용: 사례수에 관한 추산이 제시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하는가		아니오
년간 주기성	법률상 명시된 연간 신고회수		아니오
특별한 유의사항	시간측정시 유의해야 할 정보제공의무의 특수성을 여기서 기재할 수 있다		아니오
기업의 수	정보제공의무를 (잠재		아니오

[부록 1]

분야의 명칭	서 술	특 징	의 무
	적으로) 부담하는 기 업의 수		
기업의 수; 출처	추산의 출처에 대한 내용; 기업의 수에 대 한 추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밝 혀야 하는가		아니오
관련 경제분야	정보제공의무를 부담 하는 경제분야	NACE 2003년판 경제분 류의 기업편	아니오
자료의 내용			
어떠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요구되는가(소득, 근로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근로자 · 수입 · 사회보장급부납부금 · 근로시간 · 기타 	

【별첨 Ⅱ】 연방법의 내용에 따른 분류(발췌)

- 1 국가법 및 헌법
- 2 행정
- 3 司法
- 4 민법 및 형법
 - 40 민법 - 민법전 및 부수법령
 - 41 상법
 - 42 영업의 법적 보호
 - 43 공정거래법규정
 - 44 저작권법
 - 45 형법
- 5 국방
- 6 금융제도
 - 60 연방, 주 및 자치단체의 금융행정
 - 61 조세 및 기타 부과금
 - 62 부채변제, 전쟁피해
 - 63 연방예산
 - 64 연방재산
 - 65 연방의 채무
 - 66 연방의 담보
 - 67 화폐제도
- 7 경제
 - 70 경제법 일반
 - 71 영업법
 - 72 가격법

[부록 1]

- 74 대외무역법
- 75 탄광, 핵에너지, 전기, 가스, 수자원경제, 난방 등
- 76 통화, 신용 및 보험제도
- 77 기타 경제법
- 78 농업 및 식품경제
- 79 산림경제, 자연보호, 사냥 및 어업
- 8 노동법, 사회보장, 전쟁피해자원호, 장애인의 보호**
 - 80 노동법 및 근로보호
 - 81 근로지원
 - 82 사회보험
 - 83 전쟁피해자원호
 - 84 귀향법(Heinkehrrecht)
 - 85 자녀수당 및 교육수당
 - 86 사회법전
 - 87 장애인의 보호
 - 88 조정하는 법규정들
- 9 우편 및 통신제도, 교통제도, 연방해운**

【별첨 Ⅲ】 간소화조치의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발췌)

	조치가 이미 도입됨	이행 준비중	이행이 불가능함
1. 법간소화			
정보제공의무의 폐지			
법규정에 관련되는 기업 내지 전문분야의 수의 감축, 중소기업의 경우 제외시키는 방안			
정보의 송부빈도의 감축; 개별적인 정보요구사항 들간의 시간적 간격의 연장(정기적인 송부를 대 체하는 특별한 요구시의 송부; 매달 송부를 대체 하는 연간 1/4분기별 송부; 연간 1/4분기별 송부 를 대체하는 1/2분기별 송부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는 다른 기관에 현존하 는 자료(예: 행정자료의 이용)를 활용해서도 일 부 또는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다			
2. 행정절차의 간소화			
중복심사의 확인과 폐지: 정보가 이미 다른 국가 기관에 존재하고 있는가? 정보를 공통으로 이용 할 수 있는가?			
양식의 간소화: 양식을 줄이거나 문의사항을 간 소화하는 것			
3. 전자정부			
인터넷을 통하여 양식을 입수할 수 있다			

[부록 1]

	조치가 이미 도입됨	이행을 준비중	이행이 불가능함
자료들은 이미 국가기관을 통하여 최선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보는 전자적으로 국가기관에 송부될 수 있다			
4. 의사소통의 개선			
규정의 이해가능성의 확보			
신규정의 도입시 그에 수반하여 관할 국가기관에 의한 보조자료의 제공			

[부록 Ⅱ]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

LEITFADEN
FÜR DIE EX-ANTE-ABSCHÄTZUNG DER
BÜROKRATIEKOSTEN NACH DEM
STANDARDKOSTEN-MODELL(SKM)

제1차 개정판
2008. 3.

베를린
(Berlin)

목 차

1. 배경과 서문	239
2.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과 서술	240
3. 부 록	264
3.1 연방내무부의 통지문(생략)	264
3.2 간이절차와 비용등급	264
3.3 시간가치표	265
3.4 연방통계청의 요금표	267
3.4.1 요금표에 관한 방법론적 설명	267
3.4.2 사전적 추산을 위한 연방통계청의 요금표	268
3.4.3 질적 수준에 따른 행정활동	269
3.5 행정비용의 산정과 서술을 위한 Excel-Tool	272
3.5.1 빈칸의 자료용지	272
3.5.2 투자법안을 예로 본 Excel-Tool(발취)	273

1. 배경과 서문

연방정부공통업무규정(GGO)에 따라 2006년 12월 1일부터 연방정부는 입법평가(GFA)의 일환으로서 정보제공의무에 의한 경제계, 시민, 행정에 대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사전평가하고 그것을 입법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표명할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NKR)는 그 법안에 대하여 연방정부공통업무규정의 요구가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지를 조사한다(독일연방내무부의 서한 부록 3.1 참조).

이 지침서는 2006년 12월 5일에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 “관료제도 철폐와 법규범통제를 위한 사무국”이 각 부처와 밀접한 연대를 취하면서 개최된 워크숍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 지침서는 연방 각 부처에서 입법에 관계하는 담당자를 위한 업무지침서이며, 연방정부공통업무규정에 따라 명시되어 있는 입법과정에서의 지침을 이미 법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고려하기 위한 각종 경험과 제안을 담고 있다.

평가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사항이다.

1. 정보제공의무에 의하여 부담이 예측되는 행정비용은 양적으로 산출되고 포괄적으로 서술되고 있는가?
2. 행정비용감축을 유발시키는 대안을 충분히 모색하였는가?
3. 의도된 입법목표와 관련하여 부담이 가장 적은 대안이 선택되었는가?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와 사전에 비공식적인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안된 사전적 추산을 필요이상으로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가능한 한 통일된 방법으로 사전적 추산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제6단계에 관한 서

[부록 II]

술 참조). 사전적 추산을 구성하고 실시할 경우에는 각 부처의 입법관련 담당자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지정하는 사전적 추산을 위한 ‘양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추후에 행하게 될 현상태의 측정을 위하여 사전적 추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부서의 검토사항을 순번으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침서는 그 사이에 새로운 신정보가 입수된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2.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과 서술

이미 실시한 바 있는 사례연구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유효하다.

사전적 조사의 7단계 과정

제1단계 :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제2단계 : 대안에 대한 심사와 정보제공의무의 간소화가능성에 관한 심사

제3단계 : 가격요소의 추산

제4단계 : 수량적 요소의 추산

제5단계 : 전체결과(행정비용)의 조사

제6단계 : 전문위원초안에서의 제시와 서술

제7단계 : 자료은행에의 입력(규정발효 후)

제1단계 :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우선 구체적 입법계획이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는지 어떠한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이 하나의 정보제공의무뿐만 아니라 다수의 정보제공의무도 포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현상에 관한 측정을 할 경우와는 달리 경제계의 정보제공의무뿐만 아니라 시민과 행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시민이나 행정의 경우에는 아직 상세한 절차가 없고 경제계에 대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절차와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2006년 11월 23일자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요구로서 시민과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지시하기로만 결의하였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경비의 수량화는 유사한 비용을 가진 적절한 추산이 가능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정보제공의무의 확인하기 위한 기초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 연방정부의 방법론입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정의이다.

“정보제공의무라 함은 법률, 시행령, 규약 또는 행정규정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자료나 기타 정보를 행정기관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조달, 보유 또는 전달할 의무를 말한다”.¹⁾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경제계, 시민, 행정에 의한 모든 신청서, 신고양식, 통계 및 입증의무와 자료작성의무가 포함된다”.²⁾

특정한 정보제공의무가 존재하는 지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우선 각 부처의 담당자가 참가해야 한다.

사전적 조사에서도 다음의 세 가지 정보제공의무는 구별하여 조사한다.

a) 새로운 정보제공의무

이 경우에는 정부의 전문위원 초안에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가 신설된 것이다.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로부터 기본적으로는 부담이 발생한다.

1)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법 제2조 제1항 2문

2) Handbuch der Bundesregierung zur Ermittlung und Reduzierung der durch bundesstaatliche Informationspflichten verursachten Bürokratielasten, 7쪽 이하.

[부록 II]

b)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개정

이 경우에는 정부의 전문위원 초안이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 또는 정보제공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비용변수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부담가중 뿐만 아니라 부담감면이 결부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정보제공의무의 비용도 고찰되어야 한다.

c)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폐지

이 경우에는 정부의 전문위원초안이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보제공의무의 폐지는 일반적으로 오로지 부담감면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비용을 고려하는 것만 필요하다.

입법계획과의 관련에서 이미 현행법상 존재하는 정보제공의무와 IDEV-자료은행에서 조사되고 측정된 정보제공의무가 간소화되는 경우(즉,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가 부담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경우) 연방통계청은 그로 인하여 유발되는 감축효과를 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할 부처는 제2단계부터 제5단계까지 절차를 생략하고 제6단계로 바로 진행하면 된다.

각 관할부처는 감축효과가 수치화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후의 감축의무를 이행할 때 성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7단계 참조).

제2단계 : 대안에 대한 심사와 간소화가능성에 대한 심사

사전적 심사의 목표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나 개정된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유발되는 비용부담을 -현실화할 수 있고 타당한 한도에서- 처음부터 가능한 한 적게 유지하는 것이다.

- a. 따라서 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와 무엇 때문에 그 정보제공의무가 대안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대체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 b. 제1단계에서 확인된 정보제공의무의 각각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대안적으로 구성하거나 정보제공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아래의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 중소기업을 위한 예외를 취할 수 있는가?
- 주기성(빈도)를 줄일 수 있는가(4.1 단계 참조)?
- 요구되는 개별적인 자료의 내용을 포기할 수 있는가(3.1 단계 참조)?
- 자료가 다른 기관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입수할 수 있는가?
- 이미 현존하는 정보제공의무의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해 정보제공의무를 현존하는 정보제공의무에 통합시킬 수는 없는가?
- 부담을 IT에 의한 해결을 통하여 줄일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보충적인 자료로는 방법론입문서상의 부담감면을 추론하기 위한 서술내용(방법론입문서 참조)과 간소화조치의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방법론입문서 부록 III)이 있다.

대안에 대한 심사는 정보제공의무를 가능한 한 쉽고 합리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만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서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안에 대한 심사는 추후의 단계에서도 - 다만 제5단계 이전의 단계에서 - 실시될 수 있다.

제3단계 : 가격요소의 추산

제3단계에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가격이 결정된다. 주로 이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정보제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내용과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표준활동)이다. 그 이후에 개별적인 표준활동의 가격은 시간적 경비, 임금(단가) 및 그 밖의 비용을 조사함으로써 결정된다.

$$\text{가격(유로)} = \text{시간(시간)} \times \text{요금(유로/시간)} + \text{기타 비용(유로)}$$

개별적인 표준활동의 모든 가격을 합산함으로써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이 결정된다.

현상태의 측정과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비용의 추산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과 결부된 행정비용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비록 이러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가 유럽 연합법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일정한 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필요한 행정비용을 추산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에 관한 측정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부처가 우선 방법론입문서(42쪽 참조)상의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복잡한 정보제공의무를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추산해야 한다. 관할부처의 담당자가 “복잡한 정보제공의무”를 새로이 창설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연방통계청으로 하여금 추산을 모두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방통계청이 추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 단계에서 바로 진행하면 된다.

덜 복잡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연방 각 부처는 가격요소를 추산한다. 이 경우 현존하는 조사결과들, 연구결과들 또는 현존하는 측정결과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독자적인 경험치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전문가 및 연방통계청에게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례수가 매년 10,000건을 초과하지 않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가 적용된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간이절차에서 부담을 추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는 각 유형(예: 허가, 인증, 표시의무)마다 비용등급을 매긴다(부록 3.2 “간이절차와 비용등급”). 이어서 부담가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례수와 비용등급의 비용요소를 곱하면 된다. 따라서 우선 항상 사례수를 제일 먼저 조사할 것을 추천한다(제4단계 이하의 서술 참조).

정보제공의무를 간이절차에 따라 추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이어 제6단계로 넘어간다.

그 후 개별적인 가격변수와 사전적 추산의 범위에서 가격변수를 고려한 것을 설명한다.

제3.1단계 : 자료의 내용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우선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내용이 준비되거나 송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문자 그대로 보면 자료의 내용이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개별 정보를 포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양식의 각각의 분야가 독자적인 자료내용이 된다. 그러나 사전적 절차의 단계에서는 이런 식의 매우 상세한 내용은 합목적적이지 않다. 오히려 금액상의 규모가 상세화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개별정보들을 의미있는 단위로 통합시켜야 한다.

예 1 : “승인절차”

“규제된 치료업의 개업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의 내용이 요구된다.

- 신청서
- 국적증명서
- 직업자격인정서
- 합법적인 개업에 관한 증명서

예 2 : “공적기록부의 기재”

“공적기록부의 기재”라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신원관련 증명서, 도착, 출발 등의 최소사항이 요구된다.

사전적 추산의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모든 개별자료들이 각각의 자료 내용으로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적기록부는 통일적으로 고찰되고 공적기록부를 1회 기재할 때 어떠한 시간적 경비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해보아야 한다.

특히, 광범위한 양식이나 자료의 내용의 경우에는 상호 분리된 고찰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경험에 의하면 - 특히 재정분야와 사회보험분야에서 - 하나의 양식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은 보다 많은 비용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는 간이화의 잠재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서라도 내용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자료내용의 분할

다수의 사례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군이 나타난다. 예컨대, 일부 기업은 5건의 자료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다른 기업은 10건의 자료내용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상이한 부분이 있다.

다양한 사례상황으로부터 한편으로는 다양한 행정비용이 도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용빈도가 매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보면 전체적 고찰에 관련되는 사례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3.2단계 : 표준활동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추산할 수 있기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는 예컨대 일정한 기업에서 진행과정을 분명하게 지켜보면서 이러한 진행과정이 개별적으로 표준화된 작업단계 별로(표준활동) 분류해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표준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³⁾

연 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설 명
I	정보제공의무의 업무습득	정보제공의무가 정기적으로 변경되거나 가끔씩 적용되는 관련성
II	자료의 수집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III	양식의 작성, 기입, 표시	예컨대 신청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IV	산정의 실시	어떠한 산정, 평가, 계산이 실시되어야 하는가?
V	자료의 심사 및 입력	발생할 수 있는 감독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VI	문제점 수정	발생할 수 있는 수정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VII	자료의 준비	자료의 준비에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VIII	자료의 송부 및 공개	자료송부 또는 자료나 정보의 공개로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3) 네덜란드에서와는 달리 독일의 측정절차에서는 14개의 표준활동이 아니라 16개의 표준활동을 취하고 있다.

[부록 II]

연 번	일반적인 표준활동	설 명
IX	내부 회의	필요한 내부회의를 통하여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	외부전문가 회의	필요한 외부전문가회의(예: 세무사와의 회의)를 통하여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I	지불명령서의 완료	예컨대 송금자가 송금서류를 작성하므로써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II	복사, 문서정리, 분산	그 밖에 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내용
XIII	공공기관에 의한 심사	예컨대 경영평가사에 의하여 유발된 내부적 비용
XIV	공적인 심사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할 각종 수정	자료의 수정, 추가적인 정보준비
XV	관할 기관과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보수집	추가적인 정보준비를 위한 비용
XVI	계속교육 및 연수에의 참여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이 우선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관련된다

이 일반적인 표준절차는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제공의무에 적용할 수 있고 특별한 표준절차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일반적인 표준절차는 산정담당자에게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제공의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제기와 단서를 제공해준다. 과제 로 되는 것은 일반적인 표준절차를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표준절차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관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실무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회보험사무소에 매월 신고가 되는 경우 기업의 담당자는 정보제공의무의 업무익히기를 할 필요가 없다. 기업체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업무를 정형화된 업무로서 이미 숙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산정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활동은 그에 상응하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절차로부터 특별한 시간적 비용이 도출되지 않는다.
3. 고찰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행위방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예컨대 벨기에의 “암소보조금의 신청절차”의 경우 그 특별한 절차를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의 내용	표준활동
신청	II. 정보수집
	IV. 신청하는 가축수의 결정
	III. 신청양식/동봉물의 기입
소의 신분증명서	XI. 소의 신분증명서 복사/신청서류의 제출

암소보조금의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서와 소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4개의 활동은 신청절차의 통상적인 효율성을 고려할 때 준수할 수 있는 특별한 표준절차가 된다.

위의 예는 일반적인 표준절차에서 제시된 모든 활동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정보제공의무의

업무습득(일반적인 표준활동 I)이 생략되어 있으며 외부전문가와의 특별한 협의비용(일반적인 표준활동 X)이 생략되어 있다.

나아가 “각각의 정보제공의무를 언어로 번역”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절차는 “신청하는 가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아무런 분야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표준활동 IV의 “산정의 실시”가 충족된다.

제3.3단계 : 시간적 경비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한 비용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으로는 표준활동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적 경비이다. 즉, 표준활동을 확인한 이후에는,

- 양식의 기재,
- 문서에 의한 통지문의 작성,
-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의 복사

등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의 정보제공비용의 측정과는 달리 사전적 추산의 과정에서는 기업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경험치를 토대로 실용적인 추산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현행법상의 조사결과의 원용

이미 측정된 정보제공의무와 유사한 정보제공의무인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이미 측정된 정보제공의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시간가치표의 적용

유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와 복사 또는 정보의 송부 등과 같은 일반적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른바 시간가치표⁴⁾(Zwitwerttabelle)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부록 3.3 참조)

시간가치표는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표준활동에 따라서 분단위의 수치를 간단·중간·복잡의 세 가지로 나눈다. 시간가치표에서 파악되는 모든 가치는 지로이후의 다양한 고려를 위한 최초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시간가치표에 따라 조사된 시간가치는 항상 전문가의 관점에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평가를 도움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가치표에 따라 조사된 가치가 어떻게 보더라도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었다는 충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보다 현실에 가까운” 가치를 추산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3. 조사자의 평가

시간가치표로부터 납득할 만한 시간가치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가 독자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제3.4단계 : 요금

표준절차와 시간적 경비가 결정된 이후에는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노동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연방통계청의 표준요금표를 그 기초로 삼는다(아래의 부록 3.4 참조). 표준요금표는 경제분야와 질적 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분야에 특수한 요금과 전분야에 적용되는 요금

정보제공의무가 오로지 특수한 경제분야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분야에 특수한 요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예컨대, 금융서비스에 대한 청구

4) 시간가치표를 전개하기 위한 기초는 현행법상 경제계에 부과된 정보제공의무를 측정할 결과이다. 네덜란드에서와는 달리 독일에서의 측정절차는 14단계의 표준활동이 아니라 16단계의 표준활동에서 출발하고 있다.

[부록 Ⅱ]

서납품의무는 “범주-J : 신용판매와 보험업”에만 적용된다.

전분야에 적용되는 요금은 예컨대 일반적인 소득세에서와 같이 특수한 경제분야가 문제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질적 수준(업무처리 능력)

또한 질적 수준도 간단, 중간, 고도의 질적 수준이라는 표준요금표로 구분된다.

- 간단한 질적 수준이란 단순사무를 말한다.
- 중간정도의 질적 수준이란 회계부서의 행정업무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말한다.
- 고도의 질적 수준이란 간부급 행정직원의 행정업무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말한다.

특별요금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표준활동은 종종 기업 자체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세무사 등과 같은 외부의 전문가에 의하여 실행된다. 이러한 외부의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요금이 적용된다. 사전적 추산의 경우 1인의 세무상담사의 별도의 표준요금은 시간당 65유로로 가정할 수 있다.⁵⁾

그 뿐만 아니라 연방통계청은 임금과 급여에 관한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개별적 사례에서 요금표를 뛰어넘는 비용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방통

5) 이 요금은 세무상담가, 세무대리인, 세무상담회사의 요금규정의 확정에 관한 제13조의 시간적 요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치(각 30분당 19유로부터 46유로까지)의 중간치를 의미한다. 세무상담가의 요금은 각각의 활동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매우 특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세무상담가비용규정 제23조 참조) 세무상담가의 요금은 그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상담가의 특별한 요금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방통계청에 문의(연락방법에 관해서는 부록 3 참조)하여 관련 자료를 받으면 된다.

계청에 신청하여 이에 상응하는 개별적인 평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시민의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시간적 경비는 화폐적 단위의 금액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비용은 오로지 시간으로 기재한다.

제3.5단계 : 추가비용의 고려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비 이외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속하는 비용으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다.

- 정보제공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 정보를 송부하기 위한 우편비용
- 복사비용
- 사진비용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구입비용이 고려되지만, 이 경우 구입비용은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한 구입비용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문서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정보제공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취득한 서비스로 발생한 요금이나 보수로서 다른 어느 누구도 대리할 수 없는 것(예, 건축가가 작성한 설계도)과 행정에서 발생한 경비에 대한 비용으로서 그것이 정보제공의무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법안의 표제부 E란에 기재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요금과 보수가 구체적인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법안의 표제부 F란에 기재한다.

제4단계 : 수량적 요소의 추산

이 단계에서는 정보제공의무가 연간 적용되는 수량적 요소를 결정한다. 수량적 요소는 해당기업을 사례수(건수)로 나눈 수치와 주기성을 곱함으로써 도출된다.

$$\text{수량} = \text{주기성} \times \text{건수/해당기업}$$

제4.1단계 : 주기성(Periodizität)

주기성은 연간 어느 정도의 정보제공의무가 수범자인 기업에게 적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으로는 사례별 정보제공의무와 법률상 명시된 송부의 빈도이다.

고용자가 매월 근로자의 소득을 사회보험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면 그 주기성은 12이다. 정보제공의무가 매회 5년마다 적용된다면 그 주기성은 0.2가 된다.

사례별 정보제공의무인 경우에는 연간 건수를 해당기업으로 나누어서 추산한다.

$$\text{수량} = \text{사례수(건수)/해당 기업}$$

제4.2단계 : 건수/해당 기업

수량적 요소의 두 번째 구성부분은 사례수(건수)를 해당 기업으로 나누는 것이다. 수량적 요소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표준활동들이 개별 사례에서 상이한 빈도를 가질 수 있다.

사례

고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에 관하여 사회보험사무소에 매월 1회 송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각각의 고용자마다 특정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사례수).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송부는 기업의 모든 고용자를 통틀어서 한 번에 통합된 형식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분산”이라는 활동의 경우에는 송부받을 기관이나 해당 기업의 수가 확정되어야 한다.

수량변수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출처

수량적 요소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정보는 다양한 기관에 존재한다. 예컨대 연방, 주 및 자치단체의 행정기관(예: 연방통계청, 연방운수청 등과 같은 기관, 연방노동청과 연방행정청), 각종 단체, 상공회의소, 수공업자연협회, 호적관련기구 및 연구소 등이 있다.

자료나 통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부분(제3.1단계 참조)마다 수량적 요소를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추산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부처는 일반적 추산을 어림잡아서 실시해야 하며 독자적인 경험치와 건전한 이성에 따라서 최소의 수치들을 산정단계로 포함시켜서 논의에 부쳐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최초의 수치는 그 이후의 입법절차에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기타 관할 부처 및 관련 경제참가자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사무처리 담당자는 가능한 한 자신이 수행한 일반적인 추산의 근거 등에 관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해야 할 것이다.

관련되는 기업의 범위가 넓고 전체규모에 관한 불안정성이 클 경우에는 연방통계청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제5단계 : 전체결과의 조사

앞의 각각의 단계에서 진행된 작업에 기초하여 행정비용의 모든 변수들이 적어도 일반적으로 추산된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수량적 요소와 가격요소를 곱하게 되면 수범자 전체(기업, 시민, 행정)에 대한 잠정적인 행정비용이 도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밖의 비용들도(제3.5 단계 참조) 고려해야 한다.

$$\text{행정비용(유로)} = \text{가격(유로)} \times \text{수량}$$

앞에서 언급한 벨기에의 “암소보조금의 신청절차”를 예로 들어 도출한 전체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록 II]

자료의 내용	표준활동	건수/신청	주기성	시간 (분으로 환산)	임금 (근로비용)	행정 비용 (유로)
신청	II. 정보의 수집	10,000	x 1	x 30/60	x 13.80	= 75,900
	IV. 신청하는 가족수의 결정 및 가족의 선별	11,000	x 1	x 65/60	x 13.80	= 164,450
	III. 신청양식/동봉물의 기입	11,000	x 1	x 56.50/60	x 13.80	= 142,945
증명서	XII. 소의 신분 증명서 복사	66,000	x 1	x 5/60	x 13.80	= 75,900
						459.195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매년 약 11,000건에 해당하는 암소보조금이 신청된다는 점이다. II., III., IV., XII의 활동은 1건의 신청시마다 1번 수행되는데, 여기서 XII의 경우에는 표준활동이 각 신청마다 평균 6개의 신분증명서를 복사하고 1개의 신분증명서를 복사할 때 각 5분이 소요된다고 가정되었다.

나아가 개별적인 활동마다 조사된 시간변수가 분명히 나타난다. 요금은 부록 3.4에 나타나있는 “농업과 산림업” 경제단위에 관한 표에서도 도출하였으며, 질적 수준은 ‘단순’으로 가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절차로 인하여 매년 459.195유로의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제6단계 : 전문위원초안상의 행정비용의 서술

연방정부공통업무규정의 부록 5에 따라서 법률안의 표제부 F에서는 기업, 시민,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할 것인지, 간이화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를 기재한다.

또한 연방정부공통업무규정 제44조에 따라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비용을 입법이유에서 서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초안에서는 조사단계 1부터 5까지 수행함으로써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해서 서술해야 한다. 이 경우 핵심이 되는 것은 앞의 서문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을 서술해야 한다.

제6.1단계 : 법안 표제부상의 서술

법률안의 표제부는 - 연방정부공동업무규정에 따라서 - 일반적으로 1면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보면 “F. 행정비용”란에서는 사전적 추산의 핵심적 결과를 서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제부에서 답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경제계에 대한 행정비용

- 얼마나 많은 정보제공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거나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는가?(각각의 수치의 기재)
- 사전적 추산에 의하여 예상할 수 있는 순부담가중적 행정비용 또는 순부담감감적 행정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표제부에서는 모든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총잔고만 표시하면 된다.

시민에 대한 행정비용

- 얼마나 많은 정보제공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거나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는가?(각각의 수치의 기재)
- 아직 흠결되어 있는 방법론적인 기초를 고려해볼 때 - 비용의 적절한 추산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서술을 해야 할 것이다.

행정에 대한 행정비용

- 얼마나 많은 정보제공의무가 새롭게 신설되었거나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는가?(각각의 수치의 기재)

[부록 II]

- 아직 흠결되어 있는 방법론적인 기초를 고려해볼 때 - 비용의 적절한 추산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서술을 해야 할 것이다.

표제부에서 행정비용을 서술함에 있어 귀감이 될 수 있는 서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법률상 정보제공의무인 행정비용을 실감할 수 있도록 감축하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여를 한다.

a) 경제계의 행정비용

이 법률안은 3개의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4개의 정보제공의무가 변경된다.

사전적 추산을 실시한 결과 이 법률안으로 인하여 총 1000만 유로의 순부담경감을 예상할 수 있다.

b) 시민에 대한 행정비용

시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신설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c) 행정에 대한 행정비용

이 법률안은 행정에 대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다”.

제6.2단계 : 법안 입법이유서상의 서술

법률안의 표제부와는 달리 입법이유에서는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언급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비용을 담고 있다.

행정비용의 서술과 산정을 위한 업무보조자료로는 각 부처가 복잡한 서술에서 활용할 수 있는 Excel틀이 개발되어 있다(부록 3.5 참조). 그러나 이 Excel틀의 이용이 텍스트에 의한 상세한 설명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Excel틀은 www.circa.bund.de를 통하거나 관할 부처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입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요구사항

- 분리된 절

서술은 일반적인 입법이유란의 일부로서 각각 분리된 절에서 행한다.

- 요약된 서론

입법이유란에서 행정비용의 서술은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이 과정에서 법률안의 전체적인 효과에 관하여 요약한다.

정보제공의무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표에 이바지하고(예: 보조금의 신청, 예외적 승인의 공포 등), 정보제공의무와 결부된 부담들이 이러한 지원이라는 목표와 비교해볼 때 무시해도좋은 정도로 적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전체적 효과를 서술할 때 부각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

- 모든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투명성

행정비용에 관한 바람직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이유란에서 모든 새롭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된 정보제공의무를 각각 분리하여 언급해야 한다.

개별적인 정보제공의무의 서술

입법이유란에서 행정비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 정보제공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조문의 열거
- 정보제공의무의 핵심적인 가격변수와 수량적 변수에 관한 간략한 서술(제3단계와 제5단계 참조)
- 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격변수나 수량 변수에 미치는 본질적인 영향에 관하여 기재해야 한다.

[부록 II]

-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순행정비용, 즉 새로운 부담가장과 부담감경간의 차액을 서술해야 한다.
- 여러 가지 입법대안과 그 중 특정 대안을 결정한 것에 대한 간략한 서술

이에 관한 문장구성의 예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조에 의하면 기업은 매월 관할 기관에게에 관하여 통지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정보제공의무는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비용의 사저전적 추산은 20,000건의 통지라는 빈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시간적 경비는 총 2시간 달하고 그 임금은 시간당 28.50유로가 된다. 이로부터 총 320만 유로의 비용이 발생한다.
현행 규정 제??조에 비하여 100만 유로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하라는 추가적인 요구로부터 유발되는 것이다.
경제계에 보다 적은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정대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2개월 단위의 통지는 비용을 보다 더 적게 유발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 정보제공의무의 경우 (통합화된) 서술방식

법률안이 다수의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통합화된 서술을 권장한다. 이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보제공의무, 변경된 정보제공의무, 폐지된 정보제공의무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른 한편, 정보제공의무들이 유사한 경우에는 공동점에 관해서는 통합하여 서술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전자적 과세신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초안(ELENA)을 예로 들어 설명할 것이다.

전자적 과세신고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초안(ELENA)의 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한편으로는 행정비용에 유사한 효과를 미치는 다수의

정보제공의무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 초안은 새로운 정보 제공의무 뿐만 아니라 변경된 정보제공의무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이 법률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통합화된 서술을 권장한 바 있다.

경제계의 행정비용의 서술

설 명

“경제계의 행정비용”

이 법률안은 약 2억5000만 유로의 총부담 효과를 가지고 경제계의 행정부담을 감축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여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현행법상의 정보제공의무들이 변경되고.....경제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들이 신설된다.

a) 변경된 정보제공의무들의 행정비용
 현행법상 - 특히 사회법전에 - 이미 존재하는 17개의 정보제공의무를 변경함으로써 2억8800만 유로의 총부담이 유발된다.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의무들이 변경된다.

- 사회법전 제2권 제57조에 따른 고용주정보
- 사회법전 제2권 제58조에 따른 소득증명서
-

근로증명서의 행정비용:
 지금까지의 법상황에 의하면 고용주가 근로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사회법전 제3권 제312조) 11.52유로의 비용이 소요된다. 매년 약 9,790,000건의 근로증명서가 발급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국민경제적 부담을 보면

경제계의 행정비용을 **요약할 것**, 특히 순부담경감과 새로운 부담가중의 차이를 요약할 것

순부담경감에 관한 요약할 것

변경된 규정내용을 조문별로 열거할 것

근로증명서를 예로 본 지금까지의 비용에 관해 간략하게 서술할 것

경제계의 행정비용의 서술

설 명

이러한 근로증명서만 하더라도 112,780,800유로에 달한다.

모든 정보제공비용에 대한 전용:

앞에서 언급한 모든 정보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현재 매년 약 2500만건의 각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러한 각종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증명서의 발급비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의 부담은 총 2억8800만 유로에 달한다.

이 법률안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ELENA 절차가 적용된다. ELENA 절차의 적용으로 기업에서 22개의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0으로 감축된다. 따라서 정보제공의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억8800만 유로의 순부담감경의 효과가 나온다.

b) 새로운 정보제공의무의 행정비용

이 법률안에서는 경제계에 대한 5개의 새로운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유발되는 행정비용은 3800만 유로로 추산된다.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의무가 신설된다.

- 제16조에 따른 자료의 송부
-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월 1회 중앙입력처에 자료를 송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근로증명서 발급이라는 1건의 단일비용은 다른 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게 추산하고 통합적으로 서술할 것

“새로운” 총 부담에 관해 서술할 것

새로운 정보제공의무가 행정비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간략하게 서술할 것

경제계의 행정비용의 서술

설 명

- 이 정보제공의무는 126,000 곳의 고용주
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3000만건의 자
료가 송부된다. 한 건의 자료의 송부비
용은 0.05유로에 달한다. 이로부터 총
1800만 유로의 행정비용이 도출된다.
- 경제계에 보다 적은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규정대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2개
월 단위의 통지는 비용을 보다 더 적게
유발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
면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규정대안에 관하여 면밀하게
서술할 것

제7단계 : 자료은행에 입력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한 규정이 발효된 이후
에는 관할 부처는 그 자료를 표준비용모델- 자료은행에 입력한다. 이
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행정비용에 관한 측정으로부터 검증된 IDEV-
절차가 투입되고, 원칙적으로 그와 동일한 특징들을 연방통계청에 통
지한다.

현행법상의 행정비용에 관한 측정과는 달리 연방통계청에 통지되는
그 밖의 등록카드들은 정보제공의무가 어느 정도로 신설되었거나 변
경되었거나 폐지된 것인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컨
대 사전적 추산치 등과 같은 자료가 존재할 경우에는 또 다른 자료도
문의된다. 새롭게 도입되었거나 변경된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
할 부처가 “법률의 발효 후 2년이 경과되었다”라는 부분에 ‘아니오’로
체크하고, 신설되었거나 변경된 정보제공의무의 발효일시를 해당 부
분에 기재한다.

자료은행에 입력하기 위한 정확한 방식은 전자적 입력장치에 관한 지침서에서 알 수 있다. 전자적 입력장치에 관한 지침서는 PDF파일로 제공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연방통계청의 정부 부처 담당자는 다양한 질문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3. 부 록

3.1 연방내무부의 통지문(생략)

3.2 간이절차와 비용등급⁶⁾

당해 건수가 연간 10,000건을 상회하지 않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관할 부처가 간이절차를 통하여 부담을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비용등급에 정렬되고, 부담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지적된 비용요소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담이 100,000유로(경미성의 한계)를 하회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추산을 할 필요가 없다(아래의 예외 참조).

당해 건수가 연간 10,000건을 상회하거나 간이절차에서 산정한 결과 그 부담이 100,000유로를 상회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언급한 형식에 따른 추산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당해 법률을 주관하는 관할부처나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경우에는 간이절차에서 산정된 부담가치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사전적 추산절차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용등급과 비용요소]

비 용 등 급	비용요소 (유로)
모든 경제부문이 관련되는 특정한 활동의 신고와 보고의무	0.41
특정한 경제부문만 관련되는 특정한 활동의 신고와 보고의무 (단순)	2.48

6) 2007. 12. 4.자 관료주의철폐를 위한 정무위원회의 결정

비 용 등 급	비용요소 (유료)
특정한 경제부문만 관련되는 특정한 활동의 신고와 보고의무(중간정도의 복잡)	4.01
특정한 경제부문만 관련되는 특정한 활동의 신고와 보고의무(매우 복잡)	26.06
제3자를 위한 표시의무(단순)	0.44
제3자를 위한 표시의무(중간정도의 복잡 및 매우 복잡)	11.34
표시의무없는 정보제공	4.38
개별적 승인과 일반적 승인(단순)	7.58
개별적 승인과 일반적 승인(중간정도의 복잡 및 매우 복잡)	34.62
등록	88.33
인증, 감독(통제)방문, 협력의무	70.31
조세/보조금(단순)	6.76
조세/보조금(중간정도의 복잡)	16.64
조세/보조금(매우 복잡)	188.09
기타 정보제공의무(단순)	0.80
기타 정보제공의무(중간정도의 복잡 및 매우 복잡)	1.44

하나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추산된 비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의무를 17개의 비용등급으로 정렬하여 그에 속하는 비용요소를 정보제공의무의 건수와 곱하면 된다.

3.3 시간가치표

I	일반적인 표준활동	단순	중간	복잡	설 명
		(분)	(분)	(분)	
	정보제공의무의 업무의 히기	3	15	120	정보제공의무가 정기적으로 변경되거나 가끔씩 적용되 는 관련성

[부록 II]

	일반적인 표준활동	단순 (분)	중간 (분)	복잡 (분)	설 명
II	자료의 수집	3	15	120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III	양식의 작성, 기입, 표시	3	7	30	예컨대 신청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IV	산정의 실시	3	20	120	어떠한 산정, 평가, 계산이 실시되어야 하는가?
V	자료의 심사 및 입력	1	5	45	발생할 수 있는 감독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VI	문제점 수정	2	10	60	발생할 수 있는 수정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VII	자료의 준비	3	15	120	자료의 준비에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VIII	자료의 송부 및 공개	1	2	10	자료송부 또는 자료나 정보의 공개로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IX	내부 회의	5	30	480	필요한 내부회의를 통하여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	외부전문가 회의	10	60	480	필요한 외부전문가회의(예: 세무사와의 회의)를 통하여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I	지불명령서의 완료	2	8	30	예컨대 송금자가 송금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가?
XII	복사, 문서정리, 분산	2	5	15	그 밖에 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내용

	일반적인 표준활동	단순 (분)	중간 (분)	복잡 (분)	설 명
XIII	공공기관에 의한 심사	2	30	240	예컨대 경영평가사에 의하여 유발된 내부적 비용
XIV	공적인 심사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할 각종 수정	3	90*	90*	자료의 수정, 추가적인 정보준비
XV	관할 기관과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보수집	3	15	120	추가적인 정보준비를 위한 비용
XVI	계속교육 및 연수에의 참여	3	35	480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이 우선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관련된다

* 사례건수가 적기 때문에 중간과 복잡간의 구별을 하지 않았음

3.4 연방통계청의 요금표

3.4.1 요금표에 관한 방법론적 설명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법에 따라서 장래의 규정의 비용요소를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산된 시간가치를 각각 해당되는 경제분야의 행정활동의 요금과 곱해야 한다. 사전적 추산을 위해서는 질적 수준에 따라 등급을 단순, 중간, 복잡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특별히 임금 및 급여통계에 관한 자료를 평가하여 각종 행정활동들을 집합시킨 표를 작성하였다. 특별히 행정활동을 위한 요금요소를 입증할 수 있기 위하여 일반 상업회사의 직원이 받는 급여계약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록 II]

기초가 된 요금요소는 실제로 이행한 근로시간과 특별비용 및 임금에 부가된 비용이다. 이에 더하여 요금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임금조사에서 도출되는 가산금을 도움으로 조정된다.

요금표는 관할 부처가 사전적 추산을 실시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목표는 압축되고 요약된 자료의 준비로서 다양한 정보제공의무를 추산하기 위하여 집합된 형식으로 요금가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할 부처는 개별 사례에 요금가치를 매우 상세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연방통계청의 임금통계와 급여통계에 관한 체계를 보면 매우 다양한 평가의 가능성이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적인 평가는 연방통계청에 신청하여 입수할 수 있다.

3.4.2 사전적 추산을 위한 연방통계청의 요금표⁷⁾

경제분야 ⁸⁾	질적 수준			평균
	단 순	중 간	복 잡	
A 농업 및 산림업	13.8	18.4	22.1	18.1
B 어업 및 양식업	16.1	23.8	29.9	23.3
C 광산 및 석탄과 철광의 채취	19.9	27.5	36.7	28.0
D 가공업	20.9	33.5	53.7	36.0
E 에너지 및 수자원업	25.2	38.0	54.8	39.3
F 건축업	15.8	26.5	44.6	29.0
G 매매, 보수, 자동차수선 및 중고품업	20.4	23.9	38.9	27.7
H 요식업	11.5	18.6	23.7	17.9
I 교통 및 뉴스전달업	22.5	28.3	40.4	30.4
J 신용업 및 보험업	24.7	37.6	52.8	38.4
K 부동산 및 주거제도, 동산의 임대, 경제적 서비스 제공 등	18.8	28.9	46.4	31.4
L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험	21.2	32.6	52.4	35.4

7) 요금가치는 시간당 유로로 나타난다.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

경제분야 ⁸⁾	질적 수준			평균
	단 순	중 간	복 잡	
M 교육 및 강습	20.7	31.9	51.1	34.6
N 보건제도, 동물위생제도, 각종 사회보장제도	18.7	28.8	46.2	31.2
O 기타 공적 서비스와 개인적 서비스의 제공	19.0	29.3	47.0	31.8
전체경제(A-O)	19.3	28.5	42.7	30.2

3.4.3 질적 수준에 따른 행정활동

경제분야	질적 수준		
	단 순	중 간	복 잡
A 농업 및 산림업	사무보조원	계산능통자	전문회계인
B 어업 및 양식업	타이피스트, 행정보조자	총무직원	전문회계직원, 사무실 팀장
C 광산 및 석탄과 철광의 채취	자료복사, 자료조사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처리	의미있는 부서(회계, 감사, 인사부서 등)의 팀장
D 가공업	대부분 전형적인 사무(타이핑과 계산 업무);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자	일반적인 지시에 따른 활동영역(인사제도에 관한 진행과정의 처리); 직업교육을 받은 자	난해한 업무영역에 대한 독자적이고 책임있는 처리(인사제도에 관한 업무팀의 팀장)

8) 경제분야의 분류(Klassifikation der Wirtschaftszweige) 2003년판(WZ 2003)

[부록 II]

경제분야	질적 수준		
	단 순	중 간	복 잡
E 에너지 및 수자원업	초보사무원	계산능력을 갖춘 사무원	금융 및 경영회계 전문팀장
F 건축업	단순한 활동, 단기간의 업무, 직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인사제도 분야에서의 사무처리	대학교를 졸업한 특별한 책임과 지시권 및 처분권을 가진 자
G 매매, 보수, 자동차수선 및 중고품업	회계처리에서 단순사무활동능력을 가진 자	회계처리에 일응의 경험있는 자	행정팀장
H 요식업	단순 행정활동을 하는 근로자	상업행정의 유경험자/상업행정의 업무보조자	행정팀장
I 교통 및 뉴스 전달업	습득이나 훈련을 통하여 취득한 단순 활동	직업교육을 마치고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복잡한 업무분야에서 독자적이고 자기책임을 지는 특별하게 난해한 다각도의 활동
J 신용업 및 보험업	단순한 자료 조사업무	자격을 갖춘 인사업무 처리	책임있는 활동을 하는 상행위 전문 직원
K 부동산 및 주거 제도, 동산의 임대, 경제적 서비스 제공 등	주로 기계적 활동을 하는 사무직원	특히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사무회계직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응한 경력이 있는 직원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

경제분야	질적 수준		
	단 순	중 간	복 잡
L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험	주로 기계적 활동을 하는 사무직원	특히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의 사무회계직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응한 경력이 있는 직원
M 교육 및 강습	주로 기계적 활동을 하는 사무직원	특히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의 사무회계직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응한 경력이 있는 직원
N 보건제도, 동물 위생 제도, 각종 사회보장 제도	주로 기계적 활동을 하는 사무직원	특히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의 사무회계직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응한 경력이 있는 직원
O 기타 공적 서비스와 개인적 서비스의 제공	주로 기계적 활동을 하는 사무직원	특히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의 사무회계직원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응한 경력이 있는 직원

3.5.2 투자범안을 예로 본 Excel-Tool(발취)

Gesamtwirtschafts Investitionsprozess (Erfolgreiche Realisierung)													
Verrechnungswert													
Informationspflicht: Anzeige Absicht zur Gründung einer Zweigniederlassung oder Eröffnung grenzüberschreitender Dienstleistungen													
Eig. Segment: Fallgruppe													
Bewertungsrichtung	Rechtsgrundlage	Anzahl der Tätigkeiten	Zeit in Mio. EUR	Kosten (K)	Preis (P) = Zeit x Tarif + andere E.	Preis-Änderung (ΔP)	Fallzahl (F)	Stange (S)	Stückzahl = Stange (S) x F	Verkaufspreis (V)	Verkaufspreis		
											A	B	C
Anzeige	§ 12 Abs. 1	Einrichtung einer der Informationsstellen	8	27,00	3,36	1	4	4	16	10			
		Erstellung einer elektronischen Daten	5	27,00	3,13	1	4	4	13				
		Ausdruck	3	27,00	1,80	1	4	4	8				
		Kontrolle	12	27,00	7,52	1	4	4	30				
		Erfüllungen	14	27,00	8,37	1	4	4	30				
		Senden	1	27,00	19,63	1	4	4	43				
		Aufbewahrung	2	27,00	1,35	1	4	4	8				
			43,00	27,00	10,00	30,96	Stückzahl = Stange						
										A: International	%		
										B: EU-Länder	0	%	
										C: Nicht-EU	0	%	

148

Regelungswert		Kosten		
Neuville Investitionsprozess (Erfolgreiche Realisierung)		Mio. EUR		
Nr.	Informationspflicht	Beschreibung	Verkaufspreis der Kosten	
			Mio. EUR	(%)
1	Anzeige Absicht zur Gründung einer Zweigniederlassung oder Eröffnung grenzüberschreitender Dienstleistungen	140		
2	Anzeige für den Fall, dass die KWG einen Daten mit dem Vertrieb der Anteile in dem Aufnahmeland betrifft ist	30		
3	Anzeige der Ausübung der Anmeldeverfahren ggü. Bundesanstalt und Bundesbank	40		
4	Erreichung des vereinfachten und zusätzlichen Verkaufserfolgs ggü. der Bundesanstalt und der Bundesbank	30.440		
5	Erreichung des Zwischenberichts ggü. der Bundesanstalt und der Bundesbank	107		
6	Erreichung des Abschlussberichts durch Abschlussprüfung bei BaFin und Bundesbank	11.335		
7	Erreichung von Jahres-, Halbjahres- und Auftragsbericht ggü. der Bundesanstalt und Bundesbank	35.920		
		90.962		